

연구 | 01-09

기업 및 주주 과세의 개선방안

최명근·박정우·김완석·이인실·한경동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과세 및 주주 과세의 개편과정은 개발 세계 또는 지원세계라는 차원에서 근시안적近視眼的이며 대중적對症的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로 인해 관련세계가 납세당사자는 물론 정책당국자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진 것은 물론이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법인세 및 주주 과세는 매년 소규모나마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법인세 및 주주관련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개혁에 대한 관심도 IMF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책선택과정에서 후순위後順位로 간주되고, 오히려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限時的인 세제정비로 조세제도의 개혁은 후퇴한 측면이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그동안의 세계개편과정을 반성하고, 향후 예상되는 통화·금융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재정·조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기업 및 주주 관련 과세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업 및 주주관련 문제점 및 개혁과제를 발굴해내는 방법의 하나로 기업 및 주주 과세와 관련된 전문가와 학계, 그리고 조세를 납부하는 당사자인 기업 등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및 주주 과세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인식이 어떠한지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지원제도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있는가에 대해 기업투자가 촉진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관련세제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월결손금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의 개선을 비롯하여 기업과세 및 주주 과세에 관련된 세제상의 문제점에 대해 판례,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 세무회계의 관행을 조사하고, 이를 법학적 또는 회계학적 시각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내지 세무회계적 대안을 구상하였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제도의 폐지를 포함하여 입법적, 법해석적, 그리고 세무회계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경희대 최명근 교수님과 서울시립대의 박정우 교수님, 김완석 교수님, 한국외국어대 한경동 교수님과 본 연구원의 이인실 선임연구위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설문조사 및 자료정리에 홍상균 연구조원과 이혜진 연구조원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2001년 5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차 례

요 약	9
제1부 서 언	27
제1절 문제의 제기	29
제2절 연구의 범위	35
제2부 기업과세의 경제적 분석과 평가	39
제1절 기업과세의 현황과 정책방향	42
제2절 기업과세의 경제적 분석 - 일반균형모형을 중심으로 ...	58
제3절 현행 법인기업 및 개인주주 과세의 평가와 개선과제 - 설문조사	90
제3부 법인기업 과세제도의 개선	119
제1절 합병과세제도의 개선	121
제2절 이연자산(무형자산) 평가규정의 개정	144
제3절 증차소득공제제도 부활	151
제4절 이월결손금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157
제5절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 개선	162
제6절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100% 인정	171

제7절 과생상품거래의 과세방안	180
제8절 지주회사과세제도의 문제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214
제4부 개인주주과세제도의 개선	235
제1절 기본방향의 모색	237
제2절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과세의 개선	239
제3절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개선	319
제4절 주식상장이익 증여의제의 폐지와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	344
제5절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	374
제6절 개인주주과세 개선의 결론	381
■ 부 록	393
■ 영문초록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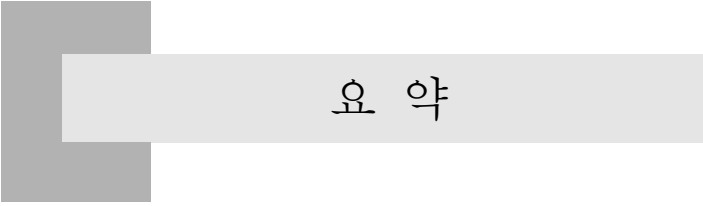
표·그림 차례

▶ 제2부

<표 1> GDP 및 총세입대비 법인세수 국제비교 (1998년 기준)	43
<표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	44
<표 3> 현행 법인세율	47
<표 4>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법인세율 비교 (1999년 기준)	48
<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	50
<표 6> 한계유효세율의 가중평균	50
<표 7> 제조업에 대한 한계유효세율	51
<표 8> 자본이득세율의 비교	52
<표 9> IMF 지원 직후 기업구조조정 관련법규 현황	54
<표 10> IMF 지원 직후 기업구조조정 관련세제의 제·개정 현황	56
<그림 1>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중(1970~1999)	42
<그림 2>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절차	46
<그림 3> 법인세 최고세율의 추이	47

▶ 제4부

<표 1> 주식 등에 관계 있는 양도소득 등	329
<표 2> 자산의 종류별 법인세 등의 부담률	373



요 약

I. 법인기업과세제도의 개선

1. 합병과세제도 개선

합병세제는 기업운영의 효율성 도모, 즉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불공정합병을 규제해야 한다. 현행 합병세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조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 완화를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영합리화 목적의 합병인지 그 객관적 판정기준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합병시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합병교부주식의 평가를 액면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고 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은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합병교부주식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합병법인의 주식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합병교부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

합병교부주식의 평가는 액면가액을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액면가액 이하로도 평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액면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상의 평가금액을 비교,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합병의 기본요건 충족시).

셋째, 불공정합병의 경우 증여의제 문제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증권거래법과 상증법이 각각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분류하여 각각 독자적 평가방법을 두고 있는 것은 합병을 추진하는 법인으로서의 세무상 Risk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위원회 소

관의 증권거래법상 합병규정과 상증법상 그것의 괴리로 인한 세무상 Risk를 납세자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② 평가시점 차이로 인한 문제이다.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상장법인의 기준주가 평가기준시점은 합병신고서 제출일 전일이고(증거규 36조의 12), 증여의제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주식의 평가기준시점은 합병등기일(상증법 38) 때문에 합병신고서 제출일로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2개월까지의 사이에 상장법인의 주가변동이 증여의제 해당여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실무상 약 6개월의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이 기간에 합병비율에 큰 변화를 초래할 만한 경제적 사건이(큰 규모의 손익 등) 발생한다면 합병자체의 취소, 기타 필요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비경상적인 경제적 거래를 추진하지 말아야 함).

불공정합병시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을 할 때 임의적인 합병비율 조정을 통한 친족간의 편법적인 증여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주로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의 경우가 일반적인 규제대상이다.

그러나 상장법인이 포함된 합병은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규정에 의해 합병비율이 감독관청에 의해 규제되고, 불공정합병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공정합병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감독관청이나 시장에 의해 규제되는 합병은 실질적으로 불공정합병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증여의제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이연자산(무형자산) 평가규정의 개정

세무상 이연자산제도는 기업회계에 맞추어 폐지하는 것이 옳다. 세무상 이연자산제도(기업회계상은 폐지됨)는 비용처리를 지연하여 세수확보를 피하지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실무상 번거로움이 더 큰 비용요소이다.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제도는 원래 기업회계논리를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순자산증가설과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세법의 고유논리에 비추어 본다면 이연자산으로 계상되는 임시적인 자산항목은 발생시 모두 비용화시켜야 마땅하다. 심지어 회계이론상으로 보더라도 이연자산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 즉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이 아니어서 자산성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한 것이 현실이다(이연자산은 이연비용에 불과하다는 논리).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상의 이연자산제도를 수용한 이후 기업회계의 이연자산제도는 계속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법인세법이 기업회계상 이연자산제도를 항상 뒤따라 개정한 것도 아니어서 상호 불일치가 존재하게 되었고 또한 법인세법상의 이연자산규정은 완전하게 기업회계논리를 따른 것도 아니고 세법 고유논리에 따른 독자성을 구비한 것도 아닌 것이다.

3. 증자소득공제제도 부활

증자소득공제제도는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지급이자 손금인정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즉 기업의 자금조달상 간접금융비용인 지급이자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 직접금융비용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세무상 비

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증자소득공제가 없으면 이는 직접금융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기업의 과도한 부채구조를 개선하여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증자)에 Merit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증자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창투자 등은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에 큰 기대를 두게 된다. 증자소득공제제도는 코스닥시장 등의 활성화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증자소득공제는 그것이 증자에 얼마나 유인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하는 실증적인 문제를 떠나 ① 증자유인책 제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② 자금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고, ③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노력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증자소득공제가 폐지된 근본적 이유는 조세논리나 증자유인효과라는 실증적인 논리보다는 세수감소 때문이라고 본다. 세수입으로 부실화된 금융기관 등에 공적자금으로 투입되는 비용(공적자금 부실화비용 포함)보다 세제로 증자를 유인하여 기업의 건실한 재무구조를 실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이다.

4. 이월결손금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첫째, 이월결손금공제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IMF 사태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바, 누적된 결손과정을 극복, 후자로 전환중인 기업은 회복기에 접어드는 환자와 같은 것이다. 기업의

회생(회복)을 적극 도와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월결손금공제기간을 늘려주는 방법이다. 또한 신설법인의 경우 초기에는 수년간 결손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월결손금공제기간의 연장은 이러한 환경에 처한 기업이 수익창출단계로 진입하는 데 재정적으로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보다 기업의 사기진작과 회복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활성화효과가 더 크게 되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와 같은 논리로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일시적인 결손상태에 빠진 중소기업의 경우 소급공제기간 연장을 통한 지원효과도 적지 않다고 본다(보다 전향적으로는 모든 법인에 확대).

5.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 개선

첫째, 건설자금이자는 폐지되어야 한다.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세법은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즉 완전히 기업회계를 따라가든지 세법의 고유논리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의 원가성을 부인하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건설자금이자를 자산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논리, 즉 건설자금이자의 원가성을 부인하는 근거(건설자금이자를 모두 손금처리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 등의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건설자금이자는 회피할 수 있는 비용(또는 자산)이 된다. 반면 재무구조

의 차이에 따라 비용의 크기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건설 자금이자는 세법상으로는 기업회계상으로도 자산화가 아닌 비용화되어야 한다.

② 건설자금이자를 원가화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면 모든 자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옳으며 자산별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건설자금이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세무상으로 볼 때 순자산이 감소한 것이며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발생시 손비처리해야 옳다.

둘째,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은 개선되어야 한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은 산업별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자본집약적 산업의 경우에는 차입금의 기준배수를 현행 자기자본 2배에서 4배로 높여야 한다.

6.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100% 인정

퇴직급여충당금의 100%를 손금산입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단체퇴직보험 가입을 통한 손금산입제도는 세법에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손금에 해당할 뿐 아니라 법적 의무가 성숙, 확정된 것이다.

①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② 당기에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③ 근로관계 존속기간을 통해 금액이 누적되어 기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미 법적 청구권이 확정·잠재된 것이고, ④ 퇴직급여충당금

으로 인해 실제로 배당가능이익이 감소하며(결산조정사항), ⑤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므로 금액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의무도 분명하다. 결국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단체퇴직보험 등 가입에 의해 손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현실적으로 세법에 의해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셈이 된다.

② 단체퇴직보험 등의 가입이 종업원의 퇴직금지급 재원의 확보수단이 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지급 재원을 단체퇴직보험 등에 묶어둠으로써 자금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③ 보험사들간의 단체퇴직보험 등 유치경쟁을 유발하여 사회적 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7. 파생상품거래의 과세방안

파생상품거래 손익에 대해서는 만기일, 반대매매일, 청산일에 과세소득을 인식하는 결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미흡한 여건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의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액 평가와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옵션, 외환거래 등으로 한정하되, 스왑거래, 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파생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

8. 지주회사과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지주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의 과세관계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와의 관계, 자회사들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미실현소득 과세의 문제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에서 손익을 각각 인식한다면 이는 동일회사 내의 사업부간 재화의 이동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각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거래에 대해 이를 법적 형식에 따라 법인별로 과세하는 경우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조세회피의 문제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그리고 자회사들간에는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이들이 상호 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거래가 제3자간 가액에 따른 공정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즉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자회사간 거래에서 손익을 부당하게 이전시키는 그룹기업간 손익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셋째, 80% 지분율 기준의 임의성 문제이다.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90%를 익금불산입하고, 지분율이 50% 이상 80%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60%를 익금불산입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70%에서 100%를 익금불산입하고, 영국과 독일은 전액 익금불산입하며, 프랑스는 배당수익의 95%를 익금불산입하고, 일본은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부

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그 외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80%를 익금불산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50%와 80% 지분율기준이 어디서 근거했는지 불분명하다. 만약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인정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취지라면 배당수익에서 지분율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조정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II. 개인주주과세제도의 개선

1. 개인주주 배당소득과세의 개선

(1) 배당소득과세의 개선

1)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의 채택

비실명금융소득을 제외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하여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되, 다만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만하게 설정하고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분리과세 및 세액의 면제제도를 모두 폐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금융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특례규정을 폐지하고, 영세한 금융소득자가 납부한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등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액을 환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2) 금융실명제의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금융실명제를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차명거래를 한 당사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차명거래로 밝혀진 금융자산 중 일정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3)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로서의 공제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그 이자비용을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도록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4) 배당세액공제대상의 확대

재평가적립금(1%의 재평가세율을 적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의제배당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초래한다. 따라서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과세의 축소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 아래에서의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과세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미봉적이고 과도기적인 의제배당과세를 폐지하고, 주식을 처분할 때에 실현된 주식의 양도차익

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과세하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현행 법령 아래에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까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의 가액은 실질적인 주주의 납입자본의 환급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등과 같은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그 법인이 배정받지 못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배정받은 무상주의 가액도 같은 논리로 과세소득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가액은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및 독일에 있어서도 주식배당과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자산소득합산과세의 폐지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인위적인 소득분산이 용이한 자산소득에 한하여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자산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는 헌법 제11조 또는 제36조에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주의 중 이분이 승계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주의 중 이분 이승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2.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개선

(1)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확대

자본시장의 규모가 방대하고 고소득자의 주식매매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조치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야 한다.

첫째,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 외의 주주(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대주주를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로 개정함으로써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외의 기타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과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현행의 20%에서 40%까지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종합소득세의 세율과 같이 10%에서 40%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기타자산에 속하는 특정주식(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및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과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으로서의 주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상장여부 등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포함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2) 양도차손의 통산 및 이월공제

양도차손의 통산 및 이월공제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야 한다.

첫째,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과 기타의 자산(기타의 주식·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되, 어느 한쪽의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한쪽의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특정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손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양도차익에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확대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도 허용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주식상장이익 증여의제의 폐지와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

(1)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폐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당해주식 등의 처분시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삭제하고 양도시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2)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인상

금융재산공제를 현행과 같이 순금융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다만 그 한도액을 인상하여 현행의 2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주식의 평가방법의 개선

1) 평가방법의 일원화

개별세법에서 제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규정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의 기준시가 산정규정은 통일하거나 그 평가목적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 한 차이점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2) 다양한 평가방법의 도입

주식의 가치는 당해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업종), 법인의 규모(대법인·중법인 및 소법인), 법인 설립일로부터의 기간(신설법인 또는 기존법인), 사업의 업황(휴업 또는 폐업상태) 등에 따라서 그 평가방법을 달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대회사는 뒤에서 다룰 비준평가법 또는 순손익가치법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둘째, 비상장법인 중 부동산보유회사(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소유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법인 및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와 지주회사는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셋째,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회사와 개업 전 또는 휴업 중의 회사, 개업 후 일정기간 미만의 회사는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넷째, 기타의 법인은 순손익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또는 순손익가치법과 순자산가치법의 조합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이때에는 순손익가치법에 60~70%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한다.

3) 순손익가치법의 개선

순손익가치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첫째, 수익가치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익의 발생이 비반복적·불규칙적인 비정상적인 손익은 순손익의 산정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주식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순손익, 즉 기업의 수익력을 표상하는 순손익은 정상손익이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손익의 예로서는 영업외손익 중 투자자산처분손익·

유형자산처분손익·법인세추납액 등, 특별손익(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재해손실 등),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액에 속하는 자기주식처분손익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자본환원율을 현행 규정과 같이 10%로 획일화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질·리스크의 정도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환원율의 크기도 담보부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에 상당한 정도의 위험부담 프리미엄 risk premium을 가산하여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4) 순자산가치법의 개선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는 자산평가차액의 17.6%에서 47.3%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을 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평가차액의 51%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4.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담세력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제도는 이를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제1부

서 언



제1절 문제의 제기	29
제2절 연구의 범위	35

제1절 문제의 제기

1. 과중한 조세부담의 폐해

현대국가는 조세국가이다. 따라서 조세는 우리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의 운영재원이다. 국민은 이러한 공동의 필요 때문에 조세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미를 강조하여 Holmes 판사는 조세를 문명을 위해 지급하는 대가라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세의 신성성神聖性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 자칫 세제와 세법을 설계·설정하는 지도계층이 세금을 위해 사람이 생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실지로 우리 세법에 과도하게 확산되어 있는 각종 협력의무는 이러한 사고가 반영된 것들이 있는 것이다.

세금은 어디까지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활동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를 얻기 위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담세력의 기준으로 삼아 부담하는 것이 조세인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누구나 아는 범부凡夫의 상식에 불과하지만 민주적인 현대국가에 있어서도 때로는 조세의 공익성을 지나치게 앞에 내세워 강조하는 나머지 세제에 과도하게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남용적 장치가 설정될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에 한정된 가용자원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조세부담이 높다(조세부담의 과중)는 것은 대체적으로 공공재 생산의 주체인 공공부문에 배분되는 자원의 양이 과도하고, 국부의 주도적 생산주체인 민간부문에 배분되는 자원의 양이 과소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세제

하에서는 민간부문의 생산적 경제활동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渡部昇一 교수는 과중한 세금은 국가를 멸망시킨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지나치게 높은 세금부담은 나라를 빈곤하게 만든다. 세금액의 크기와 국가의 통제는 정비례하게 되고, 따라서 높은 세금은 국민을 비굴하게 만든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富」인데 높은 세금은 국민의 부의 축적을 저해한다. 셋째, 높은 세금으로 지탱하고 있는 적정규모 이상으로 큰 낭비적인 정부는 국민의 부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넷째, 국민의 부를 세금으로 박탈하면 나라는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약간 지나친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를 조세에 대한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적정화하는 세제의 구상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정책과제이다. 과도한 조세부담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경제가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배양된다. 조세제도가 수직적 공평을 실현해야 경제성장의 과실果實이 각자의 몫에 맞게 고르게 국민 각 계층에 배분된다. 조세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낮은 부담수준에서 중립적이고도 합리적이면서 그 집행이 투명해야 하는 것이다.

2. 감세노력의 국제적 동향

1986년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혁명적 조세정책 전환 후 지난 세기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요국가들은 대부분 감세방향의 조세정책을 추구해 오고 있다. 이는 경제의 세계화 소용돌이 속에서 자국경제의 활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86년의 레이건 행정부의 대대적인 감세정책(그 후 부분적인 증세정책이 있기는 했지만)이 있었음에도 금년에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감세정책은 세계적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 중요골자는 2006년까지 1조 9,000억 달러(1,900조원 상당) 상당을 감세한다는 세제의 청사진이다. 그 방법은 개인소득세의 현행 세율 15% 내지 39.6%(5단계 초과누진구조)를 2006년까지 10% 내지 33%(4단계 초과누진구조)로 하향조정하고, 유산세(상속세)를 2009년까지 점진적 방법으로 폐지하며, 개인소득세상의 자녀세액공제child credit를 2006년까지 현행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 등이다.¹⁾

이에 대하여는 환영과 반대가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매우 획기적인 감세정책의 추구인 것만은 틀림없으며, 미국에서 이러한 세제개정이 성공하면 이는 큰 힘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전파되리라고 예측된다.

둘째, 독일의 경우를 보면 2000년 7월 14일 의회를 통과한 세제개혁에서 2000년 현재의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2005년까지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유보분에 대한 현행 명목세율 40%, 배당분에 대한 명목세율 30%를 단일세율로 통합하여 25%로 하향조정하며, 소득세율은 최저명목세율 22.9%를 15%로, 최고명목세율 51%를 42%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한 2중과세 조정은 종래 배당소득이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귀속법인세액 100%(배당받은 금액×30/70=귀속법인세 전액)를 주주의 배당소득에 가산하여 주주의 소득세액을 산정한 다음 그 소득세액에서 귀속법인세액 전액을 세액공제하던 방법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50%(1/2)만

1) 'Looking Closer at the Bush Tax Cut,' "Bush to Propose Making a Tax Cut, Effective in 2001." The New York Times, Feb. 6. 2001.

을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주주의 소득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²⁾ 다시 말하면 귀속법인세액을 주주의 배당소득에 가산하여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귀속법인세액을 세액공제하던 제도에 대신하여 주주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배당소득을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2분의 1로 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셋째, 영국의 경우에는 명목세율은 약간만 하향조정하면서 각 세목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각 소득구간brackets금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감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명목세율을 크게 변화시키지 아니하면서 실효세율은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법이다. 즉 조세부담의 수준은 한계명목세율과 각 누진적 한계명목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금액 크기의 두 가지가 좌우하게 되는 바, 영국은 그 소득구간금액을 증액하는 방법을 주로 취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는 2000년까지 1999년 현재의 현행 10%·23%·40%를 10%·22%·40%로 소폭 조정하면서 각 한계명목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금액은 1999년 현재 현행 £ 1,300· £ 27,100· £ 27,100 초과를 £ 1,520· £ 28,400· £ 28,400 초과로 높인 것이다.

영국의 법인세 세율은 종래 52%였는데 그 후 계속 이를 인하 조정해 왔다. 즉 1983년에 50%로, 1984년에 45%로, 1985년에 40%로, 1986년에 35%로, 1992년에는 33%로 인하조정하여 현재는 30%이다.

상속세는 2000년까지 1998년 현재 단순비례세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면세점 £ 223,000를 £ 234,000로 높였다. 그리고 증여세는 20%의 단순비례세율로 설정하고,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 합산은 그 증여액을 사망 전 3년 내이면 전액, 3

2) 김유찬, 『최근 독일의 세계개혁』, 『월간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1. 1.

년 초과 4년 내이면 80%, 4년 초과 5년 내이면 60%, 5년 초과 6년 내이면 40%, 6년 초과 7년 내이면 20% 합산하되, 7년 초과 이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세액이 제로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Taper Relief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소득세·법인세·상속세의 경감정책을 그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다.³⁾

넷째, 일본의 경우에는 1998년(平成10년)의 세제개혁으로 1999년(平成11년)부터 시행되는 항구적 감세를 단행했다. 이에 의해 감수減收되는 세수는 초년도에 5조 6,470억엔(56조 7,700억원 상당), 평년도에 7조 3,000억엔(73조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감세정책이다.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는 1998년 현재의 현행 10%·20%·30%·40%·50%인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10%·20%·30%·37%의 4단계의 초과누진세율로 인하조정하면서 소득할주민세율을 15%에서 13%로 인하하고, 법인세는 보통법인의 경우 1998년 현재의 현행 34.5%를 30%(중소법인·공익법인에 대한 경감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외에도 지방세의 여러 가지 세목의 세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⁴⁾ 그 후 1999년과 2000년의 세제개혁에서는 세율부분에 대하여는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의 현행 법정세율은 10% 내지 70%의 9단계 초과누진구조인 바, 상속세의 최고한계세율과 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간의 격차(70%와 37%)가 너무 크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稅制調査會는 이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⁵⁾ 그러나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다.

3) "Pocket Tax Guides," www.tdwaterhouse.co.uk

4) 平成10年度 稅制の大綱 참조

5) 平成13年度(2001)の稅制改正に關する答申(稅制調査會, 平成12年 12月 13日)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를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감세정책을 계속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간 감세정책적 세계개혁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각 세목의 명목세율을 위에서 본 주요국가들의 명목세율과 단순비교하는 경우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소득세의 최고명목세율은 우리나라가 40%인데 이를 미국 39.6(Bush 행정부 개정안 33%)%, 독일 42%, 영국 40%, 일본 37%와 비교할 때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지방소득세 부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법인세 최고명목세율은 우리나라가 28%인데 이를 미국 35%, 독일 25%, 영국 30%, 일본 30%와 비교하면 이것 또한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의 최고명목세율은 우리나라가 50%인데 이를 미국의 55%(부시 행정부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폐지), 독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상속 30%·형제자매 등 방계친족간 상속 40%·친족 이외의 자간 상속 50%, 영국 40%, 일본 70%와 비교해 볼 때 이 또한 표면상으로는 높은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연방상속세가 없고 주정부에서만 8% 수준의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는 스위스, 상속증여의 대부분이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의 그 최고명목세율 30%, 그리고 영국의 상속세 40%의 비례세율·증여세 2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면서 사망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에 Taper Relief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상속과세 세율수준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법인기업과세와 주주에 대한 배당과세를 다루기 때문에 상속세는 연구범위에서 제외시켰으며, 아울러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문제 또한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조세부담의 크기는 세율의 수준과 과세물건의 측정치인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된다. 세율의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역시 세금의 부담은 무거워진다.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율의 문제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각종의 규정 중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되는 법인기업과세 및 개인주주 과세에 관련되는 규정을 찾아 그 합리화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인기업의 운영에 의해 얻어진 이윤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세후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이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가 과세된다. 비록 법인과 주주는 법적 관점에서는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법인의 소유주가 바로 주주이므로 법인기업과세와 개인주주과세의 방법과 조세부담의 수준 여하에 따라 두 가지 과세결과가 서로 어우러져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때문에 자본조달(법인의 자본구성)방법은 물론 법인의 기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법인기업과세와 개인주주과세는 서로 밀접하게 상호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 법인기업과세와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과세 문제를 함께 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위와 같은 시각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제2부에서는 기업과세의 현황 및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평가하여 정책방향을 크게 모색함과 동시에 일반균형모형에 의해 조세의 경제적 효과측정 및 기업과세의 경제적 분석을 시도한다. 아울러 법인기업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면서 조세를 납부하는 경영인 집단, 재정학자와 조세학자 등 학계, 납세자에게 세무조력(稅務助力)을 제공하는 전문인 집단 등이 현행 법인기업세제와 개인주주과세

제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평가, 그리고 개선과제를 설문으로 조사하여 분석한다. 이는 현실과 이론의 괴리를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제3부에서는 법인기업과세제도에서 경제단체·전문가단체·조세학계에서 이제까지 부각시켜 온 문제점 중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것과 설문조사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된 것을 선정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구조조정의 중요한 수단인 기업합병에 조세가 관여하게 되는 합병과세제도, 법인의 담세력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결손금의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제도, 담세력의 측정을 왜곡하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 새로 도입되는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제도와 이에 관련되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문제 등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온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비록 국제적인 과세방법의 조화가 아직 도출되지는 아니했지만 이에 대한 과세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다.

제4부에서는 현행 개인주주과세제도를 분석·평가하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검토과제는 제3부의 법인기업과세의 연구에서와 같이 경제단체·전문가집단·조세학계에서 부각시켜 온 문제점 중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것과 설문조사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된 것을 선정한다.

여기에서는 개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과세 중 상법상으로는 배당이 아닌데도 세법에서만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그 범위가 너무 확산되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이 침해되는 부분,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단위과세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유독 자산소득(배당·이자·부동산임대소득)만은 부부합산과세를 하는 모순(부부합산과세를 하려면 모든 소득에 대하여 철저하게 2분산 2승

법乘法을 채택해야 함), 불완전·불합리하게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의 확충 내지 세율의 합리화 문제,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각종 과세에서는 이에 대한 과세평가가 필수적으로 수반됨에도 그 과세평가방법의 불합리 및 세법마다 평가방법을 달리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현행 법규정을 분석·비판하면서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개인주주에게는 자본거래(증자·감자·합병·분할·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와 관련하여 예측가능이 매우 어려운 무거운 증여세의 부담 문제가 있으나 이는 상속·증여 과세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아니한다.

제2부

기업과세의 경제적 분석과 평가



제1절 기업과세의 현황과 정책방향	42
제2절 기업과세의 경제적 분석	
- 일반균형모형을 중심으로	58
제3절 현행 법인기업 및 개인주주과세의 평가와 개선과제 - 설문조사	90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과세의 개편과정은 개발세제 또는 지원세제라는 차원에서 근시안적近視眼的이며 대증적對症的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로 인해 관련세제가 납세당사자는 물론 정책당국자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진 것은 물론이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법인세 및 주주 과세는 매년 소규모나마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법인세 및 주주관련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세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지난 1997년말 IMF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책선택과정에서 후순위後順位로 간주되고, 오히려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限時的인 세제정비로 조세제도의 개혁은 후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세제개편과정을 반성하고, 향후 예상되는 통화·금융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재정·조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을 근본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먼저 현행 기업과세의 현황과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추진되었던 각종 세제지원 등의 정책 방향을 점검한 후, 일반균형모형을 중심으로 기업과세의 경제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법인 및 주주 과세의 구체적 정책과제를 도출하기에 앞서 현행 법인기업과 개인주주과세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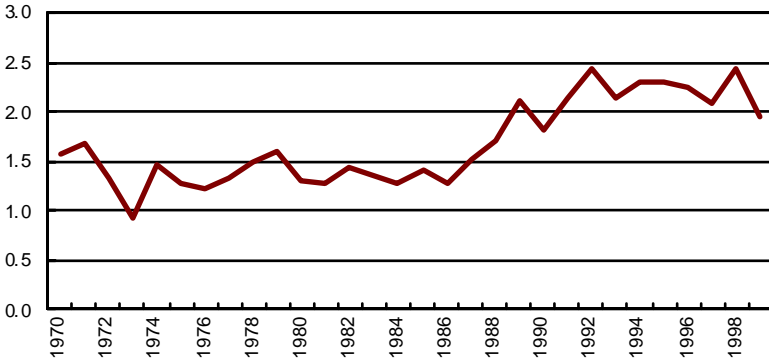
제1절 기업과세의 현황과 정책방향

1. 현행 기업과세의 개요

법인세는 소득세와 함께 직접세의 두 기둥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조세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비중이 매우 큰 만큼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법인세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는 법인세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법인세에 부가되고 있는 지방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고용주 부담분과 같은 사회보장세, 그리고 각종 조세적 성격의 준조세도 기업의 몫이 되고 있다.

<그림 1>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중(1970~1999)

(단위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호

1999년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의 규모만도 9조

3,654억원으로 총세수 70조 4,769억원의 13.3%를 차지, 국내총생산의 거의 2%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그림 1>과 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1970년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1.5% 수준을 하회하였으나 그 후 2%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1998년을 기준으로 OECD 주요국가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수의 비중을 보면, 일본이 13.3%로 가장 크며, 우리나라 12.2%, 영국 11.0%, 미국 9.0%, 스웨덴 5.7%, 독일 4.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세의 고용주 부담분만을 감안하여 총세입대비 기업의 부담을 살펴보면, 일본 32.9%, 스웨덴 28.2%, 독일 24.3%, 미국 21.2%, 영국 20.4%,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⁶⁾

<표 1> GDP 및 총세입대비 법인세수 국제비교(1998년 기준)
(단위: %)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GDP대비 법인세수	2.6	2.6	3.8	1.6	4.1	2.9
총세입대비 법인세수	12.2	9.0	13.3	4.4	11.0	5.7
총세입대비 법인세수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분 포함)	19.9	21.2	32.9	24.3	20.4	28.2

자료: OECD(2000)

6) 그러나 이 수치만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부담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작다고 하기에는 성급한 결론이 될 것이다. 단순히 법인세수 규모에 육박하는 부담금, 분담금 등의 각종 준조세만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으며, 세제의 복잡성 등에 따른 납세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조세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임양택·최명근(1983), 한경동·하정훈(1999)을 참고할 수 있음.

<표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

법인종류별		과세소득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	영리법인	일반	국내외의 모든 소득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있음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 등 ¹⁾	국내외의 모든 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있음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주 : 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 등은 내국법인(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으로서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말함.

자료 : 국세청(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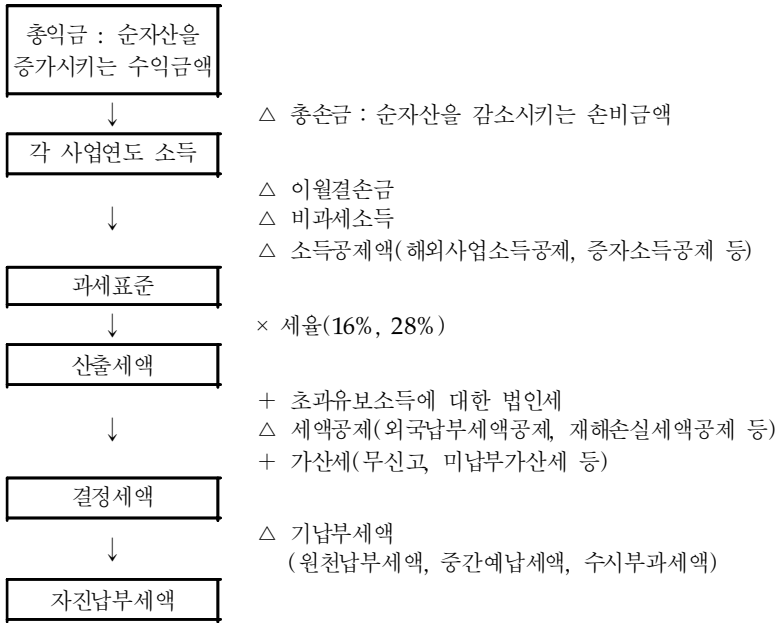
법인세의 과세대상, 즉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얻은 수입에서 사업에 소요된 여러 가지의 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세에서도 수입이나 비용에 어떤 항목을 포함시키고 어떤 항목을 제외해야 되느냐가 매우 어려운 선택의 문제이다. 개인의 소득이나 지출에 비하면 기업의 수입이나 비용이 훨씬 더 종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공제의 경

우처럼 무엇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느냐뿐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느냐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에는 공공법인과 일반법인,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 중에서도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각 법인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며 공평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과세대상을 정의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과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물론 적정유보초과소득, 토지 등 양도차익, 청산소득 등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총손금에는 상품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가, 일반관리비, 내구재의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법인세의 세액계산 절차는 <그림 2>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2> 법인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계산 절차



자료 : 국세청(2000), 전영섭·나성린(1995)

현행 법인세율은 2000년 현재 일반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1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 그 초과분은 28%가 적용되고 있지만 농·수·축·임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에 비해 낮은 12%의 세율이 책정되어 있다. 이들 법인세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1970년 이후 법인세의 최고세율 추이를 보면, <그림 3>에서와 같이 1970년 45%에서 40%, 33%, 28%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표 3> 현행 법인세율

법인 종류		소득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정유보 초과소득 법인세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세율		미등기	등기
영리법인	일반	1억원 이하	16%	-	30%	15%	
		1억원 초과	28%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 등	1억원 이하	16%	15%	30%	15%	
		1억원 초과	28%				
비영리법인		1억원 이하	16%	-	30%	15%	
		1억원 초과	28%				
조합법인 ²⁾		12%		-	3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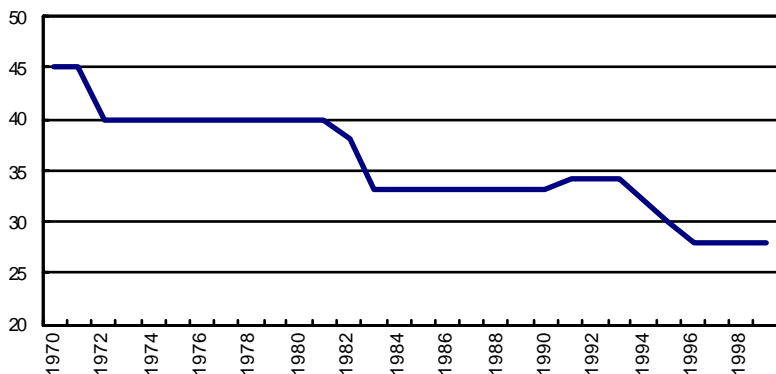
주 : 1) 영리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과세와 같음.

2)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은 농·수·축·임협, 새마을금고 등임.

자료 : 국세청(2000)

<그림 3> 법인세 최고세율의 추이

(단위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호.

한편 1999년을 기준으로 OECD 주요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법인세율을 비교하면 <표 4>와 같으며, 특히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의 기본세율은 우리나라 28%, 미국 35%, 일본 30%, 영국 31%, 멕시코 35%, 스웨덴 28% 등으로 우리나라가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표 4>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법인세율 비교(1999년 기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멕시코	스웨덴	
중앙 정부	기본세율	28	35	30	42.2/30	31	35	28	
	소규모이익에 대한 세율	16	15	22	-	21	-	-	
	특별세율	-	-	22	-	-	17.5 /26.3	기간별 이익 적립금	
지방 정부	주 정 부	최저세율	-	-	5+5	-	-	-	-
		평균세율	-	6.9	-	-	-	-	-
		최고세율	-	-	6+10.6	-	-	-	-
		일반세율	-	-	5+9.6	-	-	-	-
	지 방 정 부	최저세율	3.75	-	12.3	-	-	-	-
		평균세율	10	-	-	16.07	-	-	-
		최고세율	11.25	-	14.7	20.48	-	-	-
		일반세율	10	-	12.3	-	-	-	-

자료 : OECD(1999), 한국조세연구원(2000)

이와 같이 OECD의 주요국가에 비해 수치상으로 낮은 기업의 조세부담이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제가 바람직하다거나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 최근 OECD의 보고서인 Dalsgaard(2000)는 우리나라 조세정책 전반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세를 중심으로 지적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에 대한 조세의 왜곡은 감소되었으나 조세지원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낮으며 법인세제의 한계세율도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조세정책으로 인한 투자의 왜곡효과는 적다는 판단이다. 조세지원 또는 조세유인(tax incentives)은 투자세액 공제, 면세, 소득공제, 공공기업 등에 대한 낮은 세율, 그리고 일종의 조세이연에 속하는 가속상속제도, 비과세적립금제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다. 1998년에 이른바 조세지원일몰제도가 도입되어 조세혜택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소멸하도록 되었다. 하지만 조세지원일몰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제약을 받는 조세혜택이 실제로 어느 정도 소멸될지 또는 자동적으로 연장될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한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으로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자본이 과잉투자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지만, 현재 조세지원은 주로 기술개발, 중소기업 등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1998년의 경우 GDP의 0.6%로 OECD 대부분 국가들의 GDP 대비 조세지출액의 비중이 0.2%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⁷⁾

7) 참고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에는 법인세에 대한 조세지출이 전년의 2조 7,257억원에서 1,871억원이 감소한 2조 5,386억원이었다.

<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

(단위 : 10억원)

	세 목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계	
중소기업	89	197		286	0.1
설비투자	14	349		362	0.1
기술 및 인력개발	17	354		370	0.1
사회간접자본과 주택	242	299		541	0.1
도시·농촌 균형발전	385	62	32	479	0.1
저축 및 금융기관	2,621	231		2,852	0.6
사회보험	249	302		551	0.1
근로자	1,192	14		1,206	0.3
교육문화	156	467	5	629	0.1
기타	4	451		455	0.1
총계	4,967	2,726	38	7,731	1.7

자료 : Dalsgaard(2000)

이와 같은 조세지원으로 인해 투자에 대한 한계유효세율은 (-)로 사실상 조세제도 자체가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주고 있다.

<표 6> 한계 유효세율의 가중평균

(단위 : %)

	기업규모		자본재			투자재원		
	대기업	중소기업	건축물	기계	비상각자본	대출	유상증자	사내유보
1982	-24.44	-14.47	-14.16	-31.02	-16.08	-51.55	41.56	44.86
1987	-21.80	-19.82	-10.09	-32.76	-9.41	-32.76	27.66	30.17
1992	-25.21	-30.31	-8.47	-43.39	-7.55	-46.46	18.51	22.18
1997	-15.78	-16.56	-2.31	-28.59	-6.04	-32.96	21.75	24.26

자료 : Dalsgaard(2000)

또한 기업형태, 투자 및 자금조달의 유형에 따라 조세유인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기계장비에 대한 투자와 부채조달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1970년대말 이후 조세유인의 축소, 법인세율의 인하 및 조정,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유효세율의 변화는 다소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조세로 인한 배분상의 왜곡은 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더이상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투자 및 자금조달에 대한 한계유효세율은 OECD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자금조달의 유형에 따른 세율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조세왜곡이 국제기준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기업과세가 투자에 주는

<표 7> 제조업에 대한 한계유효세율

(단위 : %)

	자금조달 ¹⁾			유형자본 ²⁾			가중 평균	표준 편차
	사내 유보	유상 증자	부채	기계	건축물	재고		
미국	1.67	4.90	1.43	1.51	2.54	2.02	1.91	1.20
일본	2.66	3.88	0.36	0.97	3.14	2.79	1.98	1.23
독일	1.06	2.21	1.21	0.85	1.40	1.91	1.24	0.48
영국	2.74	2.24	1.46	1.88	2.21	3.09	2.24	0.53
한국(2000)	0.89	2.22	0.46	0.44	1.33	1.26	0.87	0.61
한국(2001) ³⁾	0.61	1.41	1.41	0.64	1.34	1.26	0.97	0.35
멕시코	0.77	1.04	1.04	0.73	0.75	1.43	0.89	0.25
스웨덴	1.73	2.17	0.68	1.14	1.43	1.99	1.41	0.51
OECD 평균	1.72	2.59	0.99	1.17	1.71	2.25	1.55	0.56

주 : 1) 기계장치 50, 건축물 28, 재고 22의 가중치로 계산함.

2) 사내유보 55, 유상증자 10, 부채 35의 가중치로 계산함.

3)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제시행을 반영함.

자료 : Dalsgaard(2000)

왜곡은 줄었지만 조세유인이 아직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실질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지나치게 복잡하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자본소득에 대한 표준법정세율이 유사한 수준이다.

<표 8> 자본이득세율의 비교

(단위 : %)

	이자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총법인세율	한계배당세율	금융자본이득
미국	47	40	68	0~20
일본	20	41	71	26
독일	56	58	50	0
영국	40	31	48	0~40
한국 ¹⁾	24(45)	31	46(45)	0~22
멕시코	40	32	40	0
스웨덴	30	28	50	30

주 : 1) 한국의 경우 () 안에서와 같이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설시됨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의 최고한계세율이 44.5% 증가함.

자료 : Dalsgaard(2000)

특히 이자와 배당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부과되며, 대부분의 자본이득은 개인수준에서 비과세된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2001년부터는 높아진다. 그러나 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과도한 편은 아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고 해도 부분귀속partial imputation제도에 의해 이중과세를 부분적으로 조정받으며,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자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자본소득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가

지므로 자본과세의 복잡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2. 기업구조조정과 세제지원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정책은 97년초 대기업의 부도사태가 빈발하면서 IMF의 금융지원이 결정되기 이전인 97년 10월에 처음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퇴출관련제도의 종합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단기과제로 기업인수·합병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기과제로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기업갱생·정리제도의 정비,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도처리제도의 보완, 그리고 상법상 기업분할제도의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단기과제는 IMF의 금융지원이 결정된 후 「기업인수·합병 활성화 방안」(1997. 12. 16)으로 발표되었으며, 97년 세법 개정과정에 반영되어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과다차입금 손비부인제도, 그리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제의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함께 IMF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정부가 98년 2월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들을 제·개정(1998. 2. 24)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외자도입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표 9>와 같이 개정되었으며,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등은 <표 10>과 같이 바뀌었다.

한편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합병지원제도를 더욱 체계화하고, 상법개정에 따라 가능하게 되는 기업분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기업개선작업(workout)과 기업구조조정 전문

회사 및 외자유치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세제지원방안도 강구하였다. 특히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례규정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하였다.

최근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배당을 제외하고 일반 법인간 배당에 대하여 선진국과 같이 이중과세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추가하였다. 또한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를 강화하여 2002년부터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를 자기자본의 5배 초과에서 4배 초과로 변경하고 대상법인도 상장회사, 대규모기업집단에서 협회등록법인까지 확대하였다.

<표 9> IMF 지원 직후 기업구조조정 관련법규 현황

법규	주요내용	종전	현행
외자도입법 법률5523호 (97. 2. 24)	- 적대적 기업인수· 합병	- 외국인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주식소유를 33%까지 허용 - 재정부 장관의 허가 폐지(방위산업체 및 국가기간산업은 제외)

<표 9> 계속

법규	주요내용	종전	현행
공정거래법 법률5528호 (97. 2. 24)	- 출자총액 한도	- 순자산의 25%까지만 취득 허용	- 폐지
	- 상호지급 보증	- 98년 3월까지 자기자본의 100% 이하로 축소 - 초과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간의 신규채무 보증을 금지 -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제
	- 지주회사	- 법적 근거 없음	- 결합채무제표 도입이 완료되는 2000년 이후 검토
증권거래법 법률5521호 (97. 2. 24)	- 의무공개 매수제도	- 특정기업의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려는 경우 50%+1주를 의무공개 매입	- 폐지
	- 소액주주 권한	- 대표소송권 1% - 이사·감사해임청구권 1% - 장부열람권 3%	- 대표소송권 0.05% - 이사·감사해임청구권 0.5% - 장부열람권 1%
	- 자사주 취득한도	- 자기회사에 대한 주식 취득한도를 자기자본의 10%로 제한	- 33%까지 확대
은행법 법률5520호 (97. 2. 24)	- 은행 대출금 출자 전환	- 은행의 타회사에 대한 주식 취득한도를 해당 회사 자본금의 10%로 제한	- 15%로 확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522호 (97. 2. 24)	- 결합채무 제표 도입	- 기업집단 결합채무제표의 도입 : 200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 기업집단 결합채무 제표의 도입 :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표 10> IMF 지원 직후 기업구조조정 관련세제의 제·개정 현황

	주요내용	조항	일시
합병	-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이연 - 합병시 등록세 면제	법인세법 제14조의 5, 조감법 제113조	법률 제5418호 (97. 12. 13)
분할	-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분할에 대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조감법 제40조의 4, 부칙 제113조 및 제114조	법률 제5417호 (97. 12. 13)
부채상환을 위한 자구 노력 지원	-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9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특별부가세 면제 (99. 12. 31까지) - 중소기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면제	조감법 제40조의 3, 부칙 제5조 및 제6조, 제33조의 2	법률 제5417호 (97. 12. 13) 법률 제5524호 (97. 2. 24)
주식양수·도에 대한 지원	-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당해주주의 손비로 인정 - 양도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결손금 초과분을 익금불산입	조감법 제40조의 5	법률 제5524호 (97. 2. 24)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에 대한 지원	-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이연하고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	조감법 제40조의 8, 제113조 및 제114조	법률 제5524호 (97. 2. 24)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지원	- 주주 등이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 -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당해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수증受贈으로 인한 이익을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익금불산입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 증여받은 부동산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조감법 제40조의 6 및 제40조의 7, 제113조 및 제114조, 제40조의 3	법률 제5524호 (97. 2. 24)

<표 10> 계속

	주요내용	조항	일시
자산 처분에 대한 지원	-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조감법 제40조의 9	법률 제5524호 (97. 2. 24)
기타	-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의 손비부인 - 과다차입금 손비부인제도 조기실시 ▪2000년부터 손비불인정 ▪2001년부터는 40%, 2003년부터는 30% 초과분에 대해서도 손비불인정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양도세 감면방법 개선 - 양도세 과세이연대상 법인 전환범위 확대 - 양도세 과세이연대상 중소기업 사업전환요건 완화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18조의 3 제3항 내지 제5항, 부칙 제1조 단서 조감법 제31조~제33조, 제43조, 제44조, 제70조, 제71조	법률 제5418호 (97. 12. 13) 법률 제5525호 (98. 2. 24) 법률 제5417호 (97. 12. 13)

이와 같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은 조세정책상 세원의 누수현상을 방지하고 과세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한시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예를 들어 기업의 연속성이나 소유 구조 등이 적절한 기준에 부합할 때에 부채의 자산전환이나 기업 합병·결합·분할에 제공되는 조세이연의 경우와 같이 기업구조조정보다 중립적인 조세장치에 기여하는 정책수단은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상의 우대 조치는 지식과 기술의 효율성과 확산이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는 있으나 세제의 왜곡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에게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중립성은 물론 형평성에 손상을 입히게 되며 유해한 조세환경을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기업과세의 경제적 분석 - 일반균형모형을 중심으로

1. 기업과세의 경제적 효과와 일반균형모형

본절에서는 일반균형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기업관련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조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균형모형이 경제의 특정부문만 떼어내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특정부문에서의 균형분석을 주로 하는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에 비해 경제변수들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태적 CGE 모형은 모형설정이나 분석이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합리적인 가정에서 출발하여 모형 내의 각 경제주체들이 각 기의 목적함수를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화하는 행동에 따라 행동방정식에 추정되는 것이므로 분석의 결론이 경제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갖는다. 정태분석 일반균형모형은 경제가 충분히 반응하고 난 이후의 장기적인 분석으로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이상적이나 단기적 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정책변화에 따르는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동태적 분석방법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⁸⁾ 예를 들어 투자세액공제제도와 투자준비금제도의 두 정책이 장기적으로 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같을지라도 그러한 투자수준에 이르기까지의 경제의 경로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장기적으

8) 대표적인 것이 Auerbach, Alan, J., and Kotlikoff, Laurence, J., 1988, *Dynamic Fiscal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로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수행과정에서 많은 손실을 경제에 가져와 순효과가 음이 된다면 그러한 정책의 실시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모형으로 무한대표자 계획기간모형Representative Agent Infinite Horizon Model을 사용하였다. 무한계획기간모형Infinite Horizon Model은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이 가지는 문제점인 균형은 존재하는가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이타주의generational altruism가 성립된다면 Barro의 연구에서처럼 무한계획기간모형의 설정은 더욱 타당성을 갖게 된다. 이 모형은 소비자, 즉 가계부문, 기업, 즉 생산부문과 정부의 세 부문으로 나뉘며 각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모형이 성립된다.

(1) 가계부문

가계부문은 하나의 대표적 경제주체Representative Agent 혹은 대표소비자Representative Consumer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경제에서는 모든 것이 평균개념으로서 평균 소비자 혹은 이 경제를 대표할 만한 대표적 경제주체는 매기每期마다 소비량과 노동량,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자산을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예를 들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혹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혹은 주식 등) 소유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가계의 이러한 결정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총효용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의지에 따르며 이러한 선택과정에서 예산선budget constraint의 제약을 받는다. 예산선은 대표소비자가 매기마다 노동을 하여 얻은 임금소득과 다른 자산소득 및 이자소득을 가지고 소비 및 투자활동을 하는 것을 식으로 표시한 것이다. 소비자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1) \quad \text{Max} \sum_{t=0}^{\infty} U(C_t, L_t)$$

$$(1.2) \quad \text{s.t.} \quad C_t + M_t + 1/P_t + B_{pt} + 1/P_t + q_t E_t + 1 = w_t L_t + M_t P_t \\ + R_{pt} B_{pt}/P_t + R_{gt} B_{gt}/P_t + q_t E_t + D_t - T_{ht}$$

$$(1.3) \quad M_t/P_t \geq C_t$$

$$(1.4) \quad \lim_{t \rightarrow \infty} P_t B_{t+1} = 0$$

$$(1.5) \quad M_0 = \bar{M}, \quad P_0 b_0 = \bar{B}$$

여기서	C_t	t기에의 실질소비량
	L_t^s	t기에의 가계가 공급하는 노동량
	w_t	t기에의 실질임금
	m_{t+1}^d	t기에의 실질화폐수요량
	E_{t+1}^d	t기에의 주식수요량
	B_{pt+1}^d	t기에의 회사채수요량
	B_{gt+1}^d	t기에의 국공채수요량
	T_{ht}	t기에의 가계에 부과된 세금의 합
	R_{pt}	t기에의 회사채의 총이자(원금과 이자)
	R_{gt}	t기에의 국공채의 총이자(원금과 이자)
	q_t	t기에의 주식의 가격
	P_t	t기에의 가격

효용함수는 오목함수이며, 매기에 분리적separable이고 가합적ad-

ditive이며 $U_c > 0$, $U_L < 0$ 이다. 사유재와 공공재가 서로 대체재가 아님을 의미하며 만일 G 가 일정수준에 고정되어 있다면 G 를 효용함수에서 제외해도 분석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재화 소비행태가 공공재의 소비행태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으며 재화시장에서 서로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가정하였다. 또한 생산요소시장에서도 사유재(공공재화)의 생산이 공공재화(사유재)의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생산요소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가정하였다.

시간선호율 β 는 0에서 1 사이라고 가정한다. 이는 소비자가 미래의 재화보다 현재의 재화를 선호한다는 의미이며 β 값이 작을수록(클수록) 참을성이 부족함(많음)을 의미한다. β 값이 1이면 미래와 현재를 똑같이 선호하는 것이며, 0이면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선호율을 가진다고 가정하거나 혹은 β 값이 경제 전체 소비자의 평균 시간선호율이라고 가정하여도 무방하다. 총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t 기의 효용 한 단위에 대하여 $t+1$ 기의 효용이 $1/\beta$ 단위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산식 오른쪽의 항목은 수입의 원천을 나타내며 원편항목은 수입의 사용을 나타낸다. 우선 수입의 사용을 보면 소비재 구입 및 다음 기에 사용될 화폐, 주식, 회사채, 국공채의 구입과 세금 지불이 있다. 수입의 원천을 보면 가계는 매기마다 기업에 노동력 L_t 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질임금 w_t 를 받는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매기 노동자에게 주어진 총시간의 크기를 1로 정규화한다. 그러므로 매기의 여가시간의 크기는 1에서 노동시간을 뺀 $(1-L_t)$ 가 된다. 수입의 원천에는 그 외에도 자산소득으로 전기에 사들여 보유한 회사채 및 국공채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및 원금과 역시

전기에 사들였던 주식 및 배당금이 있다. 지난 기期로부터 가져온 화폐도 수입의 원천이 되나 다른 수입의 원천과는 달리 현금계약식에 제약을 받는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주체는 소비재를 구입할 때 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화폐는 전기 말 화폐시장에서 구입하게 된다. 그 외에 투자나 세금지불을 위한 지출의 경우 신용의 형태로 가능하다. 화폐계약모형의 경우 매기마다 시간표time table의 설정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Lucas의 시간표를 가정하였다. 즉 매기의 초기에 소비자는 전기에 가지고 있던 화폐를 가지고 재화시장에 가서 소비재를 구입하고 금융시장에 가서 회사채, 국공채 및 주식을 사고 팔며 이자 및 배당금을 받은 다음 직장으로 가서 일을 하고 그 기의 마지막 시간에 화폐시장에 가서 다음 기의 초기에 소비재 구입을 위한 화폐를 구입한다.

소비자의 예산선에서 쓰여진 모든 변수는 화폐량과 회사채, 국공채 발행량을 제외하고는 실질변수로 재화의 단위로 표현된다. 명목변수인 화폐량과 회사채, 국공채 발행량을 실질변수로 바꾸기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⁹⁾

$$(1.6) \quad \pi_t = \frac{P_t - P_{t-1}}{P_t}$$

이 모형에서 사용한 실질화폐량과 명목화폐량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9) 이와 같은 물가상승률의 정의는 대체로 많이 쓰이는 $\mathbf{\pi}_t^* = (P_t - P_{t-1})/P_t$ 의 정의와는 $1/(1 - \mathbf{\pi}_t) = \mathbf{\pi}_t^*$ 의 관계에 있으며, 어떠한 식의 정의를 사용하든 논의 전개에는 상관이 없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의는 논의진행상 본 연구에 편리하므로 사용하였다.

$$(1.7) \quad m_{t+1} = \frac{M_{t+1}}{P_t}$$

이때 M_{t+1} 은 t 기의 명목화폐수요량이며, 이를 P_t , 즉 t 기의 일반적 물가로 나눈 것이 실질화폐수요량 m_{t+1} 이 된다. 마찬가지로 회사채와 국공채의 명목수요량과 실질수요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8) \quad b_{pt+1} = \frac{B_{pt+1}}{P_t}$$

$$(1.9) \quad b_{gt+1} = \frac{B_{gt+1}}{P_t}$$

식(1.6)~식(1.9)의 명목수요량과 실질수요량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1.2)의 예산제약식과 식(1.3)의 화폐제약식을 실질변수만의 식으로 다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10) \quad C_t + m_{t+1}^d + b_{pt+1}^d + b_{gt+1}^d + q_t E_{t+1}^d = W_t L_t^s + m_t + R_{pt} b_{pt} + R_{gt} b_{gt} + q_t E_t - \pi_t (m_t + b_{pt} + b_{gt}) + D_t - T_{ht}$$

$$(1.11) \quad (1 - \pi_t) m_t \geq C_t$$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비자의 최적화 문제에서 결정된 것은 실현된 것이 아닌 계획된 소비수요 및 각종 금융자산수요와 노동의 공급함수라는 것이며, 이것들을 표기하기 위하여 윗첨자 d (수요)와 s (공급)로 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1.12) \quad U(C_t, L_t) = \frac{A(C_t^s (1-L_t)^{(1-s)})^{(1-\frac{1}{s})} - 1}{1 - \frac{1}{s}}$$

$$= \log A + e \log C_t + (1-e) \log(1-L_t)$$

단, $s > 0$ 이며 $s \neq 0$ 이다.

여기서 s 는 시간에 걸친 소비와 여가의 대체탄력성(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in consumption and leisure)이며 e 는 소비자가 소비와 여가에 두는 비중의 정도이다. s 의 값이 작을수록 소비와 여가의 사용을 시간에 걸쳐 부드럽게 하려는 정도가 작아져, 극단적인 경우 s 의 값이 0이면 Leontieff 형태의 효용함수가 되어 시간에 걸친 소비와 여가의 대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A 는 임의의 상수이다.

(2) 생산부문

생산부문 혹은 기업은 회사채 발행, 주식발행 및 배당금 지급 등의 재무결정을 함과 동시에 노동과 자본을 고용하여 생산을 한다. 기업의 이러한 활동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요약된다.¹⁰⁾

$$(2.1) \quad Y_t^s = f(K_t, L_t^d)^d$$

$$(2.2) \quad Pr_t = y_t^s - w_t L_t^d$$

10) 윗첨자 s 는 공급을 의미하며 d 는 수요를 의미한다. 또한 아랫첨자 t 는 시간을 나타낸다.

$$(2.3) \quad Pr_t = r_{pt} b_{pt}^s + D_t + RE_t + T_{ft}$$

$$(2.4) \quad K_{t+1} - K_t + \delta K_t = RE_t + q_t(E_{t+1}^s - E_t) + (\pi_t b_{pt} - b_{pt})$$

단	b_{pt}	t기의 회사채공급량
	K_t^d	t기의 자본수요량
	L_t^d	t기의 노동수요량
	Y_t^s	t기의 실질총생산량
	r_{pt}	t기의 회사채의 이자율($R_{pt} = 1 + r_{pt}$)
	q_t	t기의 주식의 실질가격
	π_{t+1}	t기의 물가상승률
	E_t	t기의 주식량
	Pr_t	t기의 실질총이윤
	RE_t	t기의 기업의 사내유보
	T_{ft}	t기의 기업의 총세금 지출액
	D_t	t기의 배당금액

(2.1)은 생산함수로 노동과 자본을 투입물로 하여 생산하며 규모의 보수불변이고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을 만족하며 자본은 매기 δ 의 율로 감가상각하게 된다. (2.2)는 실질총이윤이 총수익에서 노동에 지불한 임금을 뺀 것임을 정의하고 있다.¹¹⁾

식(2.3)은 총이윤의 지출내역을 밝히는 것이다. 실질총이윤은 회사채에 대한 이자지불과 세금지불,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 쓰이며 그 나머지는 사내유보금으로 남게 된다. 자본의 증가는 사내유보금이나 회사채의 발행, 신주발행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

11) 총이윤에 대한 정의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등으로 총당됨을 식(2.4)가 설명하고 있다. t 기의 기업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을 V_t 라고 하면 V_t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5) \quad V_t = b_{pt} + q_t E_t$$

기업의 목적은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즉 주식과 1기 만기의 회사채의 실질 시장가격의 극대화에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Brock과 Turnovsky의 가정에 따른 것으로 만일 배당금이 신주식 발행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Auerbach의 모형에서의 가정인 기존 주주의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가정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 기업의 목적함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위의 식들을 정리하여 (2.3)과 (2.4)에서 RE_t 를 제거하여 (2.6)을 얻는다.

$$(2.6) \quad \begin{aligned} Pr_t - (K_{t+1} - K_t + \delta K_t) &= r_{pt} b_{pt} + D_t + T_{ft} \\ &\quad - q_t (E_{t+1} - E_t) - (\pi_t b_{pt} - b_{pt}) \end{aligned}$$

여기서 순현금의 흐름을 γ_t 로 쓰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7) \quad \gamma_t = (1 - \tau_{pt})(f(K_t, L_t) - w_t l_t) - (1 - \theta_t)(K_{t+1} - K_t + \delta K_t)$$

(2.2)와 (2.7)을 (2.6)에 치환하고 (2.5)를 이용하여 (2.6)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2.8) \quad \gamma_t = r_{pt} b_{pt} + D_t + T_{ft} + b_{pt} + q_t E_t - q_t E_{t+1} - \pi_t b_{pt}$$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기업이 발행하는 매기 회사채의 총액과 배당총액은 주식 시가총액에 대하여 일정비율 α_t 와 d_t 를 각각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즉

$$(2.9) \quad b_{pt} = \alpha_t q_t E_t$$

$$(2.10) \quad D_t = d_t q_t E_t$$

위의 두 가정을 이용하면 t 기의 유가증권 총액인 V_t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11) \quad V_t = b_{pt} + q_t E_t = (1 + \alpha_t) q_t E_t$$

(2.3)을 이용하여 T_{ft} 를 치환하고 (2.9), (2.10)과 (2.11)을 이용하여 정리하여 보면 (2.8)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12) \quad \begin{aligned} \gamma_t = & r_{pt}(1 - \tau_{pt})\alpha_t q_t E_t + d_t q_t E_t + b_{pt} + q_t E_t \\ & - (q_t/q_{t+1})E_{t+1} - \pi_t \alpha_t q_t E_t \end{aligned}$$

혹은

$$(2.13) \quad \gamma_t = (1 + r_{pt}(1 - \tau_{pt}) + d_t - \pi_t \alpha_t) q_t E_t$$

$$(2.14) \quad \gamma_t = \left(1 + \frac{\alpha_t r_{pt}(1 - \tau_{pt}) + d_t - \pi_t \alpha_t}{(1 + \alpha_t)}\right) V_t - \frac{(q_t/q_{t+1})}{(1 + \alpha_{t+1})} V_{t+1}$$

다시 쓰면

$$(2.15) \quad V_t = \frac{(1 + \alpha_t)(q_t/q_{t+1})}{(1 + \alpha_t + d_t + \alpha_t r_{pt}(1 - \tau_{pt}) - \pi_t \alpha_t)(1 + \alpha_{t+1})} V_{t+1} \\ + \frac{(1 + \alpha_t)}{1 + \alpha_t + d_t + \alpha_t r_{pt}(1 - \tau_{pt}) - \pi_t \alpha_t} \gamma_t$$

여기서 V_t , V_{t+1} 과 γ_t 의 계수에는 기업의 최적화 문제의 결정 변수인 $\{K_t, L_t\}_{t=0}^{\infty}$ 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상수항으로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할 수 있다.

$$(2.16) \quad V_t = A_t V_{t+1} + B_t \gamma_t$$

$$\text{단,} \quad A_t = \frac{(1 + \alpha_t)}{(1 + \alpha_t + d_t + \alpha_t r_{pt}(1 - \tau_{pt}) - \pi_t \alpha_t)(1 + \alpha_{t+1})} \frac{q_t}{q_{t+1}} \\ B_t = \frac{(1 + \alpha_t)}{1 + \alpha_t + d_t + \alpha_t r_{pt}(1 - \tau_{pt}) - \pi_t \alpha_t}$$

식(2.16)은 second order difference equation으로 forward solving method에 의하여 풀면 다음과 같다.

$$(2.17) \quad V_t = \sum_{i=0}^s \left\{ \prod_{j=0}^i A_{t+j} \right\} B_{t+i} \gamma_{t+i} + \left\{ \prod_{i=0}^s A_{t+i} \right\} V_{t+s+1}$$

여기서 a 는 임의의 상수이며 V_t 가 무한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2.18) \quad \sum_{i=s+1}^{\infty} \left\{ \prod_{j=0}^i A_{t+j} \right\} B_{t+i} \gamma_{t+i} = \left\{ \prod_{i=0}^s A_{t+i} \right\} V_{t+s+1}$$

초기의 기업의 유가증권 총액의 가치인 V_0 는 다음과 같으며 기업의 극대화의 목적함수가 된다.

$$(2.19) \quad V_0 = \sum_{t=1}^{\infty} \left\{ \prod_{j=0}^t A_j \right\} B_t \gamma_t$$

그러므로 이제 생산부문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20) \quad \text{Max}_{\{k_{t+1}, l_t\}} \sum_{t=0}^{\infty} \left\{ \prod_{j=0}^t A_j \right\} B_t \gamma_t$$

혹은

$$(2.21) \quad \text{Max}_{\{K_{t+1}, L_t\}} \sum_{t=0}^{\infty} \left\{ \prod_{j=0}^t A_j \right\} B_t \{ (1 - \tau_{pt})(f(K_t, L_t) - w_t L_t) - (1 - \theta_t)(K_{t+1} - K_t + \delta K_t) \}$$

기업의 최적화문제에서 순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γ_t 는 실질노동변수와 실질자본스톡 변수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할인율인 $\left\{ \prod_{j=0}^t A_j \right\}$ 에는 $\{d_j, \tau_{pj}, r_{pj}, \pi_{j+1}, \alpha_j, q_{j+1}/q_j\}_{j=0}^t$ 와 같은 금융변수와 정책변수들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이 정책변수들은 정부에 의하여 가계부문의 최적화 행동에 의하여 결정된다.

$$(2.22) \quad V_t = \sum_{i=1}^s \left\{ \prod_{j=0}^i A_{t+j} \right\} B_{t+j} \gamma_{t+i} + \left\{ \prod_{i=0}^s A_{t+i} \right\} V_{t+s+1}$$

$$A_t = \frac{(1 + \alpha_t)}{(1 + \alpha_t + d_t + \alpha_t r_{pk}(1 - \tau_{pk}) - \pi_t \alpha_t)(1 + \alpha_{t+1})} \frac{q_t}{q_{t+1}}$$

$$B_t = \frac{(1 + \alpha_t)}{1 + \alpha_t + d_t + \alpha_t r_{pk}(1 - \tau_{pk}) - \pi_t \alpha_t}$$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산함수는 Cobb-Douglas 생산함수로 다음과 같다.

$$(2.23) \quad f(K_t, L_t) = x K_t^\alpha L_t^{y(1-\alpha)}$$

생산의 한계대체율이 1인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자본과 노동간의 조세의 귀착을 분석할 때 생산의 한계대체율이 1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요소 변화에 따른 생산요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생산의 한계대체율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생산요소 공급변화에 따른 생산요소가격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그에 따른 요소의 변화가 적게 되므로 후생비용의 값이 달라지게 된다. 많은 나라의 경우 생산의 한계대체율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콥더클러스 생산함수를 가정하였다.

(3) 정부부문

이 모형에서 정부는 공공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지출과 음의 세금인 세액공제 및 특별감가상각과 같은 조세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률의 세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세수입을 거두

어 들이며, 세수입 이외의 수입원으로서 화폐를 발행하며 각종의 국공채 발행도 한다. 정부의 공공재화 및 서비스의 지출이 민간경제의 재화시장에서 재화간의 한계대체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정부는 매기마다 균형예산을 이루기 위하여 이전지출인 Tr_t 를 사용한다. 이때 이전지출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은 생산요소시장이나 재화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 시장이 양 혹은 부의 이전지출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정부가 당면하는 예산선은 다음과 같다.

(3.1)

$$\frac{(M_{t+1}^s - M_t)}{P_t} + \frac{(b_{gt+1}^s - b_{gt})}{P_t} = g_t + r_{gt}b_{gt} - T_{ht} - T_{ft} + Tr_t$$

위의 정부 예산식의 왼쪽항은 화폐발행에 의한 정부수입과 국공채의 발행에 의한 정부의 수입이다. 정부의 화폐발행에 의한 수입만을 앞에서 정의한 실질화폐량과 명목화폐량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3.2) \quad \frac{(M_{t+1} - M_t)}{P_t} = m_{t+1} - m_t + m_t\pi_t$$

화폐발행에 의한 정부의 수입 중 $m_{t+1} - m_t$ 는 순수한 실질화폐 발행액의 차로 생기는 것이며, $m_t\pi_t$ 는 정부가 화폐공급의 변화로 물가변화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므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세금 inflation tax이 된다. 정부의 국공채 발행에 의한 수입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며 이 중 $b_{gt}\pi_t$ 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세금이 된다.

$$(3.3) \quad \frac{(b_{gt+1} - b_{gt})}{P_t} = b_{gt+1} - b_{gt} + b_{gt}\pi_t$$

위의 관계를 이용하여 정부의 예산식을 쓰면 다음과 같다.

(3.4)

$$m_{t+1}^s + m_t\pi_t - m_t + b_{gt+1}^s + b_{gt}\pi_t + T_{ht} + T_{ft} = g_t + R_{gt}b_{gt} + Tr_t$$

정부 예산식(3.1)의 오른쪽 항은 정부의 지출항목을 나타내며, 왼쪽 항에 있는 화폐발행과 국공채 발행에 의한 수입 및 가계, 및 기업으로부터의 세금의 합과 일치하도록 정부는 매기 균형예산을 편성한다고 가정한다.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수입인 T_{ht} , T_{ft} 를 구체적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다.

$$(3.5) \quad T_{ht} = \tau_{yt}(w_t L_t^s + R_{gt}b_{gt}^d + R_{pt}b_{pt}^d + d_t q_t E_t) + \tau_{ct}(q_t - q_b)(E_{t+1} - E_t) + Tr_t$$

$$(3.6) \quad T_{ft} = \tau_{pt}(y_t^s - w_t l_t^d - r_{pt}b_{pt}^s) - \theta_t(k_{t+1} - k_t + \delta k_t)$$

단,	τ_{yt}	법인세율
	τ_{pt}	개인소득세율
	τ_{ct}	자본이득세율
	q_b	초기주식가격
	θ_t	투자소득공제율 Investment Tax Credit

먼저 개인이 지불하는 세금인 T_{it} 를 보면 가계는 임금과 이자 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에 대하여 τ_{pk}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과 더불어 자본이득세 τ_{d} 를 내게 된다. 기업의 세금인 T_{it} 는 이윤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 내는 법인세와 투자유인을 위한 장치로 순투자에 대한 소득액공제인 음의 세금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화폐공급은 매기 전기 화폐발행량의 일정률로 다음의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3.7) \quad \frac{M_{t+1}}{P_t} = \mu_t \frac{M_t}{P_t}$$

혹은

$$(3.8) \quad m_{t+1} = \mu_t(1 - \pi_t)m_t$$

단, μ_t 는 매기의 통화증가율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동태적 거시경제효과를 설명할 때 정부의 지출은 국민순생산에 비례하거나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3.9) \quad G_t = g f(K_t, L_t)$$

2. 일반균형분석모형의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1) 균형의 정의

앞장에서 설정한 동태적 완전예측모형에 의한 균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동태적 완전예측균형은 정부의 정책변수인 $\{\tau_{yt}, \tau_{pt}, \tau_d, \theta\}_{t=0}^{\infty}$ 가 주어졌을 때 분배를 결정하는 변수인 $\{C_t, k_t, l_t, E_{t+1}, b_{pt+1}, b_{gt+1}\}_{t=0}^{\infty}$ 와 가격변수인 $\{q_t, r_{gt}, r_{pt}, w_t, P_t\}_{t=0}^{\infty}$ 와 정책변수인 $\{Tr_t\}_{t=0}^{\infty}$ 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A. 소비자의 최적화조건

$\{C_t, k_t, l_t, E_{t+1}\}_{t=0}^{\infty}$ 은 소비자의 예산선인 식(1.10)과 화폐 제약조건인 식(1.11)의 제약하에서 식(1.12)를 극대화한다.

B. 생산자의 최적화조건

$\{k_{t+1}, L_t\}_{t=0}^{\infty}$ 은 식(2.21)을 만족한다.

C. 정부의 예산균형조건

$\{Tr_t\}_{t=0}^{\infty}$ 은 식(3.4)를 만족한다.

D. 시장균형조건

생산요소시장 균형조건

$$(4.1) \quad F_L(K_t, L_t) = w_t$$

$$(4.2) \quad F_K(K_t, L_t) = r_t$$

화폐시장 균형조건

$$(4.3) \quad M_t^d = M_t^s$$

금융시장 균형조건

$$(4.4) \text{ 채권시장} \quad b_{pt}^d = b_{pt}^s, \quad b_{gt}^d = b_{gt}^s$$

$$(4.5) \text{ 주식시장} \quad E_t^d = E_t^s$$

재화시장 균형조건

$$(4.6) \quad F_k(k_t, L_t) = C_t + g_t + k_{t+1} - k_t + \delta k_t$$

E. Transversality Condition

$$(4.7) \quad \lim_{t \rightarrow \infty} P_t b_{pt+1} = 0$$

$$(4.8) \quad \lim_{t \rightarrow \infty} P_t b_{gt+1} = 0$$

$$(4.9) \quad M_0 = \bar{M}, \quad P_0 b_0 = \bar{B}$$

(2) 균형의 도출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문제의 필요조건으로부터 소비와 각종 유가증권(주식 및 국공채와 회사채), 그리고 화폐의 수요함수 $\{C_t^d, b_{gt}^d, b_{pt}^d, E_t^d, M_t^d\}_{t=0}^{\infty}$ 와 노동의 공급함수 L_t^s 가 도출되며, 이들은 각종의 가격변수인 $\{q_t, r_{gt}, r_{pt}, w_t, \pi_t\}_{t=0}^{\infty}$ 의 함수로 나타내어 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생산부문의 최적화 문제의 1차 조건으로부터

터 노동과 자본의 수요함수 $\{L_t^d, k_{t+1}^d\}_{t=0}^\infty$ 및 각종 유가증권의 공급함수 $\{b_{pt}^s, E_t^s\}_{t=0}^\infty$ 를 도출해내게 되며 정부의 정책변수의 결정은 화폐공급함수 $\{M_t^s\}_{t=0}^\infty$, 정부가 공급하는 국공채의 공급함수 $\{b_{gt}\}_{t=0}^\infty$ 및 정부의 지출수요함수 $\{g_t\}_{t=0}^\infty$ 를 도출하게 된다. 동태적 완전예측균형은 모든 계획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며 경제 내의 모든 시장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즉 노동과 재화, 각종 유가증권 및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며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생산요소가격은 가계부문과 기업 모두에게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소비자의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하여 Lagrangian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10)

$$L = \sum_{t=0}^{\infty} \beta^t \{ U(C_t, L_t) - \lambda_t (C_t + m_{t+1}^d + b_{pt}^d + b_{gt+1}^d + q_t E_{t+1}^d - w_t L_t^s - m_t - R_{pt} b_{pt} - R_{gt} b_{gt} - q_t E_t) + \pi_t (m_t + b_{pt} + b_{gt}) - D_t + T_{ht} \} + \gamma_t ((1 - \pi_t) m_t - C_t)$$

여기서 λ_t, γ_t 는 각각 소비자의 예산제약식과 화폐제약식에 대한 Lagrangian 변수이다. 최적화를 위한 1차 조건은 위의 Lagrangian 함수를 각각의 변수 $\{C_t, L_t, m_{t-1}, b_{pt+1}, b_{gt+1}, E_{t+1}\}$ 에 대하여 편미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

$$(4.11) \quad L_{C_t} = \beta^t U_{C_t} - \beta^t \lambda_t - \beta^t \gamma_t = 0$$

$$(4.12) \quad L_{L_t} = \beta^t U_{L_t} - \beta^t \lambda_t w_t (1 - \tau_{yt}) = 0$$

$$(4.13) \quad L_{m_{t+1}} = -\beta^t \lambda_t + \beta^{t+1} (\lambda_{t+1} + \gamma_{t+1}) (1 - \pi_{t+1}) = 0$$

$$(4.14) \quad L_{b_{g_{t+1}}} = -\beta^t \lambda_t + \beta^{t+1} \lambda_{t+1} (R_{gt+1} (1 - \tau_{yt}) - \pi_{t+1}) = 0$$

$$(4.15) \quad L_{b_{a_{t+1}}} = -\beta^t \lambda_t + \beta^{t+1} \lambda_{t+1} (R_{pt+1} (1 - \tau_{yt}) - \pi_{t+1}) = 0$$

$$(4.16)$$

$$L_{E_{t+1}} = -\beta^t \lambda_t [(1 + \tau_{ct}) q_t - \tau_{ct} q_b] + \beta^{t+1} \lambda_{t+1} \\ [\{1 + \tau_{ct+1} + d_{t+1} (1 - \tau_{yt})\} q_{t+1} - \tau_{ct+1} q_b] = 0$$

기업의 최적화 문제는 앞에서 도출한 기업의 목적함수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가치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K_{t+1}^d, L_t^d\}_{t=0}^\infty$ 를 구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17) \quad \text{Max}_{\{K_{t+1}, L_t\}} \sum_{t=0}^{\infty} \left\{ \prod_{j=0}^t A_j \right\} B_t [(1 - \tau_{pt}) \{f(K_t, L_t) - w_t L_t - r_{pt} b_{pt}\} - (1 - \theta_t)(k_{t+1} - k_t + \delta k_t)]$$

$$(4.18) \quad L_{L_t} = \left\{ \prod_{j=0}^t A_j \right\} B_t \{ (1 - \tau_{pt}) f_L(K_t, L_t) - w_t \} = 0$$

$$(4.19) \quad L_{K_t} = \left\{ \prod_{j=0}^{t+1} A_j \right\} B_{t+1} \{ (1 - \tau_{pt+1}) f_K(K_{t+1}, L_{t+1}) + (1 - \theta_{t+1})(1 - \delta) \} - \left\{ \prod_{j=0}^t A_j \right\} B_t (1 - \theta_t) = 0$$

위의 1차조건들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4.18') \quad (1 - \tau_{pt})f_L(K_t, L_t) = w_t$$

$$(4.19') \quad \left\{ \prod_{j=0}^{t+1} A_j \right\} B_{t+1} \{ (1 - \tau_{pt+1})f_K(K_{t+1}, L_{t+1}) + (1 - \theta_{t+1})(1 - \delta) \} - \left\{ \prod_{j=0}^t A_j \right\} B_t (1 - \theta_t) = 0$$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의 A_t 와 B_t 에서 $\frac{q_t}{q_{t+1}}$, r_{pt} , π_t 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 α_t , d_t , τ_{pt} , α_{t+1} 등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변수이며, $\frac{q_t}{q_{t+1}}$, r_{pt} 는 소비자의 최적화 문제로부터 π_t 는 소비자 최적화 문제와 정부의 금융정책에 의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선 소비자의 최적화 문제와 정부의 정책 결정을 파악한 후에 여기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생산을 결정하는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된다. 소비자의 최적화문제로부터 도출된 방정식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정부가 발행한 국공채를 완전대체재로 가정하면 그에 대한 실질 순수익률인 r_{pt} 와 r_{gt} 가 같아진다.

$$(4.20) \quad \frac{U_{L_t}}{\beta U_{C_{t+1}}(1 - \pi_{t+1})} = -w_t(1 - \tau_{yt})$$

$$(4.21) \quad \begin{aligned} r_{t+1} &= \frac{w_{t+1}(1 - \tau_{yt+1})U_{L_t}}{\beta w_t(1 - \tau_{yt})U_{L_{t+1}}(1 - \tau_{yt})} + \frac{\pi_{t+1} - 1 + \tau_{yt}}{(1 - \tau_{yt})} \\ &= \frac{U_{C_{t+1}}(1 - \pi_{t+1})}{\beta U_{C_{t+2}}(1 - \pi_{t+2})(1 - \tau_{yt})} + \frac{\pi_{t+1} - 1 + \tau_{yt}}{(1 - \tau_{yt})} \end{aligned}$$

여기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 주식의 초기값이 0이라고 가정하면

$$(4.22) \quad \frac{q_t}{q_{t+1}} = \frac{\beta U_{C_{t+2}}(1-\pi_{t+2})}{U_{C_{t+1}}(1-\pi_{t+1})} \frac{1+\tau_{ct}+d_t(1-\tau_{ct})}{1+\tau_{ct}}$$

$$= \frac{\beta U_{L_{t+1}} w_t (1-\tau_{yt})}{U_{L_t} w_{t+1} (1-\tau_{yt+1})} \frac{1+\tau_{ct}+d_t(1-\tau_{ct})}{1+\tau_{ct}}$$

소비자의 예산식에서 정부의 예산식을 이용하여 이진지출 Tr_t 를 제거하고 화폐제약식을 이용하여 화폐량 m_t 를 제거한 후 완전경쟁 요소시장조건을 이용하면 경제의 실질활동만을 나타내는 다음의 식을 얻게 된다.

$$(4.23) \quad F(K_t, L_t) = K_{t+1} - K_t + \delta K_t + C_t + G_t$$

기업의 최적화 문제에서 할인율을 구성하는 A_t 와 B_t 에서 소비자의 최적화결정을 위해 얻어지는 q_t/q_{t+1} , r_{pt} , π_t 를 (4.21)과 (4.22)를 이용하여 (4.18)과 (4.19)에 대입하고 완전경쟁 요소시장조건 (4.1), (4.2)를 이용하여 정리, 방정식체계를 풀면 다음과 같다.

$$(4.24) \quad \frac{U_{L_t} C_t \mu_t}{(\beta U_{C_{t+1}} C_{t+1})} = -(1-\tau_{yt})(1-\tau_{pt})f_L(K_t, L_t)$$

$$(4.25) \quad \left\{ \prod_{j=0}^{t+1} A_j \right\} B_{t+1} \{ (1-\tau_{pt})f_K(K_{t+1}, L_{t+1}) + (1-\theta_{t+1})(1+\delta) \}$$

$$- \left\{ \prod_{j=0}^t A_j \right\} B_t (1-\theta_t) = 0$$

(4.23)에서 앞에서 가정한 것처럼 정부의 지출이 고정되어 있거나 매기의 국민순생산에 비례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begin{aligned}
 (4.26) \quad C_t &= f(K_t, L_t) - K_{t+1} + K_t - G_t \\
 &= C(K_t, K_{t+1}, L_t)
 \end{aligned}$$

그러므로 t 기의 소비와 여가에 대한 한계효용도 다음과 같이 t 기와 그 다음 기간의 자본과 t 기의 노동의 함수식으로 쓸 수 있다.

$$\begin{aligned}
 (4.27) \quad U_c(C_t, L_t) &= U_c(C(K_{t+1}, K_t, L_t), L_t) \\
 &= U_c(K_{t+1}, K_t, L_t)
 \end{aligned}$$

$$\begin{aligned}
 (4.28) \quad U_L(C_t, L_t) &= U_L(C(K_{t+1}, K_t, L_t), L_t) \\
 &= U_L(K_{t+1}, K_t, L_t)
 \end{aligned}$$

이 모형의 동태적 완전예측균형을 나타내는 (4.24) - (4.25)를 (4.27)과 (4.28)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4.30)에 있는 기업의 할인율 A 와 B 에서 r_{pt} 와 q_t/q_{t+1} 에 있는 여가와 소비의 한계효용도 (4.27)과 (4.28)로 대치하여 C 를 치환하면 동태적 완전예측균형모형의 방정식체계는 (4.29)과 (4.30)으로 압축된다.

$$\begin{aligned}
 (4.29) \quad & \frac{U_L(K_{t+1}, K_t, L_t) C(K_t, K_{t+1}, L_t) \mu_t}{\beta U_c(K_{t+2}, K_{t+1}, L_{t+1}) C(K_{t+2}, K_{t+1}, L_{t+1})} \\
 & = -(1 - \tau_m)(1 - \tau_y) f_L(K_t, L_t)
 \end{aligned}$$

(4.30)

$$\left\{ \prod_{j=0}^{t+1} A_j \right\} B_{t+1} \{ (1 - \tau_{pt}) f_k(k_{t+1}, L_{t+1}) - (1 - \theta_{t+1})(1 + \delta) \} \\ + \left\{ \prod_{j=0}^t A_j \right\} B_t (1 - \theta_t) = 0$$

(3) 경제적 효과

본 모형에서 정부의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르는 거시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부의 정책변수 $\{ \hat{\tau}_{yt}, \hat{\tau}_{pt}, \hat{\tau}_{at}, \hat{\theta}_t \}_{t=0}^{\infty}$ 와 관련 동태적 완전예측균형의 정의를 만족하며 자원분배를 결정하는 변수인 $\{ \bar{C}_t, \bar{K}_t, \bar{L}_t, \bar{E}_{t+1} \}_{t=0}^{\infty}$ 와 가격변수 $\{ \hat{q}_t, \hat{r}_{gt}, \hat{r}_{pt}, \hat{w}_t \}_{t=0}^{\infty}$, 정부의 내생적 정책변수인 $\{ \bar{\tau}_t \}_{t=0}^{\infty}$ 를 총괄하여 대표하는 대표변수 벡터를 $\{ \bar{\tau}_t \}_{t=0}^{\infty}$ 라 하면 정부정책 $\{ \bar{\tau}_t \}_{t=0}^{\infty}$ 하에서의 간접효용함수 $V(\eta : \bar{\tau})$ 는 총효용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31) \quad V(\eta : \bar{\tau}) = \sum_{t=0}^{\infty} \beta^t U((1 + \eta) C_t, L_t)$$

여기서 η 는 임의의 상수로서 $\bar{\tau}$ 정책하에서 가계부문이 매기의 소비를 η 만큼 증가(η 가 양일 때) 혹은 감소(η 가 음일 때)함으로써 후생이 증가 혹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전체의 후생의 증감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이 $\bar{\tau}$ 정책에서 $\bar{\tau}'$ 정책으로 변환하였을 때 정책변환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32) \quad V(0 : \overline{T}) = V(\eta : \overline{T})$$

위의 식(4.32)는 정부가 \overline{T} 정책에서 \underline{T} 정책으로 정책을 바꾸었을 때 이 경제전체의 후생변화 정도를 정책변화 전 매기소비의 η 만큼 변화였다고 정의하는 것이다. 이때 η 가 양이면 후생의 감소를, 음이면 후생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4) 정체상태의 경제효과 분석 Steady States Analysis

기존의 대부분 일반균형모형에 의한 경제분석이 정체상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연구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의 정체상태에서의 경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소비자 최적화 문제의 1차조건들의 정체상태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4.33) \quad U_c = \lambda + \gamma$$

$$(4.34) \quad U_L = -\lambda w(1 - \tau_y)$$

$$(4.35) \quad \lambda = \beta(\lambda + \gamma)(1 - \pi)$$

$$(4.36) \quad \frac{1}{\beta} = R_g(1 - \tau_y) - \pi$$

$$(4.37) \quad \left(\frac{1}{\beta} - 1\right)\{(1 + \tau_c)q - \tau_a a_b\} = d(1 - \tau_y)q$$

$$(4.38) \quad f(K, L) = C + G + \delta K$$

식(4.33)과 식(4.35)를 이용하여 (4.34)에서 \mathbf{l} 와 \mathbf{r} 를 제거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식으로 요약된다.

$$(4.39) \quad \frac{U_L}{U_C} = \beta w(1 - \pi)(1 - \tau_y)$$

기업의 최적화 1차조건의 정체상태관계는 다음의 (4.40), (4.41) 두 식으로 요약된다.

$$(4.40) \quad (1 - \tau_p)f_L(K, L) = w$$

$$(4.41) \quad A\{(1 - \tau_p)f_K(K, L) - (1 - \theta)(1 + \delta)\} + (1 - \theta) = 0$$

$$(4.42) \quad f_K(K, L) = \frac{(1 - \theta)(1/A - 1 + \delta)}{(1 - \tau_p)}$$

식(4.35)~(4.39)를 정리하고 정체상태에서의 물가상승률 π 는 식(3.5)로부터 $1 - \pi = 1/\mu$ 가 됨을 이용하면 식(4.43)~(4.46)은 정체상태의 방정식체계가 된다. 정체상태의 자본스톡, 노동량, 유가증권의 실질수익률, 주식의 가격 등에 의한 방정식체계를 풀면 정체상태의 각 변수를 구할 수 있다.

$$(4.43) \quad f_L(K, L) = \frac{U_L}{U_C} \frac{\mu}{\beta} \frac{1}{(1 - \tau_y)(1 - \tau_p)}$$

$$(4.44) \quad R_p = R_g = \left(\frac{1}{\beta} + 1 - \frac{1}{\mu}\right) \frac{1}{(1 - \tau_y)}$$

$$(4.45) \quad q = \frac{\left(\frac{1}{\beta} - 1\right) \tau_c}{\left(\frac{1}{\beta} - 1\right)(1 + \tau_c) - d(1 - \tau_y)} q_b$$

$$(4.46) \quad f_k(K, L) = \frac{(1 - \theta)}{(1 - \tau_p)} (1/A - 1 + \delta)$$

우선 식(4.4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여가 및 소비에 대한 개인의 한계효용에 대해 음으로 반응한다. 정부의 정책변수인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화폐공급이 모두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신고전학파적 생산함수를 가정할 경우 노동의 한계생산성의 증가는 노동량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소득세율(τ_y)이나 법인세율(τ_p)을 올리게 되면 노동수준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화폐공급률(μ)을 높여도 노동수준이 줄게 된다.

(4.44)에서 보듯이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수익률은 총실질이자율 $R(=1+r)$ 과 역수의 관계에 있는 개인의 정체상태에서의 효용할인인자 β 와 정부의 화폐공급률(μ) 및 개인소득세율(τ_y)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화폐공급률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회사채수익률이나 국공채수익률이 상승하게 된다. 소득세율의 상승은 수익률에 전가되어 회사채수익률이나 국공채수익률이 상승에 기여하게 된다. 식(4.45)에서 나타나듯이 주식의 가격에 대한 세금변수들의 영향은 상반된다. 소득세율은 주식가격을 하락시키는 반면 자본이득세율을 올리게 되면 일정영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식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frac{d\alpha}{d\tau_c} > 0$ 인 τ_c 의 영역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tau_c > \frac{d(1-\tau_v)}{\left(\frac{1}{\beta}-1\right)}$$

따라서 자본이득세율의 수준과 배당률 및 소득세율, 그리고 효용할인인자 β 수준에 따라 자본이득세율이 주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에 정부의 정책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의 할인율을 구성하는 A_t 와 B_t 의 정체상태의 식을 써보면 다음과 같다.

$$(4.47) \quad A = \frac{\beta}{1+d+\alpha(1+r_p(1-\tau_p))-\pi\alpha}$$

$$(4.48) \quad B = \frac{(1+\alpha)}{1+d+\alpha(1+r_p(1-\tau_p))-\pi\alpha}$$

기업이 부채가 없이($\alpha=0$) 순수한 자기자본만으로 운영하며 배당금도 없다고($d=0$) 가정하면, $A=\beta$ 이고 $B=1$ 이 되어 기업의 미래할인율이 소비자의 미래할인율과 같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할인율은 배당률과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적인 요소와 더불어 법인세제뿐 아니라 회사채수익률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형에서 가장 단순하게 기업이 부채비율이 0이고 배당도 하지 않는 경우인 $\alpha=0$, $d=0$, 즉 $A=\beta$ 의 경우는 화폐계약모형의 기준모형인 Abel(1985)이 도출한 정체상태의 관계식(4.46)과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된다. Abel의 경우 세금

변수가 들어가지 않아 좀더 단순한 형태이며, 기업의 최적화행동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참조로 Abel의 식은 다음과 같다.

$$(4.49) \quad F_K(K, L) = \frac{1}{\beta} - 1 + \delta$$

이 모형의 정체상태 결과를 Hall-Jorgenson식의 자본비용투자 모형과 비교하여도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Hall-Jorgenson식의 자본비용투자모형에서 기업은 투자결정에 자본의 임대비용(rental price of capital)을 고려한다고 가정하며 자본은 무기한 생존하며 지속적으로 δ 의 율로 감가상각한다. 초기(0기)에 무기한 생존하는 자본에 Q 의 값을 주고 이 자본을 매입한 기업에게 법인세율(τ_p)과 투자소득공제율(θ)이 주어지며 감가상각제도는 D 라고 가정할 때 자본의 임대비용 R_c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50) \quad \begin{aligned} Q(1 - \theta) &= \int_0^{\infty} (1 - \tau_p) R_c e^{-\tau t} e^{-\delta t} dt + Q \int_0^{\infty} D_t e^{-\tau t} e^{-\delta t} dt \\ &= (1 - \tau_p) R_c / (r + d) + Q \tau Z \end{aligned}$$

여기서 r 은 이자율이고 Z 는 이자율에 의해 할인되고 정부에 의해 허용된 감가상각의 현재가치이다. 여기서 두 모형의 비교를 위하여 잠깐 정리하면 (4.46)에서 $A = \beta$ 이므로 기간에 걸친 일반균형모형(intertemporal general equilibrium model)에서 정체상태에서의 이자율은 시간의 할인율의 역수에서 1을 뺀 것과 같다는 점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4.51) \quad F_k(K, L) = \frac{(1-\theta)(1/\beta-1+\delta)}{(1-\tau_p)} \\ = \frac{(1-\theta)(r+\delta)}{(1-\tau_p)}$$

식(4.50)도 정리하면

$$(4.52) \quad R_c = \frac{(1-\theta-\tau_p Z)(r+\delta)Q}{(1-\tau_p)}$$

가 되어 식(4.51)과 식(4.52)이 상당히 비슷한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므로 설명할 때 주의를 요한다. 즉 (4.52)는 자본 임대비용의 현재가치이며 (4.51)은 시간에 걸친 기업의 최적화결정과 소비자의 최적화결정에서 나온 정체상태의 자본의 수익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해 본 세금변수가 자본스톡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법인세율(τ_p)을 올리게 되면 자본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며, 투자소득공제율(θ)의 상승은 자본축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모형에서는 다른 모형에서 나오는 연구결과에서 얻지 못하는 다른 정부정책변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본 모형에서는 기업의 할인율이 배당률이나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적인 요소와 더불어 법인세제뿐 아니라 회사채수익률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4.53) \quad A = \frac{\beta}{1+d+\alpha(1+r_p(1-\tau_p))-\pi\alpha}$$

(5) 정책적 시사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을 우량기업이라고 부르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라 하면 자본구성에 있어서 타인의 자본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본 연구가 이와 관련하여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기업의 과도한 부채의존현상은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기업의 수익성과 지급능력이라는 면에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개별기업의 관점에서나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부채비율의 감소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본 모형에 의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채율이 높고 배당률이 낮은 상태에 있을수록 정부정책이 국민총생산이나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는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이 적정수준의 부채 및 배당률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부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소득세율의 인상은 기업의 사내유보를 촉진시키고 법인세율의 증가는 기업의 부채비용이 경감되도록 유리하게 작용된다. 그러므로 개인소득세나 법인세, 혹은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제감면의 정책적 효과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 세제는 유보소득보다는 배당소득에 상대적으로 중과세를 하여 왔으며 또한 조달방법에 있어서도 차입, 사내유보 사용, 신주발행의 순으로 유리하게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경제개발 및 고속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투자유인제도를 고려하여 볼 때 본 모형 내에서도 설명력이 있다.

본 모형에 의거한 경제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관련과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각 경제부문의 반응도에 따

라 같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효과가 다를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가 기업관련과세의 경제적 효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이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는 세액공제보다는 법인세가 투자를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이며, 배당률이 높은 경우보다는 낮은 경우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유인효과가 크다.

제3 절 현행 법인기업 및 개인주주 과세의 평가와 개선과제 - 설문조사

1. 조사개요

기업 및 주주관련 문제점과 개혁과제를 발굴해내는 방법의 하나로 기업 및 주주 과세와 관련된 전문가와 학계, 그리고 조세를 납부하는 당사자인 기업 등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기업 및 주주 과세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찾아보았다(공인회계사 <21명>, 세무사 <26명>, 그리고 전경련 회원사 <34개사>와 세무학회 회원 <42명>, 재정학회 회원 <28명> 등 총 158명).

첫 번째 조사항목으로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단순성, 중립성 등에 다섯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법인 및 주주 과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물었다. 묻는 방법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서면과 팩스 등을 통해 조사하였고, 조사기간은 2000년 10월 10월~11월 14일이다. 질문내용은 법인 및 주주 과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항목이 8개이고 남북경협, 전자상거래 관련조세 등 현안에 대한 항목이 5개이다.

두 번째 설문조사 항목으로 현행 법인 및 주주 과세에 대한 개혁과제를 추출하여 8개 과제를 나열하고 이 중 5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밖에 기타 개선과제에 대해 기술하는 항목도 주어졌다. 실정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방법의 하나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세무사회, 한국재정학회 등에서 이미 적출된 문제점을 수집하는 방법도 채택하였다. 여기서 수집된 문제점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를 정리하여 이에 대해 본원의 연구관련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초청된 회의에서 토

론을 거쳐 분석·검토할 사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의 대강에 대해 토론하여 법인과세와 주주과세 관련 각각 8개의 분야 내에서 실무상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례에 관련 되는 세법조문 내지 세무회계 처리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2. 일반적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

1)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주주 관련세제의 개정이 기업구조조정에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24.0%)는 답변에 비해 그렇다(31.6%)는 답변이 더 많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법인세 및 주주관련과세가 조세를 산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투자나 영업전략을 결정하는 데 쉬운 편인가 하는 질문에 75.9%가 그렇지 못하다는 대답을 해 우리나라 법인세 및 기업관련세제가 영업전략을 세우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우리나라의 기업관련세제가 신규산업의 등장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7%가 신규산업의 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업관련세제로 인해 신규산업이 용이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0.3%에 불과하다.

4)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지원제도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있는가에 대해 기업투자가 촉진되지 않고 있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

5) 우리나라 기업관련세제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 49.4%로 압도적이었다.

6) 우리나라 법인세 및 주주관련조세가 절차나 행정적인 측면에

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65.5%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7)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질문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및 주주 관련 조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는가에 대해 68.4%의 응답자가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다.

8) 우리나라의 기업 및 주주 관련과세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50.0%에 달하고 있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9.1%에 불과하였다.

9)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감면 및 지원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3.9%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조세감면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세를 통해 조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엇갈린 응답이 나왔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답이 44.3%인 데 반해 필요하다는 답은 38.6%에 달하고 있다.

11) 다른 세제 및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77.4%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34.8%에 달하였다.

12) 다른 세제 및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조속히 도입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56.1%가 도입 시행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29%만이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답을 하고 있다.

13) 현재 기업에 부과되는 준조세가 과도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87.1%가 과도하다고 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답은 3.9%여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3. 기업관련 개혁과제 조사결과

기업과세 중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로 첫 번째로 꼽은 과제(70.9%)가 이월결손금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의 개선에 대한 것이다. 현재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허용기간은 5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짧기 때문에 경영안정의 지원을 위해 10년 정도로 늘리고,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소급공제 1년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3년 정도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된 기업관련 개선과제(70.3%)는 지주회사과세와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것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임에도 별개의 법인으로 각각 과세하면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부분적인 익금불산입제도를 두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조정이 불충분하고, 결손이 발생한 자회사와 이익이 발생한 자회사간 그 상계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60.8%)로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국내외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져 가는 선물거래(주가지수선물·이자율선물·유가선물 등), 옵션거래 및 스왑거래 등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제화시대에 맞는 파생금융상품 관련 과세제도의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밖에 이연자산의 평가방법(58.9%),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제약완화(56.3%),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제도 개선(45.6%),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완화(44.9%), 증자소득공제 부활(43.0%) 등의 순이다.

4. 주주관련 개혁과제 조사결과

주주과세관련 개선과제에 대한 조사결과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확충하고 단순화하자는 것이 첫 번째(76.6%)로 꼽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합산 4,000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하고, 그 금액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하면서 원천세율을 소득세 최저세율(10%)보다 배로 높게 설정(20%),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유리하지 못하도록 세액비교산출법을 채택하고 있어 세제를 난해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기준금액은 소득자별 1,000만원으로 하고 원천세율은 10%로 인하하여 종합과세를 확충하면서 세액비교산출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주과세 관련 개선과제(75.3%)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통일과 개선문제이다. 주식과세상 그 평가방법은 납세액과 직접 관련되는데,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과세평가방법이 각기 달라서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수익가치평가는 수익력이 아닌 고정자산처분익 등(특별이익)이 포함된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과대하게 과세평가되고 있으므로, 그 방법을 통일하고 수익가치평가는 특별이익 공제 후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 주주과세 관련 우선과제(70.9%)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확충하는 문제이다. 현재는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당해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양도차익은 20%의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그 과세범위를 확대하면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초과누진세율 과세로 전환하여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주식거래를 이용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밖에 의제배당의 범위 축소조정(60.1%),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49.4%),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 폐지(46.8%),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 폐지(38.0%),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의 폐지(34.8%) 등의 순으로 우선과제를 꼽고 있다.

5. 대안

설문조사된 관련 세제상의 문제점에 대해 판례·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 세무회계의 관행을 조사하고, 이를 법학적 또는 회계학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내지 세무회계적 대안을 구상하였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제도의 폐지를 포함하여 입법적, 법해석적, 그리고 세무회계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 및 주주관련과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매년호.
- 김준영, 『한국의 자본코스트와 법인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 산업별 시계열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91.
- 노영훈, 『양도소득세의 정책과세』, 정책분석 98-05, 한국조세연구원, 1998.
- 임양택·최명근, 『한국 기업의 준조세 부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부담수준의 실증적 분석』, 연구총서 12, 한국경제연구원, 1983. 6.
- 전영섭·나성린, 『공공경제학』, 학현사, 1995. 8.
- 정영현·전영준, 『금융실명제 정착과 정책방향』, 정책토론회자료 97-02,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최홍식, 『채권시장의 미시구조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정책연구자료 94-05, 1994. 7.
- 한경동·하정훈, 『조세의 공공부담과 재정』, 한국경제연구원, 1999. 7.
- 한국증권거래소, 『채권유통시장제도 해설』, 한국증권거래소, 1999. 10.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통계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1999.
- _____, 『증장기 세제운용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호.
- _____, 『기업경영분석』, 각년호.
- Abel A.B., “Dynamic Behavior of Capital Accumulation in a Cash-in-Advance Model,” *Journal of Money-*

- tary Economics*, 16, 1985, pp.55-71.
- Auerbach, A. J. and K. Hasset, "Recent U. S. Investment Behavior and the Tax Reform Act of 1986: A Disaggregate View," *Carnegie-Rochester Series on Public Policy*, 1991.
- _____, "Tax Policy and Business Fixed Investment in the U. 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92.
- Auerbach, A. J. and M. King, "Taxation, Portfolio Choice and Debt-Equity Ratios: A General Equilibrium Model,"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83.
- Auerbach, A. J., Leonard E. B. and Jonathan M. S., "Capital Gains Taxation and Tax Avoidance: New Evidence from Panel Data," NBER Working Paper No.6399, 1998.
- Auerbach, A. J., "Taxation, Corporate Financial Policy, and the Cost of Capital,"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83.
- _____, "Capital Gains Taxation in the United States: Realizations, Revenue, and Rhetoric,"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2, 1988, pp. 595-637.
- _____, "On the Design and Reform of Capital-Gains Taxation," *AEA Papers and Proceedings*, Vol.82, No.2, 1992, pp.263-267.
- _____, "Retrospective Capital Gains Tax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1, No.1, 1991, pp.167-178.

- _____, “Debt, Equity, and the Taxation of Corporate Cash Flows,” in J. Shoven and J. Waldfogel, eds., *Debt, Taxe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1990.
- _____, “Taxes, Firm Financial Policy and the Cost of Capital: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84.
- _____, Kotlikoff, L. J., 1987, *Dynamic Fiscal Polic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ck, William A. and Turnovsky, Stephen, 1981, “The Analysis of Macroeconomic Policies in Perfect Foresight Equilibrium,”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2, pp.179-209.
- Chamley, C. P., 1981, “The Welfare Cost of Capital Income Taxation in a Growing Econom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pp.468-496.
- _____, 1986, “Optimal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General Equilibrium with Infinite Lives,” *Econometrica*, 54, pp.607-622.
- Cooley, T. F. and Hansen, G., 1989, “The Inflation Tax and the Business Cycle,” *American Economic Review*, 79, pp.733-748.
- Dalsgaard, T., The Tax System in Korea: More Fairness and Less Complexity Require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271, OECD, 2000.
- Evans, O. J., “Tax Policy, the interest Elasticity of Saving and Capital Accumulation: Numerical Analysis of Theoretical Models,” *American Economic Review*

- view*, 73, 1983, pp.398-409.
- Feldstein, M. and Summers, L., "Inflation and the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the Corporate Sector," *National Tax Journal*, 32, 1979, pp.114-154.
- Fischer, S., "Capital Accumulation on the Transition Path in a Monetary Optimizing Model," *Econometrica*, 47, 1979, pp.1433-1441.
- Hall, R. E. and Jorgenson, D. W.,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7, No.3, pp.391-414.
- Hansen, L. P. and Singleton, K., "Stochastic Consumption, Risk Aversion, and the Temporal Behavior of Asset Retur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1, 1983, pp.249-265.
- Kehoe, Timothy J. and SERRA-PUCHE, Jaime, "A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Endogenous Unemploy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2, 1983, pp.1-25.
- Kydland, F. E. and Prescott, E. C., "Time to Build and Aggregate Fluctuations," *Econometrica*, 1982, pp.1345-1370.
- Lipton, D., Poterba, J. M., Sachs, J., and Summers, L. H., "Multiple Shooting in Rational Expectations Models," *Econometrica*, Vol.51(4), 1982, pp.1329-1333.
- Lucas Jr., R. E.,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88, pp. 3-42.
- _____, "Economic Policy Evaluation: A Critique," *Stud-*

- ies in Business Cycle Theory*, ed. MIT Press, 1981.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9*, 2000.
- Poterba, J. M. and Scott J. W., "Capital Gains Tax Rules, Tax Loss Trading, and Turn-of the-Year Returns," NBER Working Paper No.6616, 1998.
- Prescott, E. C., "Theory Ahead of Business Cycle Measurement," *Carnegie 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1986, pp.312-320.
- Shoven, John B. and John Whalley, "A General Equilibrium Calculation of the Effects of Differential Taxation on Income from Capital in the U.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 1972, pp.281-321.
- Stiglitz, J. E., "Some Aspects of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21, 1983, pp.257-294.
- Yi, Insill, "The Effects of Taxes and Money on Capital in an General Equilibrium Model," Ph.D. Thesis, University of Minnesota, 1990.

파워포인트 파일 들어갈 자리~~~
p.101-118까지

제3부

법인기업과세제도의 개선



제1절 합병과세제도의 개선	121
제2절 이연자산(무형자산) 평가규정의 개정 ..	144
제3절 증자소득공제제도 부활	151
제4절 이월결손금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157
제5절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 개선	162
제6절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100% 인정 ·	171
제7절 과생상품거래의 과세방안	180
제8절 지주회사과세제도의 문제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214

제1 절 합병과세제도의 개선

I. 개 요

합병은 기업의 경영권거래인 M&A 거래 중의 하나로서 기업인수의 대가가 현금인 아닌 주식을 발행해 준다는 데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합병에서는 이러한 순수한 의미의 M&A 거래(경영권 이전거래)로서의 합병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의 합병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합병세제도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의 합병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합병세제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업운영의 효율성도모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점과 조세회피목적으로 진행되는 불공정합병을 규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합병세제는 세수확보차원의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합병세제 개선방안을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II.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완화

1. 규정의 내용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법인세법 시행령 81조)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법인세법 45조①).

① 법인세법 52조①(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의 기본요건 3가지를 충족(1년 이상 계속사업법인간의 합병, 합병교부비용 5% 미만,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 계속영위 : 법인세법 44조①)할 것

이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81조③, 80조③).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 88조② 단서).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113조③에 의하여 승계사업과 기존사업별 자산, 부채, 손익을 구분경리할 것

한편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81조③, 80조⑥).

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상기 내용을 보면 가장 특징적인 점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월결손금 승계조건으로서 사업의 계속성, 사업용 자산의 계속사용, 자본의 계속성 등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2. 규정의 구체적 내용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문제는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명분과 조세회피규제라는 상반성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즉 합병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통한 세액절감이라는 Tax Effect인데 합병이 경영합리화 목적보다는 계열기업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과 상계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무한정 용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를 원칙적으로 용인하되 그 한계와 조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숙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합병추진 목적이 얼마나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 기준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이 성행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중요한 문제였으나 IMF를 거치면서 건전한 구조조정목적의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이월결손금 승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현재의 합병규정을 볼 때 건전한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범위를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나라 합병은 아직도 특수관계 회사끼리의 합병이 대부분으로서 사업목적이나 경영합리화 목적보다 Tax Effect 목적의 합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양자간의 조화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3. 문제점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은 주로 금융기관간의 합병에 Merit를 부여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또 실효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첫째, 개정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7에 의하면 연결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을 제외하고는 시가평가에 의한 합병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44조의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규정은 세무상으로도 시가평가에 의한 합병을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상기 장부가액 승계조건을 보면(법인세법 45조① 본문) 시가평가에 의한 합병과 장부가액에 의한 합병이 선택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모순이 있다.

둘째,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세무상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승계받은 사업에서 합병 후 적어도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여야 실질적인 세무혜택이 가능하나 결손이 발생하

던 사업에서 단기간 내에 이익이 발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다면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그 범위액에서 당해 결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법인세법 시행령 81조②) 세무상 혜택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셋째, 합병 후 적어도 5년 동안은 승계사업과 기존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세무조정도 별도로 수행한 다음 다시 합산하여야 하는 바, 이는 실무상 매우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합병시 이월결손금승계 자체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즉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세무상의 이월결손금을 감안하여 합병비용을 평가하였을 것인 바, 합병 후 이월결손금승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세무상의 이월결손금이 합병거래에 이중으로 반영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합병거래를 매수법의 논리에서만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합병거래는 인격승계설의 관점에서도 파악되어야 한다. 즉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회사 사업의 연속성이 존재한다면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자산과 부채)가 장부상의 가액 그대로 합병회사에 승계되어야 한다(결혼으로 인해 남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아내도 함께 공유하는 것과 같은 논리임).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합병시 이월결손금승계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합병을 활성화하여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려는 정책적인 목적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

4. 개선방안

현행 이월결손금 승계규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IMF 과정에서 진행된 금융기관끼리의 합병, 즉 구조조정차원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순수한 경영권이전거래로서의 합병에 대한 지원의도가 거의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이러한 거래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피합병회사는 흔치 않음) 더욱이 특수관계 회사끼리의 경영합리화 차원의 구조조정목적의 합병거래에 대한 지원은 아님이 분명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순수한 경영권이전거래 차원의 합병이 늘어나고 있고 선진국에서 합병은 M&A의 일반화된 추세임을 고려하여 M&A 활성화 지원차원에서(결손법인의 합병촉진) 현행 규정의 이월결손금 승계조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즉 장부가액 승계요건과 구분경리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의 합병에 대한 이월결손금 승계불허원칙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조건은 폐지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영합리화 차원의 구조조정 지원 목적에서 이월결손금승계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의 합병에서도 이월결손금승계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 경영합리화 목적의 합병인지에 대한 기준설정일 것이다.

즉 효율성 도모차원에서의 합병과 조세회피목적의 불공정합병을 구별해내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순수 구조조정목적의 합병을 저해하지 않는 입법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Ⅲ. 합병시 청산소득, 의제배당 과세의 문제

1. 규정의 내용

(1) 청산소득의 계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80조, 법인세법 시행령 122조①).

$$\boxed{\text{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 \boxed{\text{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가가액}} + \boxed{\text{합병교부금}} - \boxed{\text{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자기 자본총액}}$$

(A) (B) (C)

이때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제14조 제1항) 다음과 같은 합병의 기본조건(승계사업 계속요건은 배제되어 있음)을 구비할 경우에 한해서이다(법인세법 44조① 1호, 2호).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법인간의 합병일 것
- ② 합병대가 중 합병교부금 비율이 5% 미만일 것(합병대가 중 교부주식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지 액면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는 분명치 않음)

기본조건 미구비시 교부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14조① 1호다, 89조② 2호).

(2)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의제배당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법인세법 16조 5호, 소득세법 17조② 4호).

$$\boxed{\text{의제배당 소득금액}} = \boxed{\text{합병교부 주식가액}} + \boxed{\text{금전의 액}} - \boxed{\text{주식 취득가액}}$$

(액면가액)
(합병교부금)

상기 산식 중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청산소득의 경우와 동일함)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소득 1265~1897, 84. 6. 8).

만일 법인세법 44조① 1호 및 2호에 정한 합병의 기본요건(1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 합병교부금 비율 5% 미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합병교부주식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14조 1호다, 89조 ② 2호).

상기 산식에서 공통적인 것은 합병으로 인해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원칙적으로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되 합병의 2가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합병교부금(포합주식 포함)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교부주식의 실제가치가 액면가액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교부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하게 된다면 부당하게 청산소득 또는 의제배당금액이

발생하게 되거나 그 금액이 커지게 된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문제점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합병신주는 합병법인주식과 피합병법인주식 평가액의 상대적인 차이인 합병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합병법인주식이 피합병법인주식보다 주당평가액이 더 작고 합병법인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라면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합병교부주식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피합병회사 B/S

		(단위 : 백만원)	
제자산	200	자본금	100(20,000주)
		잉여금	100
	200		200

이때 피합병법인의 주당평가액이 5,000원(액면가액 5,000원)이고 합병법인의 주당평가액이 2,000원(액면가액 5,000원)이라면 합병비율은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1 : 2.5가 되어 피합병법인주식 1주당 합병법인 주식 2.5주를 교부하게 된다.

합병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장부가액 승계, 포함주식 없음).

(차변) 제자산 200,000,000원 (대변) 자본금 250,000,000원
합병차손 50,000,000원

합병차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세무상 자기자본은 200,000,000원이라고 가정)

$$\begin{aligned} \text{합병차익} &= 250,000,000\text{원} (20,000\text{주} \times 2.5 \times 5,000\text{원}) \\ &\quad + 0 (\text{포합주식}) - 200,000,000\text{원} = 50,000,000\text{원} \end{aligned}$$

그리고 의제배당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청산소득과 동일한 논리).

$$\begin{aligned} \text{의제배당} &= 250,000,000\text{원} + 0 - 100,000,000\text{원} (\text{구주취득가액}) \\ &= 150,000,000\text{원} \end{aligned}$$

위와 같이 계산되는 이유는 합병법인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청산소득 또는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합병교부주식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합병교부주식 가액을(원칙상)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한편 개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개인이며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날에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15%의 세율(주민세 포함시 16.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소득

세법 129조① 2호)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의 대주주 또는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 외의 내국법인의 개인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이라면 종합과세를 받게 된다(소득세법 14조④ 2호, 3호). 그러나 실무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한 합병법인이 1:1로 합병하여 주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각 주주들이 구주식의 취득에 요한 금액이 액면가를 하회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다(합병교부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액면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

둘째, 원천징수를 위하여 각 개별주주들을 상대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파악하여야 하나 개인주주들의 경우에는 주식취득금액 파악이 상당히 어려워 주식을 교부한 합병법인은 의제배당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각 개인주주들의 취득가액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개선방안

위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병교부주식 평가시 액면가액을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액면가액 이하로도 평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합병의 기본요건 충족시에는 액면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IV. 합병비율 평가의 문제

1. 규정의 내용

(1)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의제

불공정합병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문제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문제가 제기되며 양자는 불공정합병의 기준이 상이하다(청산소득법인세와 의제배당은 불공정합병으로 인해 과생되는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불공정합병에 해당되어 증여의제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과세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이어야 한다. 이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8조①).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독점규제법상 기업집단 내의 소속법인)

③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이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여부의 판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불균등합병(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30% Rule 또는 1억 차액조건을 충족시키는 정도의 이익을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얻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8조③, ④).
30% Rule 또는 1억 차액조건은 다음과 같다.

$\frac{(A-B)}{A} \geq 30\%$ <p style="margin: 0;">A :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B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p> $\times \frac{\text{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text{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

이때 “1억 차액조건”이라 함은(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 : 통칙 38-28...3) 증여의제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상기 산식에서 1주당 평가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

- 합병 당사법인의 개별법인 1주당 평가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3조, 54조)
-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A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8조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수

상기 산식을 풀어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frac{\left[\begin{array}{l} \text{합병법인의} \\ \text{1주당 평가액} \end{array} \times \begin{array}{l} \text{합병법인의} \\ \text{합병 전} \\ \text{발행주식 총수}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피합병법인의} \\ \text{1주당 평가액} \end{array} \times \begin{array}{l} \text{피합병법인의} \\ \text{합병 전} \\ \text{발행주식 총수} \end{array} \right]}{\text{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수}}$$

셋째, 앞에서 설명한 대주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8조 ②)가 아니라면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대주주가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으로 간주하게 된다.

증여의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증여의제금액	=	$(A - B) \times \text{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 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	---	--

그리고 증여의제시점은 합병등기일로 하고 있으므로 수증자, 즉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는 합병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2)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시 합병 전·후 주식의 평가차익이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

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바(법인세법 시행령 88조① 8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적용되는 불공정합병기준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적용되는 불공정합병기준과 다음의 표에서 정리한 것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 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비 고
특수관계법인의 조건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①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② 독점규제법상 기업집단 내의 소속법인 ③ 동일인에 의해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 관계에 있는 법인	① 좌동 ② - ③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① 8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조건	① 합병 전·후 주식의 평가차익이 30% 이상 차이 ② 증여의제이익(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이 1억 이상 차이	① 좌동 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⑥
이익을 얻은 대주주(특수관계주주)의 조건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② 특수관계자 지분포함 ② 1% 이상 지분 또는 액면 3억 이상 주주	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⑥

상기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불공정합병의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비해 덜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서

둘째,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 전·후 주식의 평가차익이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셋째, 주주 등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점

불공정합병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문제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제기된다(청산소득 법인세와 의제배당은 불공정합병으로 인해 과생되는 문제이다).

양자간에 불공정합병기준은 상이하나 근본적으로 합병비율로 인해 야기되는 불공정합병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따라서 합병비율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이 과세문제의 핵심으로 제기된다.

불공정합병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상장법인이 포함된 합병의 경우에는 30% Rule 또는 1억 차액조건 판정시에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1) 주식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문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상장법인주식의 주식평가액(기준주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증권거래법 시행규칙 36조의 12①, ② 1호).

$$\text{Min} \left[\begin{array}{l} \text{최근일} \\ \text{종가} \end{array}, \frac{\text{1개월 평균종가} + \text{1주일 평균종가} + \text{최근일 종가}}{3} \right]$$

단, 상기 기준주가가 순자산 가액을 하회할 경우 순자산 가액을 기준주가로 할 수 있다(임의규정). 반면 30% Rule 또는 1억 차액조건 판정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법인의 주당 평가 방법은 합병등기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게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① 1호 가).

한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도 차이가 있는데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비상장법인의 주당평가액은 기산일(합병신고서를 제출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 19조의 본질가치 및 동 규정 19조의 2의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 이하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질가치 이하의 값으로 한다(증권거래법 시행령 84조의 7,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36조의 12② 2호).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30% Rule 또는 1억원의 차액조건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주식평가방법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값으로 한다.

상기 차이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증 권 거 래 법	상 증 법
상장법인	“기준주가”(합병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단,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함	합병등기일 이전, 이후 각 2월 주가평균
비상장법인	본질가치와 상대가치 산술평균 단, 상대가치 없는 경우 본질가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주식평가방법(순손익가체와 자산가치 중 큰 금액)

위에서 설명한 대로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문제점은 합병을 추진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세무상 Risk라고 할 수 있는데, 재정부 산하의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의 증권거래법상 합병규정과 동일한 재정부 소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괴리로 인한 세무상 Risk를 그대로 납세자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세법개정을 통해 문제가 일부 보완되긴 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증여의제관련 주식의 평가방법 보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비상장 주식평가방법 허용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앞서 설명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증여의제이익이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주식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증여의제이익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적용도 가능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8조⑥ 단서).

②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규정을 적용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불공정합병 여부 판단시)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규정(증권거래법 제19조의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8조⑦).

첫째,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기준에 적합할 것(상장법인이 포함된 합병으로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2의 기준 충족)

둘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일 것

셋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합병일 것(경제력집중을 초래하는 합병은 배제)

넷째, 합병등기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항이 정하는 사업(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다섯째, 2000. 12. 31 이전까지 이루어지는 합병일 것

여섯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대주주는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기지분을 처분하지 아니할 것(처분하는 경우 합병규정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 증여의제 과세)

상장법인이 포함된 합병으로서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합병은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닌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규정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 실제 적용에 있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조정목적으로 진행되는 합병으로서 2000년말까지 이루어지는 합병에만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증여세를 부담해 가면서 합병하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둘째, 대주주가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 내에 자기지분을 처분하면 상기 혜택을 박탈한다는 것인데 주식양도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가 한다.

셋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만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 구조조정목적으로 진행되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이 어떻게 중분류 기준의 동일업종 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업종끼리만 골라서 합병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인가?

요컨대 상장사가 포함된 합병시의 불공정합병 Risk는 증권거래

법상의 평가기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기준 차이에서 기인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촉진차원의 세제지원 정책으로 해결될 성질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2) 평가시점 차이로 인한 문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상장법인의 기준주가 평가시점은 합병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증권거래법 시행규칙 36조의 12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시점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38조①, 재삼46014-1266, 96. 5. 9) 합병신고서 제출일로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2개월까지의 상장법인의 주가변동이 증여의제 해당여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실무상 약 6개월의 차이가 발생함).

한편 비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규정상 기산일(합병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합병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5조, 56조①).

따라서 자산가치의 경우 기산일(합병신고서 제출일 전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자산가치에 큰 변동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순손익가치의 경우 기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에 회계연도말이 포함된다면 합병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이에 평가액 자체가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공정합병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조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확한 합

병가액 산정(실제로는 장래의 합병등기일을 염두에 두고 산정하므로 추정입)을 통해 증여의제이익(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이 30% Rule 또는 1억 차액조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구조조정 과정상의 합병은 거의 대부분 특수관계법인간의 합병임).

그러나 실무상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비율은 합병계약서에 기재되어 합병주주총회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합병계약서 준비단계에서 합병비율이 결정된다.

그러나 합병등기는 합병주주총회 후 1개월간의 채권자이의제출 공고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통상 합병비율결정시점과 합병등기시점 사이는 적어도 2개월이 소요된다.

이때 불공정합병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합병계약서 작성시의 합병비율과 합병등기시의 합병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2개월 사이에 합병비율에 큰 변화를 초래할 만한 경제적 사건이(큰 규모의 손익 등) 발생한다면 합병자체의 취소, 기타 필요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비정상적인 경제적 거래를 추진하지 말아야 함).

이러한 Timing Risk를 감안하여 세법에서는 30% Rule 또는 1억 차액조건을 두게 되었으나(법적으로는 합병등기일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Timing Risk는 불가피),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시에 적용되는 1억 차액조건은 법인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금액으로서 불합리하다고 본다.

즉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간의 합병은 1억원의 증여의제이익이 상기 Timing Risk를 커버하기에 충분할 수 있으나, 규모가 큰 법인간의 합병은 합병이 진행되는 2개월여 사이에 아무리

비경상적인 사건이 없다 해도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을 표로 요약해 본다.

구 분	합병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기준 시점	합병신고서 제출일 전일	합병등기일
상장법인 평가	기준주가 단, 인수규정에 의한 자산가치 하회시 자산가치 가능	합병등기일 이전, 이후 2월 증가평균
비상장법인 평가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1:1.5) - 상대가치가 반영될 수 있음	- 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 - 지배주주는 20~30% 가산
자산가치	부동산평가증 미반영	- 부동산평가증 반영함 - 영업권 반영함
수익가치	미래수익가치 추정하여 반영	과거수익가치 반영

3. 개선방안

앞에서 설명한 문제점은 정책적인 문제 이외에도 현행 세법의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에 기인된다고 생각되는 바, 실무상으로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불공정합병 문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합병계약시의 합병비율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나 세무상 Risk를 완전히 회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공정합병시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임의적인 합병비율 조정을 통한 친족간의 편법적인 증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이며 비상장법인끼리의 합병의 경우가 일반적인 규제대상이

다. 그러나 상장법인이 포함된 합병은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규정에 의해 합병비율이 감독관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규제되고 있고, 불공정합병으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장법인이 포함된 합병은 실질적으로 불공정합병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합병규정 이외의 또다른 잣대를 적용하여 증여의제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결국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합병, 즉 불공정합병이 실질적으로 감독관청이나 시장에 의해 규제되는 합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의 적용을 받는 합병은 예외로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2절 이연자산(무형자산) 평가규정의 개정

I. 개 요

이연자산(현재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은 기업회계이론상 자산성(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경제적 자산)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시 거액의 개발비 등의 지출액을 장래 일정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여 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해 임시적으로 자산처리하는 과목으로서 현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폐지되었고 다만 창업비와 개발비만이 무형자산으로 바뀌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연자산에 대한 평가(비용배분)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에 차이가 존재하여 실무상의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것이 세수확보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아 보인다.

II. 규정의 내용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및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연자산의 종류를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기준은 1998. 12. 11 개정으로 이연자산을 모두 삭제하고 무형자산 또는 당기비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1998. 12. 31 시행령 개정시 종전에 이연자산으로 인정하던 신주발행비를 이연자산에서 제외하였다.

구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무형자산)	법인세법 ¹⁾	상 법
창업비	창업비	창업비	창업비
개업비	인허가비용 창업비	개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	×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	개발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	사용수익기부자산	사용수익기부자산	×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주식할인발행차금
×	×	×	배당건설이자
환율조정차	×	×	×

주 : 1) 법인세법상 개업비, 사채발행비, 연구비는 기업회계에서 발생시에 비용 처리해야 함.

세무회계상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7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창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 창업비

기업회계상 창업비는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종전 기업회계기준상 개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개업준비 기간 중의 사업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의미(기업회계기준 20조 6호)하는 것이며,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인허가비용은 법인세법상 개업비).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창업비는 사용가능한 시점(일반적으로 계상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상각할 수 있으나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법인세법은 법인설립연도부터 5년간 균등상

각. 단, 개업비는 3년).

2. (연구)개발비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종전에 이연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한 연구비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의 경우도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 20조 7호). 개발비는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할 수 있으나 20년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이때 사용가능한 시점이란 개발활동의 결과로 최초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구개발비 중 개발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연구비는 당기비용 처리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연구 또는 개발활동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상의 범위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상각은 사용가능한 시점, 즉 관련수익이 실현되는 시점부터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또는 신고기간) 이내에 종료하는 때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3. 사용수익기부자산

법인세법상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이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당해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이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무형자산”으로 정의된다. 기업회계에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각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III. 문제점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7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연자산 7가지를 구분하여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구 분		내 용
법인세법, 기업회계 기준에 규정	창업비 개발비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세무회계상 이연자산)으로 구분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	상동
법인세법에만 규정	연구비 개발비 사채발행비	① 기업회계상 전액 비용화 ② 발생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중요하지 않아 세무회계상 이연처리하여 상각하지 않고 발생시에 전액을 비용처리해도 세수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상기 내용에 의하면

첫째, 창업비나 개발비, 그리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기업회계나

세무회계 모두 이연처리하여 비용화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개념상의 차이가 있으나 실무상의 복잡성과 번거로움을 야기시키고 있음). 다만 이연처리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는 실무상의 어려움만(세무조정) 야기시키고 세수증대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연구비, 개업비, 그리고 사채발행비인데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창업비, 개발비, 그리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경우 기업회계상의 상각기간은 세법보다 더 장기간이므로 회계상 비용이 세무상 비용보다 작게 되는 반면 연구비, 개업비, 그리고 사채발행비는 기업회계상 일시에 비용처리해야 하므로 회계상 비용이 세무상 비용보다 더 크게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켜도 과세소득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

IV. 개선방안

법인세법 제43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변천을 거쳐왔다.

94개정 이전 (양 회계가 병존)	94개정 이후 (기업회계가 우선)	98개정(현재) (양 회계가 병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법과 기업회계가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 -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세법이 우선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 회계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법에 규정된 6가지 이외 손익의 귀속시기 등은 무조건 기업회계가 세무회계를 우선 ○ 세법에 손익의 귀속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기업회계가 우선한다는 별도의 조문으로 인하여 사실상 세법규정은 적용이 될 수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개정 이전으로 복귀 ○ 다만 94년 이전과 다른 점은 - 세법에서 규정한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가능한 한 기업회계와 일치하도록 사전조정을 거쳐 입법화하였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규율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발생이 불가피하다. 실무상 이를 준수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가능한 한 일치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세법에서 기업회계준중의 정신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자의 차이가 크게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세무상 이연자산제도(기업회계상은 폐지됨)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유지된다기보다 비용처리를 지연하여 세수확보(비용처리가 지연되는 데 따라 관련세금을 일찍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수익 혜택)를 피하지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나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실무상의 번거로움이 더 큰 비용요소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세무상 이연자산제도도 기업회계에 맞추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제도는 원래 기업회계논리를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기업회계상 이연자산이 발생하게 된 취지는 임시거액의 비용을(비록 자산성이 없더라도) 장래에 예상되는 수익에

대응시킬 목적으로 한시자산으로 계상한 것이다. 그러나 순자산증가설과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세법의 고유논리에 비추어 본다면 이연자산으로 계상되는 임시적인 자산항목은 발생시 모두 비용화시켜야 마땅하다. 심지어 회계이론상으로 보더라도 이연자산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 즉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이 아니어서 자산성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한 것이 현실이다(이연자산은 이연비용에 불과하다는 논리).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상의 이연자산제도를 수용한 이후 기업회계의 이연자산제도는 계속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법인세법이 기업회계상 이연자산제도를 항상 뒤따라 개정되어온 것이 아니어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의 불일치가 존재하게 되었고 법인세법상의 이연자산규정은 완전하게 기업회계논리를 따른 것도 아니고 세법고유논리에 따른 독자규정을 구비한 것도 아니어서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어 온 것이다. 미국세법도 창업비만 60개월 이연상각하고 나머지는 발생시 모두 손금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이연자산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법 고유논리에 더 부합되기 때문이다.

제3절 증자소득공제제도 부활

I. 개 요

우리나라가 IMF체제하에 떨어지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기업의 과도한 부채구조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이 IMF체제하에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채권자들은 채무 또는 이자 탕감, 그리고 부채의 출자전환 등의 방법을 이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들은 건실한 재무구조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간접금융보다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주류를 이루었고 창투사나 Angel 투자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Funding)이 기업재무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기업의 과도한 부채구조의 배경에는 직접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활발했던 탓도 있었으나 차입금 이자는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 직접금융으로 인한 자금조달에는 이러한 Merit가 없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등의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증자소득공제제도의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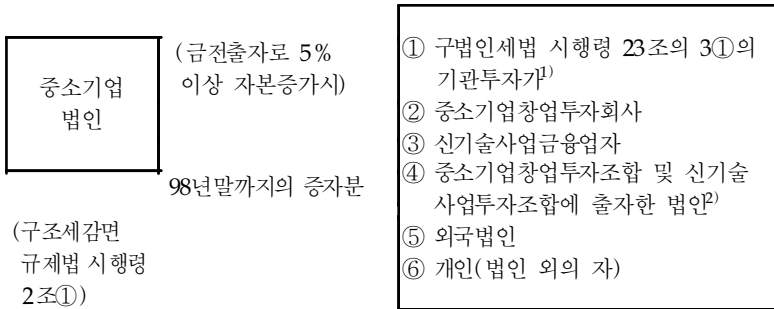
II. 규정의 내용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①에 의한 중소기업법인이 일정한 자로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한 자본금이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구법인세법 시행령 39조①)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 되는 법인으로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89조④).

▶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액 × 당해 사업연도 중 자본변경등기 후의 월수/12 × 10%(우리사주조합원 금전출자분 5% 추가)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 : 1) 기관투자자 및 구법인세법 시행령 46조의 2③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10% 이하인 경우(증자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
 2) 당해조합을 통해 출자한 경우에 한함.

이때 증자소득공제금액 계산시 공제기간은 24개월이다. 따라서 1998년중에 증자가 이루어졌다면 2000년까지 증자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1999년 이후에 이루어진 증자분에 대해서

는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이 없다.

한편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①과 ②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월이 속한 사업연도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법인세법 시행령 23조의 3①의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②를 합치지 아니한다(구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① 구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②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결국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타법인 주식 취득금액의 합계액이 증자로 인해 증가된 자본금의 10%가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때 증자소득공제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내국법인 주식 취득의 경우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89조⑥에 규정되어 있다.

III. 문제점

구조세감면규제법 93조에는 1998년말까지 이루어진 증자분에 대해 24개월간 증자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지급이자 손금인정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즉 기업의 자금조달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접금융비용인 지급이자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

직접금융비용이라 할 수 있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어서 증자소득공제 혜택마저 없다면 이는 형평성차원에서 직접금융을 확대하는 셈이 된다.

둘째, IMF체제의 원인 중 하나인 기업의 과도한 부채구조가 불식될 필요가 있는데 건실한 재무구조 유도차원에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증자)에 Merit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증자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창투사 등은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에 큰 기대를 두게 된다. 증자소득공제제도는 코스닥시장 등의 활성화대책 중의 하나로서 중요한 제도라고 본다.

IV. 개선방안

현재 98년까지의 증자분에 대해 24개월간 증자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향후 5년간인 2005년까지의 증자분에 대해 증자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무관리이론(NI접근법, NOI접근법, M&M의 수정이론 등)에 의하면 부채가 많아질수록 기업가치가 증대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이자의 세금효과로 인한 것인데 이자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되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감세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상기 이론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것이어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부채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고, 금융부채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도산 Risk는 국민경제에 끼치는 파급효과 때문에 정부에서 막아줄 것이라는 잠재적인 정부의존경향을 초래

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대마불사론).

이와 같은 근거없는 환상은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깨지게 되었고,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문제의 상당부분은 기업의 과다차입금으로 인한 재무구조불량에 기인한다.

이러한 과다차입금의 재무구조에 대해 정부는 규제일변도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으며 유인책을 제공하여 개선하려는 제도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증자소득공제혜택 부여는 그것이 증자에 얼마나 유인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나타낼 것인지의 실증적인 문제를 떠나

첫째, 증자유인책 제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둘째, 작금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고

셋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증자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세법상의 논리나 증자유인책 미비라는 실증적인 논리라기보다는 세수에 끼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다시 부실화된 금융기관 등에 공적자금으로 투입되는 비용(공적자금부실화비용 포함)보다 처음부터 증자에 대해 세무상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도하여 얻는 혜택이 장기적으로는 더 클 뿐 아니라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이라고 본다.

윤건영¹²⁾은 세무상 증자소득공제혜택 부여가 증자유인책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러나 윤건영의 논문 이외의 실증적 연구를 확인하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대로

12) 윤건영, 『증자소득공제와 재무구조개선』, 한국조세학회 『한국조세연구』 제9권, 1994, pp.91-127.

증자소득공제혜택은 증자유인책으로서보다도 증자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더 의미가 있고 작금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여타의 소득공제혜택보다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제4절 이월결손금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I. 개 요

현행 법인세법상 법인세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금액 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결손발생 중소기업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제도(carry back(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결손연도에 돌려받는 제도)의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고려해 볼 때 공제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I. 현행 규정

1. 이월결손금공제

가. 내 용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이다(법인세법 13조).

결손금이란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후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한도로 공제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ext{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 &= \text{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5\text{년 이내의 이월결손금} \\ & \quad - \text{비과세소득} - \text{소득공제액} \end{aligned}$$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부의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즉 이월결손금이 각 사업연도 소득을 초과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까지만 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이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면 비과세소득은 그 차감액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소득공제액도 마찬가지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차기로 이월되지만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 중 미공제액은 소멸된다는 점이다.

「순차로」 공제한다는 의미는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결손금을 가장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세 가지 공제항목 중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할 수 없다.

나. 취 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은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익금 또는 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한다면, 과거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자본잠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없게 되어 재정수입으로서의 세원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통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2.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일정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회사선택사항).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법인세법 72조 법인세법 시행령 110조).

이때 환급세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①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②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환급세액 = MIN(①, ②)

① 환급대상액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과세 표준 - 소급공제할 결손금액) × 직전사업연도법인세율

② 환급한도액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산출세액¹⁾ - 직전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주 : 1) 적정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III. 개선방안

정부 조세정책의 근본목적은 정부재정에 충당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기능일 것이다. 특히 부실해진 기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세수증대를 기대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근래 IMF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됐거나 기업의 계속성이 위협받아 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기업들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바, 누적된 결손과정을 거쳐 흑자경영기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기업은 마치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와 같은 것이다.

이런 기업의 회생(회복)을 적극 도와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월결손금공제기간을 늘려주는 방법이라고 본다(이러한 기업은 회생기에 자금수요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또한 설립초기단계인 법인의 경우 초기에는 수년간 결손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런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공제기간 연장은 기업이 정상적인 수익창출단계에 진입하는 데 재정적으로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될 것

이다.

하나의 기업이 탄생해서 계속성을 유지하여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로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월결손금공제기간 연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속한 경영안정 지원차원의 세무정책).

이월결손금공제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감소 측면보다 기업의 사기진작과 회복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활성화 효과가 더 크게 되고,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월결손금공제기간 연장은 정부정책의 상징성이 크다고 본다.

동일한 논리로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일시적인 결손상태에 빠진 중소기업의 경우 소급공제기간 연장을 통한 지원효과도 적지 않다고 본다(보다 전향적으로는 모든 법인에 확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독일은 이월결손금공제는 무기한으로 해주고 있고 이월결손금 소급공제도 2년간 해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5년간 이월결손금공제를 해주고 있고 이월결손금 소급공제기한도 3년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이유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이월결손금공제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이월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5절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 개선

I. 개 요

지급이자의 손금용인 문제와 관련된 세법상의 규정은 매우 복잡하며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을 거듭하여 왔다. 먼저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이 규제되는 대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제28조).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경우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의 주소, 성명을 알 수 없거나 채권자의 능력으로 자금대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②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의 경우

이러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을 당해 채권·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③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즉 건설자금 이자는 세무상 자본화하도록(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④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또는

②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

㉔ 특수관계자에게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받게 한다.

⑤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타법인 주식, 출자지분 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⑥ 기준초과차입금 보유법인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일부 차입경영에 대해 제한적으로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기준초과차입금 보유법인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문제점을 차례로 살펴본다.

II. 현행 규정

1. 건설자금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서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금융비용은 해당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 포함)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지만 건설자금이자(일시 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 차감)로 취득원가 가산 ▪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됐는지 여부가 분명 하지 아니한 차입금이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
토지매입시 건설자금 이자 종료기한	▪ 대금원불일 및 공장 등 건설의 착공일 중 빠른 날

상기 내용은 자산의 취득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자산의 원본에 포함되는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자산취득 부대비용으로 자산의 원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회계이론을 수용한 것이다.

한편 기업회계에서는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완료시까지 발생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기업회계기준 제55조④) 구체적인 지침이 기업회계기준 해석 41-55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기업회계상에서는 유형자산의 제작·매입·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물론이고 재고자산의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당해자산의 제작 등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세무상은 사업용고정자산에 한함), 세법과는 달리 건설에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차입금(특정차입금)과 자본화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차입되어 사용된 자금(일반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계상자금에 포함시키

고 있다.

2.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과다법인이 ㉠ 다른 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 또는, ㉡ 임야 등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받게 된다.

① 소비성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 및 ㉡의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상당액 중 적은 금액}}{\text{총차입금}}$$

② 소비성 서비스를 영위하거나 겸업하는 법인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소비성 서비스업 부분의 지급이자 손금부인액} + \text{소비성 서비스업 외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 손금부인대상액}}{\text{총차입금}}$$

법인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본을 생산적인 투자활동에 사용하되, 기보다는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 다른 법인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로막아 국민경제의 생산적인 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생산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지급이자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Ⅲ. 문제점

1.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즉

첫째, 세무회계에서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건설자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회계에서는 재고자산(제조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투자자산, 유형자산(사업용에 한정되지 않음) 및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무회계는 범위가 좁으며

둘째, 기업회계는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계상자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세무회계는 특정차입금만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법인 46012-3862, 1998. 12. 10>에 의하면 법인의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심사예에서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상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 중 건설 등에 소요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심사법인 99-163, 1999. 7. 23).

결국 법인세법에서는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여야 하나, 고정자

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좁혀진 듯 보이나 세무상 사례별로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현행 건설자금이자 관련 기업세무에 의하면 사실상 실무자들은 거의 다 기업회계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한 세무조정사례가 거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건설자금을 자산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논리, 즉 건설자금이자의 원가성을 부인하는 논리(건설자금을 모두 손금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하나씩 살펴본다.

첫째,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이 부채조달이 아닌 증자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건설자금이자는 회피할 수 있는 비용(또는 자산)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의 재무구조의 차이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가 다르다는 것은 수증하기 어렵다.

반면, 재무구조의 차이에 따라 비용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아주 타당한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건설자금이자는 세법상으로도 기업회계상으로도 자산화가 아닌 비용화되어야 한다.

둘째, 건설자금을 원가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원래 경제학적 기회비용이론에 입각해서 기업회계에서 건설자금을 원가로 받아들인 것이며 결국 업계요구를 기업회계에서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업회계에서 건설자금이자의 자산화는 수익·비용대응의 논리와도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가화된 건설자금이자가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될 때 비용화되어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이는 논리적으로 매우 궁핍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건설자금이자의 자산화는 기업회계상으로도 부인되어야 한다.

셋째, 건설자금이자를 원가화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면 모든 자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옳으며 자산별로 차별을 두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넷째, 건설자금이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세무상으로 볼 때 순자산이 감소한 것이며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발생시 손비 처리하는 것이 세법 고유논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옳은 것이다.

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원가화하는 것은 원래 기업회계를 수용한 것이었으나 기업회계가 계속 개정되고 복잡하게 되었으나 세법이 그에 따라 개정되지 못하여 세법은 어정쩡한 상태에 있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세법은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즉 완전히 기업회계를 따라가든지 세법의 고유논리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의 원가성을 부인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와 관련된 회계처리규정이 기업회계기준해석 41-55에 규정되어 있는데 매우 복잡하고 자세하여 실무상 그 방법을 습득하여 적용하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닐진대, 이와 못지 않게 복잡한 법인세법 시행령 52조와 법인세법 통칙 2-9-11...16을 연구하여 기업회계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조정금액을 계산하여 손금산입시키는 실무처리는 과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며 과연 그 실익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세무회계 분야는 일종의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기는 하나 보통 수준의 실무지식이 있는 세무담당자가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전문가들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건설자금이자의 경우는 입법당국 수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그들만의 전유물이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렇게 적지 않은 행정처리비용을 투입하여 증대시킬 세수효과

가 그 이상으로 나타날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실제로 기업회계가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 자산의 범위가 넓어 기업회계를 수용하면 자연히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함), 설령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이론적인 차이가 학자들간의 논란에 기인된 것이라면 학자들간의 자존심 싸움에 일선 실무자들이 희생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세무조정을 제대로 이행하여 과세소득을 정확히 계산했는지를 지도, 감독하고 세무조사를 이행할 행정소요비용은 또 얼마나 되겠는가?

이러한 행정처리비용을 과감하게 해소시킬 정책적인 결단이 요구된다. 세무처리의 간편성에 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세무는 속성상, 그리고 경제환경 다양화로 인해 복잡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일반 세무 실무자들이 접근하기조차 겁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2.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의 경우

현행 규정은 산업별 일괄적용에 따른 과세의 수평적 공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바,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기준을 산업특성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자기자본의 2배로 정하고 있어 차입금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자본집약적 산업은 타 산업 영위기업에 비해 불리하다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IV. 개선방안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세무회계에서 기업회계를 과감하게 모두

수용하든지 세법의 고유논리대로 건설자금이자의 원가성을 모두 부인하여 발생시점에서 모두 손비로 인정하여 일선 실무자들의 행정처리부담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차입금과 다법인 지급이자의 경우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기준을 산업별로 구분표시하되 자본집약적 산업의 경우 차입금 기준배수를 4배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6절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100% 인정

I. 개 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용인 범위문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분야이다. 비용의 발생주의원칙을 택하고 있는 기업회계 입장에서는 퇴직금추계액을 모두(100%) 비용화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무회계 입장에서도 기업회계에서 비용화시킨 금액을 모두 손금용인하기에는 세수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세무회계의 기본원칙과의 조화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무회계에서는 실질적으로 100% 손금용인 허용조건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여 기업의 퇴직금지급여력을 확보하게 하였다.

그러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40% 손금용인과 단체퇴직보험 등 가입조건하의 나머지 60% 손금용인의 현행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I. 현행 규정

1.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법인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요건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이에 준하여 법인내부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퇴직금에 대하여 기업회계에서는 발생주의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금 지급시점이 아니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근로제공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부채성충당금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 제26조).

또한 그 설정대상도 임원 및 사용인에 관계없이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전 임직원에 대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31-31).

그러나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어 기업회계에 따라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사내에 유보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40% 정도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사외에 적립한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199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인정 한도액을 추계액의 50%에서 40%로 축소된 것도 퇴직금의 사외적립유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즉 기업회계에서는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그 누적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추계액의 100분의 40에 퇴직금전환금계상액을 합한 금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 총급여액기준 :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임원의 상여금 중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한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 제외)] $\times \frac{1}{10}$

② 누적액기준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총추계액(임원퇴직금 중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의한 손금불산입액 제외) $\times \frac{40}{100}$ + 퇴직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 -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③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위와 같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는 세무회계에서 반드시 손금부인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손금불산입액은 유보처분하되 이러한 부인액은 사용인 등이 실제 퇴직함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금이 세법상 손금으로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손금추인한다(법통칙 2-6-9...13). 그러나 실무에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이 손금추인되는 예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손금부

인액이(유보) 계속 누적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단체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현행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총퇴직금추계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만을 계상한다고 하면 부채로 계상되지 못한 60% 해당액의 퇴직금은 제도적으로 그 지급이 보장될 수 없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외부의 제3자에 의하여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금의 외부적립제도로 마련된 것이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제도이다.

단체퇴직보험·종업원퇴직신탁·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료 또는 부금을 납입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중 세무상 부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공제한 금액(퇴직금 총추계액 대비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액을 말함)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에 대한 보험료 등을 손금산입한도액으로 하되, 이미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불입한 보험료 등으로서 먼저 손금산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불입 손금산입 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며, 2개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4호).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용인한도액 계산과정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체퇴직보험 등을 최초로 가입하면서 보험료 등을 납입하는 경우

① 추계액기준한도액

$$\left[\begin{array}{l} \text{당기말 현재} \\ \text{임원·사용인} \\ \text{퇴직금추계액}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당기말 현재} \\ \text{세무상} \\ \text{퇴직급여} \\ \text{충당금}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충당금미설정액)} \\ \text{손금산입한도액} \end{array} \right] = \boxed{\boxed{\begin{array}{l} \text{손금산입} \\ \text{한도액} \end{array}}}$$

② 예치금기준한도액

$$\left[\begin{array}{l} \text{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 계산액} \\ \text{(손금산입대상보험료)} \end{array} \right]$$

③ 한도금액 : 위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2) 이미 가입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① 추계액기준한도액

$$\left[\begin{array}{l} \text{당기말 현재} \\ \text{임원·사용인} \\ \text{퇴직금추계액}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당기말 현재} \\ \text{세무상} \\ \text{퇴직급여} \\ \text{충당금}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신고조정 또는} \\ \text{결산조정에} \\ \text{의해 이미} \\ \text{손금산입한} \\ \text{보험료} \end{array} \right] = \boxed{\boxed{\begin{array}{l} \text{손금산입} \\ \text{한도액} \end{array}}}$$

② 예치금기준한도액

$$\left[\begin{array}{l} \text{단체퇴직보험} \\ \text{예치금 등}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결산조정 또는} \\ \text{신고조정에 의해 이미} \\ \text{손금산입한 보험료}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손금산입대상} \\ \text{보험료} \end{array} \right]$$

③ 한도금액 : 위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Ⅲ. 문제점

앞서 설명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충당금의 성격

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 분	사 례
평가성충당금	대손충당금
부채성충당금	수선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공사손실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원래 충당금은 미확정채무의 성격이 강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의하면 세법상 손금에 해당되기 어렵다.

그러나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첫째,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둘째, 당기에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셋째, 근로관계 존속기간을 통해 금액이 누적되어 기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근로로 인해 법적 청구권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해 실제로 배당가능이

익이 감소하며(결산조정사항)

다섯째,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므로 금액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적의무도 분명하다. 결국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손금(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법적의무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액 손비로 인정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2. 단체퇴직보험금 등의 가입 강제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해 기업측의 입장에서 보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 발생은 불가피하며 손금부인액의 추후 손금추인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의 타개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여 손금부인된 60% 해당액(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이다.

이러한 단체퇴직보험 등의 가입은 종업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능력 확충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체퇴직보험 등의 가입을 강제화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세법에 의해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유도되는 셈이어서 기업의 자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특정업종인 보험회사에 일방적인 이익을 배풀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 단체퇴직보험 등의 가입이 종업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 재원확보기능이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지급 재원이 더 감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퇴직금지급 재원을

단체퇴직보험 등에만 묶여야 한다는 자금운용의 경직성 때문이다. 실제로 단체퇴직보험 등의 수익률은 다른 금융상품인 예금, 연금, 채권 등과 같은 보수적인 금융상품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기능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단체퇴직보험 등은 종업원퇴직재원의 예치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 보험기능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단체퇴직보험 등의 가입권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보험사들의 영업비를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은 그대로 단체퇴직보험상품의 수익률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셋째, 보험사들간의 단체퇴직보험 등 유치영업이 초래하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데, 실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유치금액의 일정비율을 영업비(일종의 접대비)로 책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영업비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와 지출로 귀착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단체퇴직보험 가입의 사실상의 강제화는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3.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에 따른 기업의 일방적 손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유보처분하되 실제 퇴직금지급액이 세법에 의해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손금추인된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이 손금추인되는 예가 거의 없어 기업에 일방적인 손해를 야기하게 된다. 통상 손금부인액을 유보처리하는 경우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처리의 비용(손금)배분의 기간적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존속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추계액)을 발생주의원칙에 의해 비용배분하

고 세무회계에서는 실제 퇴직금 지급시에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기업의 존속기간 전체를 통해 볼 때 비용(손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 비용인식의 기간적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세무상 손금부인유보조치가 현실적으로 기업에 일방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 제도자체를 재고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IV. 개선방안

결론적으로 위에서 설명된 이야기를 종합하여 볼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100%를 인정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게 하는 것과(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못함) 단체퇴직보험제도를 강제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현행과 같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서 100% 손비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으로 100% 손비를 인정받는 제도가 더욱 합리적이라고 본다.

제7절 파생상품거래의 과세방안

I. 개 요

경제가 팽창하고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시장은 세분화되고 고도로 복잡해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현대의 경제주체들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하고 정교하며 복잡한 욕구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 중 하나가 파생상품이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그 거래규모가 천문학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매일 성장하고 있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 조세탈루로 인한 심각한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생상품거래는 기존의 거래와는 그 형태와 거래 목적이 상이함은 물론 거래시점과 손익의 실현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조세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조세이연,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 기법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 실질과세원칙, 자의계산배제원칙, 부담능력원칙, 기업회계의 존중 등의 원칙간에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은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 및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시기와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혹은 국외에서 발생한 것인지, 즉 국내의 원천소득구분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과세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

여 현행 과세제도가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파생상품 관련세제도 세원관리와 공평과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과 그 귀속시기 등 주요논점에 대해 주요 파생상품거래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과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파생상품거래는 가장 기본골격이 되고 있는 스왑거래,¹³⁾ 선물거래,¹⁴⁾ 선도거래,¹⁵⁾ 옵션거래¹⁶⁾의 4가지 형태의 파생상품거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이에 수반하여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역시 현재에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입법론적 측면에서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적용가능한 세법규정을 단시일 내에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3) 스왑은 쌍방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조건에 따라 '현금의 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이는 만기가 다른 선도거래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스왑은 여러 개의 선도 또는 선물계약의 포트폴리오 집합이다. 대표적인 스왑거래로는 이자율스왑과 통화스왑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일반 상품, 주식, 상품지수 또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스왑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자율스왑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교환하는 스왑을 들 수 있다.

14) 선물이란 특정한 상품을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매도)하기로 한 약속이다. 이때 선물계약의 대상이 되는 특정상품을 기초자산이라 부르며,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을 현물가격 spot price, 특정한 거래시기를 선물계약의 만기일 maturity date 또는 delivery date, 그리고 정해진 가격을 선물가격 futures price이라 부른다.

15) 선도거래는 이행되지 않은 미래의 계약을 말한다.

16) 옵션은 정해진 기간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유자가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이다.

II. 우리나라 파생상품 과세관련 현행 규정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 현행 세법의 관련규정은 무엇인지 또 기존의 세법규정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행법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방안을 유추 확장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없는가에 대한 분석과 현행 규정에 의해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기초를 마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떻게, 또 어떤 내용을 보완하여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현행 세제하에서는 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 대신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를 파생상품거래에 유추 내지는 확대적용하는 몇 개의 예규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세법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파생상품거래의 세제합리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1. 선물환거래에 관한 기본통칙

1988년 3월 1일 신설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4...17은 선물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에 관한 것으로서 “선물거래로 인하여 생긴 환차손익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하고,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의해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거나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의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경우의 선물거래 등의 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날(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1998년 세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폐지되면서 이 통칙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기본통칙이 제정될 1988년 당시는 우리나라에 선물거래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통화선도거래만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에 대해 이 통칙을 적용하게 되면 일일정산에 의해 매일 실현되는 손익이라도 결제시점에 가서야 전액 손익으로 계상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리고 통화 이외에 상품이나 지수, 이자율 등에도 유추해서 적용한다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충실하려는 입장임을 이해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와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규정으로 타당하지 않다.

2. 선물거래계약 갱신 등에 관한 예규

(구)재무부예규 법인22631-39(1992. 2. 10)에 의하면 “선물거래계약의 만기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당해 선물거래손익은 연장계약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선물거래손익의 귀속시기를 재계약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해석하였다. 한편 국세청 예규 법인22601-3776(1988. 12. 23)에 의하면 “선물환거래에 있어 당초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에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의 조건변경에 불과하므로 선물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의 귀속시기는 수정된 계약서에 따라 거래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

다”¹⁷⁾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환관리규정에는 선물환거래에 있어 역사적 환율차환(historical rate rollover)금지조항이 마련되어 있다(제2-54조 제2항). 즉 이미 체결된 선물환거래의 금액변경, 또는 기간연장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를 위한 새로운 선물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과 거래당사자는 이미 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을 반드시 계약조건 변경시점 또는 새로운 선물환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정산·수수하여야 하며, 이것을 선물환율에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환차손익을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거주자와 외국환은행간의 통화스왑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미 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액을 반드시 정산·수수한 후 새로운 통화스왑거래를 시작하여야 하며 이를 새로운 계약의 환율이나 이자율에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보상할 수 없다(제13-14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연장의 경우 (구)채무부 예규 및 국세청 예규는 외국환관리규정상 손익의 인식조항과 불일치되고 있으므로 폐지 또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선물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거래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도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과세규정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외국환관리규정의 관련조항도 선물환계약에만 국한하고 있으므로 선물환계약 이외의 상품, 주가지수, 이자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거래의 계약갱신, 연장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 포괄적인 과세규정으로 조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파생상품거래손익에 대한 소득의 구분에 관해서 소득세법

17) 이외에도 통화스왑에 관한 예규(국세청예규 국일22601-505(1988. 12. 3))가 있으나 앞에서 논의한 국세청예규 법인22601-3776(1988. 12. 23)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나 법인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교육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이라 함은 과세기간 중 현물환, 선물환, 스왑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위험 회피회계의 수용가능성을 유추해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¹⁸⁾

이와 함께 통화옵션거래에서 수취한 프리미엄과 지급한 프리미엄의 성격에 대한 (구)재무부의 해석(통화옵션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검토 1993. 4)에 의하면 통화옵션의 매도시 수취한 프리미엄 전액을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과세소득으로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Ⅲ.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

파생상품거래는 기존의 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를 소득구분의 유명무실화와 과세소득간의 형평성 문제, 파생상품거래손익의 조정을 통한 조세유예 문제 및 비거주자의 과세회피 문제의 세 가지 논점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1. 소득구분의 유명무실화와 과세소득간의 형평성

소득세법상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 파생상품거래를 매개로 하여 이

18) (구)재무부조세23601-115(1991. 5. 24)

자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을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가령 A는 B가 소유한 상장주식을 현재 시가인 1주당 1만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1년뒤 1만 1,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 거래에서 차액 1,000원의 경제적 실질은 이자에 해당되지만 외형상으로는 주식양도소득으로 나타난다. 비록 간단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현실의 금융거래에서는 복잡하고 정교하게 고안된 다수의 파생상품거래를 조합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을 애매모호하게 하여 과세요건을 회피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조명해 보기로 하자.

<사례 1>

A는 현재 94달러를 투자하여 1년 뒤 100달러가 보장되는 무이자부채권 Treasury note에 투자하였다고 하자(1년간 6달러의 이자소득이 보장되는 scheme).

<u>현재</u>	<u>1년 뒤</u>	<u>소득의 종류</u>
94달러 채권투자	→ 100달러 상환받음	이자소득 6달러

이 경우 6달러의 소득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동일하게 인식된다. 한편 B는 IBM 주식에 100달러를 투자하고, 이 주식에 대하여 만기 1년, 행사가격 100달러인 콜옵션을 10달러에 매도하였다. 동시에 이 주식에 대하여 만기 1년, 행사가격 100달러인 풋옵션을 4달러에 매입하였다. 여기에서 IBM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일한 행사가격이라도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u>현재</u>	<u>1년 뒤 매도 또는 청산</u>	<u>소득의 종류</u>
100달러 주식투자	→ 매매차익 또는 손실	양도소득
+10달러 콜옵션매도	→ 10달러 또는 0달러	?
- 4달러 풋옵션매입	→ - 4달러	?

B의 경우에는 1년 뒤 IBM 주식의 가격이 100달러 이상인 경우와 100달러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자.

① 주식의 가격이 100달러 이상인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옵션이 행사되므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인도하거나 매매하여 청산하고, 옵션프리미엄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소득은 $100\text{달러} + 10\text{달러} - 100\text{달러} = 10\text{달러}$ 가 되며, 동시에 풋옵션은 무가치하게 되므로 즉시 지급한 풋옵션을 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순이익은 $10\text{달러} - 4\text{달러} = 6\text{달러}$ 가 된다. 이 경우 6달러는 콜옵션매도시 수취한 프리미엄에서 풋옵션매입시 지급한 프리미엄의 차액이다.

② 주식의 가격이 100달러 미만인 경우

B는 보유하고 있는 풋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100달러에 매각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가 $100\text{달러} - 4\text{달러}$ (풋옵션매입시 프리미엄) - 100달러 (주식의 취득원가)가 풋옵션행사 손익이 될 것이다. 그런데 10달러에 매도한 콜옵션은 이제 무가치하므로 바로 콜옵션프리미엄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순이익은 $- 4\text{달러} + 10\text{달러} = 6\text{달러}$ 가 된다.

이 결과 A와 B의 순손익은 동일하나 B의 소득 6달러는 분명 이자소득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언제 소득으로 인식할지에 대해 올바른 과세처리방안을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과생상품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조정과 조세유예

과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조세납부를 이연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가령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하에서 발행사채의 지급이자자는 기간별로 손금산입되고, 매입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처분시점까지 납세의무가 이연되므로 이를 통한 손익의 귀속시기 조정이 가능해진다.¹⁹⁾ 다음의 사례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해 보자.

<사례 2>

한국의 H은행은 2000년 6월 30일 미국에서 2년만기, 연이자율 8%로 10억 달러를 차입하여, IBM 주식 1백만 주를 1주당 1,000 달러에 매입하면서 동시에 다음 조건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입하였다고 하자.

포지션	계약일	만기일	행사가격	옵션프리미엄 ¹⁾
콜옵션매도	2000. 6. 30	2002. 6. 30	1,200달러/1주당	20달러수취/1주당
풋옵션매입	2000. 6. 30	2002. 6. 30	1,200달러/1주당	10달러지급/1주당

주 : 1) 옵션계약일 현재 IBM 주식의 가격이 향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여 콜옵션프리미엄이 풋옵션프리미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 미국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로 인정되면 지출된 지급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위의 거래조건에 따라 만기일의 손익에 대해 IBM 주가가격이 행사가격인 1,200달러 이상일 경우와 그 미만일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자.

① IBM의 주가가 1,200달러 이상일 경우

풋옵션매입계약은 무가치하게 되므로 전액 손실(1,000만 달러 = 10달러 × 100만주)로 인식한다. 콜옵션상대방은 옵션을 행사할 것이므로 IBM 주식을 1주당 1,200달러에 처분하여 주식양도차익 2억 달러와 콜옵션프리미엄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H은행이 얻게 될 총소득은 2억 1,000만 달러(= 2억 달러 + 2,000만 달러 - 1,000만 달러)가 된다.

② IBM의 주가가 1,200달러 미만일 경우

콜옵션매입계약은 무가치하게 되므로 전액 이익(2,000만 달러 = 20달러 × 100만주)으로 인식한다. 풋옵션을 행사할 것이므로 IBM 주식을 1주당 1,200달러에 처분하여 주식양도차익 2억 달러에서 지급한 풋옵션프리미엄을 차감하게 되면 H은행이 얻게 될 총소득은 2억 1,000만 달러(= 2억 달러 - 1,000만 달러 + 2,000만 달러)가 된다. 이상의 거래결과 IBM 주식의 행사가격과 관계없이 H은행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은 손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이자비용	4,000만 달러	- 8,000만 달러	- 4,000만 달러
파생상품거래이익	0	0	210,000,000
계	4,000만 달러	- 8,000만 달러	1억 7,000만 달러
법인세증감분 ¹⁾	- 11,200,000	- 22,400,000	47,600,000

주 : 1) 법인세율을 28%라고 단순하게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만약 한국의 H은행이 위의 파생상품거래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으로서 10억 달러를 투자한 뒤 2년 뒤 2억 1,000만 달러를 얻을 수 있는 투자안으로 연 10.5%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채권이나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도별로 손익이 인식될 것이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이자비용	- 4,000만 달러	- 8,000만 달러	- 4,000만 달러
이자수익	52,500,000	105,000,000	52,500,000
계	1,250만 달러	2,500만 달러	1,250만 달러
법인세증감분 ¹⁾	3,500,000	7,000,000	3,500,000

주 : 1) 법인세율을 28%라고 단순하게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이 결과에서 확정적 이자소득이 유입되는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면서 파생상품거래를 정교하게 고안하여 조합함으로써 조세를 이연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위의 경우 2000년도 소득과 2001년도 소득에 대한 조세이연효과를 계산하면 약 590만 달러 가까이 됨을 알 수 있다.²⁰⁾

3. 비거주자의 과세회피 문제

소득세법 제3조는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소득세법상 규정된 소

20) 할인율을 연 10%라고 가정하는 경우

$$2000\text{년도분} : [3,500,000 - (-11,200,000)] \times [(1+0.1)^2 - 1] = 295\text{만 } 4,700\text{달러}$$

$$2001\text{년도분} : [7,000,000 - (-22,400,000)] \times [(1+0.1) - 1] = 294\text{만 } \underline{\text{달러}}$$

$$\text{계} = 589\text{만 } 4,700\text{달러}$$

득에 대해서,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9조와 시행령 제179조에서 규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각각 인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문제는 위 법조문 역시 파생상품거래가 활성화되기 이전의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를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조문이고, 파생상품거래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경우가 보통이다.²¹⁾ 따라서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받는 전통적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으로 변형시키는 경우 현행 세제로는 세원관리와 공평과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이자소득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소득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하여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둔갑시켜 원천징수를 면할 수도 있다. 또 옵션거래와 선도거래를 결합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으면서 외형상 파생상품거래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이 같은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사례 3>

2000년 1월 1일 A는 명목원금 100억엔에 대하여 엔:달러의 환율을 100:1(행사가격)로 하고 만기가 1년인 풋옵션을 B에게 1,800만 달러에 매도하였다. 동시에 A는 B와 명목원금 100억 달러에 대하여 풋옵션 만기일과 동일한 일자에 엔:달러를 126.6:1로 하는 선물환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만기일인 2000년 12월 31일 A와 B는 계약을 이행하고 청산하였다. 이상의 파생상품

21)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닐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수수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B	
	지급	수입	지급	수입
2000. 1. 1 계약체결	-	1,800만 달러	1,800만 달러	-
2000. 12. 31 B의 풋옵션행사	1억 달러	100억엔	100억엔	1억 달러
2000. 12. 31 A의 선물환매입	100억엔	7,900만 달러	7,900만 달러	100억엔

결국 이 거래의 결과 A는 2000년 1월 1일에 1,800만 달러를 수취하고, 12월 31일 2,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경제적 실질을 갖는다. 한편 B는 2000년 1월 1일에 1,800만 달러를 지급하고, 12월 31일 그 대가로 2,1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파생상품거래라고 하기보다는 자금의 차입, 대출거래로 보아 B에게는 이자소득 300만 달러를 귀속시키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이자소득으로 귀속시킨다고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 B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서 이자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밖에 스왑거래시 일방의 스왑거래지급은 정기적, 상대방의 지급은 비정기적 방식single up-front payment을 계약조건으로 하되, 스왑수수금액에 비추어 비정기적 지급의 규모가 크다면 이러한 스왑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거래와 이자율스왑거래의 양면성을 갖는다. 이 경우 스왑수수차액에 대해 스왑거래손익과 이자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취이자의 원천징수회피를 위한 도구로 전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OECD 1994).

이외에도 계약기간 종료시점에서 재계약을 통해 유리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약기간의 연장tax timing option과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동시에 취하여 사업연도말에 손실이 발생한 포지션만 실현시키고, 이익이 발생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키는 스트래들straddle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조세이연 또는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다.

IV. 개선방안

1. 파생상품거래별 과세소득의 인식시기

손익의 귀속시기의 문제는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매 과세연도마다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당해 파생상품거래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만 인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집약된다. 다시 말하면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특히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과세제도 아래에서는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손실을 앞당기고 이익을 미루는 조세차익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파생상품거래의 합리적 과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가. 스왑거래

다음의 스왑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에 대해 현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귀속시기와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를 분석한 후 합리적 과세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례 4>

2000년 4월 1일에 A는 B와 5년간의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스왑계약의 내용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매 사업연도 4월 1일을 스왑 결제일로 하여 명목금액 1억 달러×LIBOR를 지급하되, B는 동일날짜에 명목금액×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A와 B의 신용위험이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다. 한편 이자율스왑 결제금액 확정일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매 사업연도 4월 1일이며, 2000년 4월 1일의 LIBOR는 7.8%라고 한다. 단, 결산일은 A, B 모두 12월 31일이다.

법인세법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기준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인세법 제40조).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대가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손비가 발생한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손익의 귀속기준을 말한다.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기업회계상 손익인식기준인 수익의 실현 및 비용의 발생주의와 차이가 있으며,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²²⁾

22) 지급이자는 지급하였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자를 후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일까지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미 경과한 이자부분에 대하여 이자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비용을 계상한 때를 손금의 귀

(1) 권리확정요건

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기업회계에서 수익의 획득조건에 해당).

나) 재화나 용역의 제공대가를 수취하기로 약정한 날이 도래하여야 한다.

(2) 의무확정요건

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따라 제공받기로 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아야 한다.

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도래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A는 2000년 4월 1일 현재 명목원금 1억 달러에 대해 $0.2\% (= 8\% - 7.8\%)$ 에 해당하는 20만 달러만큼을 스왑거래수수차액으로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스왑거래수수차액을 수취하기로 약정된 날은 2001년 4월 1일이므로, 이날은 2000 사업연도 결산일 현재까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1) - 가)(권리확정요건)에 의해 2001년 4월 1일에 20만 달러를 과세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결산일에 과생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산일 현재 이 스왑계약의 공정가액을 구해야 한다. 향후 예상되는 LIBOR가 수취하게 될 고정이자율 8%보다 낮은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

속시기로 한다(법인세법 제40조).

상되면 A는 LIBOR와 8%의 차이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을 스왑 계약기간에 걸쳐 수취하게 되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이 유리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만큼 스왑계약 자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를 스왑평가이익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만일 그 반대의 경우라면 부채로 계상하고 스왑평가손실을 계상하게 될 것이다. 2001년 4월 1일 스왑결제일에는 이미 2000년 4월 1일에 스왑거래차액으로 확정된 20만 달러를 스왑거래 당사자간에 수수하게 되는데 이를 스왑거래손익 또는 이자비용(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스왑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결산일의 스왑평가손익과 스왑거래 결제일의 스왑거래손익으로 나누어 인식하게 된다. 이후 2001사업연도의 결산일에도 스왑계약 자체의 공정가액을 산출하여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되, 직전 결산일에 계상되어 있던 스왑계약의 공정가액과의 차액, 즉 변동분을 스왑계약평가손익으로 인식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스왑거래의 회계처리의 세법상 수용가능성은 결국 스왑평가손익을 과세대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자산평가의 임의성에 따른 소득조작 방지, 실현된 이익에만 과세한다는 현행 세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스왑계약 자체의 공정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수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평가손익의 실현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²³⁾ 따라서 현행 세법규정에 의할 경우 스왑평가손익은 자산의 임의평가

23) SFAS No.133(Accounting for Derivative Instruments and Hedging Activities)에서도 결산일에 스왑계약 자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결제일에는 스왑거래수수차액을 스왑거래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법규정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증(감)에 해당되므로 세무조정대상이 되어야 하며, 스왑결제일에 수수된 스왑거래차액만을 현금흐름이 수반되어 실현된 소득으로 간주하여 스왑결제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귀속시키게 된다.

그러나 향후 보완되어야 할 스왑거래에 대한 과세규정에서는 스왑결제금액 확정일인 2000년 4월 1일에 이미 스왑거래로부터 수수하게 될 스왑수수차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스왑결제일인 2001년 4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00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사업연도분에 대한 해당 일수만큼 안분계산하여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비록 대가를 수취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어도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대가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으로 하고, 손비가 발생한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을 준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 같은 논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미 경과한 이자부분에 대하여 이자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비용을 계상한 때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한다(법인세법 제40조)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입법례는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⁴⁾

24) U.S. Internal Revenue Code에서 스왑계약은 명목원금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s(NPC)이라는 포괄적인 분류상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section 1. 446-3에 의하면 NPC는 “당사자의 일방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일정대가 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과의 교환으로 명목원금에 특정지수를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의 지급을 규정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에는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주가지수equity index스왑, 지분equity스왑, basis 스왑 등 이와 유사한 경제적 계약이 열거되고 있다. 이러한 NPC의 정의에 기초해 볼 때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section 1. 446-3에 의하면

앞의 <사례 4>의 스왑계약에서 스왑결제일의 수수차액은 20만 달러이며, 이를 과세연도별로 해당일수만큼 안분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000사업연도	2001사업연도	계
A의 변동금리지급	586만 656달러	178만 9,071달러	780만 달러
B의 고정이자지급	6,010,929	2,139,344	800만 달러
스왑거래수수차액	15만 273달러 ¹⁾	4만 9,727달러 ²⁾	20만 달러

주 : 1) $275/366 \times 20$ 만 달러

2) $91/366 \times 20$ 만 달러

이 결과 A는 2000사업연도에 이 스왑계약으로부터 15만 273달러의 스왑거래이익을, B는 2000사업연도에 동액의 스왑거래손실을 인식하고, 2001사업연도에 20만 달러 중 미인식된 4만 9,727달러를 A와 B는 각각 스왑거래손실과 스왑거래이익으로 인식한다.

나. 선물거래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결제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은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손익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보는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나, 파생상품 중 선물, 옵션 등은 일일정산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통하여 파생상품의 가격변동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증거금의

스왑결제일에 있어 스왑수수차액에 대한 지급형태를 정기적 지급, 비정기적 지급, 그리고 계약종료시의 지급으로 규정하고, 지급형태에 따라 상이한 과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정기적 지급은 NFC에 대한 전체 계약기간 동안 1년 또는 그 이하의 기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과생상품 거래손익을 평가손익으로서 미실현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금전채권 또는 채무가 수반된 실현손익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생상품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고려와 과세소득의 기간조정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생상품손익의 인식을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시가의 입수가능성을 전제로 시가기준으로 전환하여 과세하는 것이 입법론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의 경우에는 일일정산에 의해 과세대상이익의 공평하고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해 보유자산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더구나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의 일일정산손익은 거래증거금 계좌에 직접 반영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하기보다는 일일정산손익에 대한 과세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에 관한 문제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선물거래의 회계처리는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 일일정산을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일일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모두 거래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선물거래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중에는 ‘정산손익’이라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되, 전매, 환매, 결산 및 최종 결제시에만 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한다.

여기에서 선물평가이익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 일일정산된 ‘정산손익’ 계정잔액을 의미하지만 전매, 환매, 결산 및 최종 결제시에는 ‘선물거래손익’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물거래에서의 평가손익은 기중에만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선물거

래손익은 물론 선물거래평가손익에 대해서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세법상 수용하더라도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전매, 환매, 결산 및 최종결제시 증거금 계좌에 직접 반영된 선물거래손익에 대해 이를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을 것이다.

결국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 일일정산marking to market을 하는 경우 소득의 수입으로 간주constructive receipt of income하고, 선물거래에 대해 과세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선물계약의 만기 전이라도 계약으로부터의 이익을 증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고, 이익이나 이득의 보고가 이연되어서는 안되며, 이연된다면 조세이연과 스트래들거래의 과세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미국세법의 경우에도 경상이득ordinary income이냐 아니면 자본이득capital gain이냐를 구분하는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선물거래손익을 만기결제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일정산에 의해 과세소득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선도거래

선도거래는 단지 미이행계약에 불과하므로 대차대조표 계상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으며, 그 결과 재무제표의 주식사항으로 공시하는 정도의 회계처리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파생상품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이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체제 내에서 인식하고 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고하게 되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통화선도계약 자체가 유리한 또는 불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 상태에 있다면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부채로 계상하고, 평가손익은 당기순손익 계산에 반영

하도록 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해서 결산일의 환율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하고 있는 현행 세법규정에 비추어 통화선도계약에 대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평가손익에 대해서도 과세소득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일관성을 견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화선도거래 이외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선도거래는 계약당사자의 수요에 맞추어 설계되고 거래되는 특성 때문에 공정가액 산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표준화된 거래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을 수 있다. 또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선물거래와는 달리 상대방의 이행능력에 따라 신용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외에는 선물계약과 경제적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선물거래의 과세방안에 준해서 입법을 하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통화 또는 이자율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금융기관인 경우 객관성 있는 공정가액의 산출이 가능하므로 선물거래에 대한 과세논리를 적극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에 관한 기업회계기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에서도 시가 또는 공정가액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조세목적상으로도 시가평가 도입이 타당하다는 주장(이성우, 1997)도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라. 옵션거래

옵션거래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전에 정한 대상물의 매매, 파생상품거래, 기타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

하는 것을 약정한 거래를 말한다. 옵션거래에서 옵션매입자는 옵션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으로 리스크를 옵션프리미엄에 한정할 수 있고, 전매 및 양도에 의한 결제와 권리행사에 의해 손익이 발생한다. 한편 옵션매도자는 옵션프리미엄을 수취함으로써 인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따른 리스크를 무한대로 져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옵션거래에서는 전매도 및 의무의 이전, 권리행사일의 권리행사에 의해 손익이 발생하며 수수한 옵션프리미엄에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최초거래시 수수한 옵션프리미엄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계상되므로 수수시점에서 과세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한편 옵션의 전매, 환매시 수수된 옵션대금과 옵션권리행사시 수수된 권리행사차금과 이미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에 계상되어 있는 옵션프리미엄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전매약정일, 환매약정일 또는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귀속시킨다. 만약 옵션이 미행사되어 소멸하는 경우 유동자산 계상분은 옵션거래손실로, 유동부채 계상분은 옵션거래이익으로 소멸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귀속시킨다.

기업회계기준에는 거래소에서 매매목적으로 거래되는 옵션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위탁증거금 등 옵션거래를 위한 예치금은 유동자산으로 계상한다.

② 옵션매입시 지급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유동자산으로, 매도시 수취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유동부채로 처리한다.

③ 전·환매시 수수된 옵션대금(또는 권리행사시 수수된 권리행사차금)과 이미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에 계상되어 있는 옵션프리미엄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옵션거래손익 등으로 하여 당기손익

으로 처리한다.

④ 옵션이 미행사되어 소멸하는 경우 유동자산 계상분은 옵션 거래손실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유동부채 계상분은 옵션거래이익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⑤ 유동자산(또는 유동부채)에 계상되어 있는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옵션프리미엄의 장부가액과 결산일 현재 옵션프리미엄가격과의 차액은 옵션평가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결과 발생하는 옵션거래손익에 대해서 이를 과세소득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옵션거래에 대한 위의 회계처리기준만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옵션계약에 대한 시가를 구하여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스왑거래평가손익, 선도거래평가손익과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문제 역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옵션의 경우에는 선물거래평가손익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계약당사자간에 체결된 장외옵션의 평가손익의 과세대상으로의 귀속여부는 현행의 세제하에서는 동일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마. 과세소득의 인식시기에 대한 입법례

현행 세법의 손익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로서 결제기준과 동일한 개념이다. 이 방법은 세무처리 전반에 걸쳐 일관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그 특징으로 말미암아 조세이연 또는 회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조세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왑, 선물, 선도, 옵션 등 파생상품별 과세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다.

그러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조세정책상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과제로 쉽게 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고,²⁵⁾ 둘째는 미실현이익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연도말 현재의 공정한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셋째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점, 마지막으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세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자산의 유동화를 강요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헌법과의 합치여부에 관한 논점에 대해서는 이익이 실현되었건 실현되지 않았건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의 증대에 따른 부담력의 증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실현이익이나 미실현이익 양자가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다. 또한 그와 같이 증대된 소득의 실현여부, 즉 증대된 소득을 토지자본과 분리하여 현금화할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납세자가 전체 자산을 어떻게 하여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산보유형태의 문제일 뿐 소득창출의 문제는 아니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역시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와 마찬가지로 원본과는 구별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원본잠식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실제에 있어서도 비록 과세목적과 과세

25) 박용석, 『미실현이익 과세에 대한 제고』, 『인권과 정의』 제222호(대한변호사협회), 1995. 2, p.44.

방법이 다르기는 하나 자산재평가세, 자산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미실현이득에 과세하는 기존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판례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례가 있었고,²⁶⁾ 미국에서도 현재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와 헌법정신은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를 고려한 입법에 의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²⁷⁾

두 번째 논점인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장내거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일일정산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통하여 과생상품 가격변동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증거금의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객관적인 공정가치가 존재한다면 과생상품손익을 평가손익으로서 완전히 미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확정된 손익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 논점인 보유자산의 강제적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장내거래의 경우에는 증거금을 즉각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자산의 보유와 처분이라는 경제행위는 경제주체가 임의로 선택한 합리적 경제행위로서, 과세형평과

26) 헌법재판소 1994. 7. 29 결정 92헌바49(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헌법소원)

27) 이성우, 『과생상품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 8) p.130에서 재인용(Marvin A. Chirelstein, *Federal Income Taxation - A Guide to The Leading Case and Concepts*, Foundation Press, 1994, p.71)

거래의 본질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임을 감안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과생상품거래는 기존의 조세체계에서 보면 매우 독특한 거래지만 미국, 일본 등 과생상품거래가 활발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이미 저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과세하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과생상품의 엄청난 규모를 감안할 때 이에 관한 과세제도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세원관리와 공평과세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과세소득의 성격규명

가. 스왑거래

과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규명을 위하여 우선 앞에 제시된 <사례 4>를 통하여 스왑의 경우 과세소득의 종류를 판단해 보기로 하자.

위의 <사례 4>에서 과세소득의 인식시기와는 별개로 2001년 4월 1일 A가 수취한 20만 달러는 A의 순자산 증가로 법인세법상의 소득을 구성하므로, 스왑계약 자체의 시가평가로부터 발생하는 평가손익과는 구분된다.²⁸⁾ 그러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이자소득인가? 이 점에 대해 1억 달러에 상당하는 명목

28)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결산일 등에 스왑계약 자체를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세법은 자산의 입의평가증인 경우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스왑평가손익이 자산의 평가차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스왑계약이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하나 이 점에 대해 세법상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원금을 실제로 A가 B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수익의 획득조건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둘째,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셋째,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을 구성하려면 양도대가와 양도대상물이 식별되어야 하는데 스왑거래에서 A가 B에게 지급하는 1억 달러 \times LIBOR의 현금흐름을 양도대상물로, A가 B로부터 수취하는 1억 달러 \times 8%를 양도대가라고 한다면 양도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양도대상물인 현금흐름이나 스왑계약 자체가 현행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자산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또한 스왑거래를 만기를 달리하는 일련의 선도거래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 스왑결제일에 수수되는 스왑거래 수수차액을 선도거래 결제차액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소득구분도 현행 세법상 분명하지 않다.

넷째, 기타소득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열거된 소득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소득의 개념정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스왑거래손익, 스왑거래평가손익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파생상품 거래손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선물거래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지수 선물, 옵션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2(유가증권지수의 유가증권 의제 등)에 의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의제되어 증권거래법의 적

용을 받고 있다.²⁹⁾ 따라서 유가증권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서 있는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소위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서 있으므로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해서 다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비로소 과세소득이 된다. 금융거래 관련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소득의 종류로는 이차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양도소득은 채고 자산 이외의 일정한 법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차익, 즉 실현된 자본이득이라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의제된 주가지수선물, 옵션 등

29) 증권거래법 제2조의 2(유가증권지수의 유가증권 의제 등)에 의하면

- ① 주권 기타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 기타 유가증권지수로서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이하 “유가증권지수”라 함)은 유가증권으로 본다.
- ② 유가증권지수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수치와의 차에 의해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이하 “유가증권의 선물거래”라 함)는 이를 유가증권의 매매로 본다.
- ③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는 이를 유가증권의 가격으로 본다[본조신설 94. 1. 5]. 또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유가증권의 지정)의 5.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하 “유가증권옵션”이라 함)가. 주권의 매매거래
- 나. 사전에 설정된 유가증권지수(법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를 말함. 이하 같음)의 수치 또는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 당해 의사표시를 행하는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 또는 당해주권의 가격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 다.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법 제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말함. 이하 같음)

의 선물거래손익은 양도소득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은 순자산증가에 의해 과세소득을 구성하고, 개인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소득이 아닌 것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선물거래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에서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이 초래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선물거래에 대한 과세방안과 함께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세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 선물거래소득의 과세방안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³⁰⁾

30) 선물거래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개인의 과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의 과세문제에 대해 소득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의 과세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입장에서는 열거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소득의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이 취하고 있는 순자산증가설과 소득세법이 취하고 있는 소득원천설이라는 기본적 입장의 차이로 인하여 법인과 개인간의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KOSPI200 선물·옵션 거래실적〉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선물	옵션	선물	옵션	선물	옵션	선물	옵션
약정수량 (단위: 만 계약) (개인비중)	71.5 (12%)	-	325.2 (36.1%)	452.8	1,789.4 (50.9%)	3,231.1 (76%)	1,720 (50%)	7,936.7 (73.1%)
약정금액 (단위: 조원) (개인비중)	30.7 (11.5%)	-	103.6 (33.9%)	0.3	405.9 (50.4%)	2.2 (66%)	821.4	8.6

자료: 금융감독원

다. 선도거래

선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선도계약 자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각각 자산·부채로 계상하고, 이후의 결산일 또는 결제일에 다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다음 산출된 평가손익과 결제일 또는 환매, 전매도일, 청산일 등에 발생하는 선도거래손익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과세소득의 성격은 앞에서 논의한 스왑거래손익, 선물거래손익과 동일할 것이다.

다만 선도거래의 시가평가지 시가평가의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예를 들면 유가증권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시가평가하여 그 평가손익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만, 세법상으로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만을 과세소득에 반영하고, 유가증권 등에 대한 시가평가와 평가증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통화선도거래의 경우에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처리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시가평가에 따른 과세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주식, 채권, 이자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도거래에 대해 과세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전면적인 조세제도의 개편이 없이는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라. 옵션거래

옵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옵션계약 자체가 유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불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 상태에 있느냐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다음 최초 옵션계약시 수수한 옵션프리미엄에 대해 유동자산, 유

동부채로 계상하고 있던 장부가액과의 차액으로 계산하게 되는 옵션평가손익이 있다. 그리고 전매, 환매 또는 행사에 따른 옵션거래이익과 옵션이 미행사되어 소멸하는 경우 발생하는 옵션거래손익이 있다. 따라서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는 자산·부채의 평가차익과 옵션거래손익이나 이에 대한 과세소득의 성격은 앞에서 논의된 스왑거래손익, 선물거래손익과 동일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을 일상적인 영업의 결과로 생기는 경상손익과 투자의 결과로 얻어지는 자본손익으로 분류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본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든지, 조세이연 또는 면세를 허용한다. 그와는 반대로 경상이익을 상쇄하거나 다른 회계연도의 수익을 상쇄하기 위하여 자본손실을 사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경상손익과 자본손익에 대하여 과세상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경우 파생금융상품거래로 인한 소득이 자본이득인지 경상이익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초금융자산의 성격에 따라 모두 경상이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모두 자본이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헷지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경상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원칙적으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자본손익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은 지나치게 좁아 과세의 형평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이익을 충분히 조세로서 흡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³¹⁾ 경상손익과 자본손익에 대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거래가 투기거래인지 헷지거래인지의 여

31) 김완석, 『소득세법론』, (주)광교아카데미, 2000.

부에 따라 손익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투기거래와 헷지거래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구분하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본손익인지 경상손익인지의 구분 없이 모두 경상손익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방법의 논거로는 첫째, 위에서 설명한 대로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따라 얻은 소득”을 의미하는 자본이득과, “위험이 수반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수취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경상소득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³²⁾ 둘째, 적용이 간편하다는 점이다. 셋째, 법인세법상은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손익과 자본손익을 구별한다고 해도 구분의 실익이 없고, 새로운 과세소득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경상손익과 자본손익을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3. 결론

파생상품 관련 기업회계기준이 이제 겨우 시행초기에 있고, 아직 이에 대한 회계관행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므로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대해서는 만기일, 반대매매일, 청산일에 과세소득을 인식하는 결제기준을 적용하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일일정산제도에 의해 거래손익이 매일 인식될 뿐만 아니라 증거금의 인출이 가능하므로 평가손익에 대해 과세하더라도 미실현이익의 과세문제는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선도

32) 이성우, 『파생상품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 8) p.156에서 재인용(Scott Marc Kolbrenner(1995), *Derivatives Design and Taxation*)

거래 등 장외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를 수용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시가평가 및 그 평가손익의 인정여부는 현행 과세체계상 기초상품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배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생상품에 대해 공정가액에 의한 평가손익을 인정한다는 것은 미실현 보유이익에 대한 과세논란의 소지가 있는 등 이는 법인세과세체계의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세법은 평가의 임의성에 따른 소득조작 방지, 실현된 이익에만 과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종전의 과세소득의 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고수할 경우 과세이연을 통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고 기업회계와의 불일치에 따른 복잡한 세무조정을 요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할 경우 과세연도말 또는 계약종료시점에 시가로 손익을 측정하는 시가기준은 비대칭적 과세문제, 기간배분을 통한 세액조정부담의 문제, 매 과세연도말에 재계약을 통한 조세이연 및 회피의 문제 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가기준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객관적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미흡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의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액 평가와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옵션, 외환거래 등으로 한정하되, 스왑거래, 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파생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제8절 지주회사과세제도의 문제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I. 개 요

1999년 2월 5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개정에 의해 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사실상 지주회사의 설립을 신고주의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8조).

그러나 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경제적으로 사실상 동일체인데 현행 과세체계상 이들은 별개의 법인체로서 따로따로 과세를 받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이중과세되는 현행 조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역시 지주회사의 설립은 어렵게 되어 있는 셈이다.

이것을 위해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당수익을 익금불산입하는 규정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자본의 결합방식은 복잡한 주식소유를 통하여 지배종속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이들을 법적 형식논리에 따라서 개인 법인별로 과세하는 방법으로만 강제한다면 경제적 실질을 외면하는 과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세계적 추세이다.

II. 현행 세법상의 규정

1999년 12월 개정법인세법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80%(상장·등록법인의 경우 30%)를 기준하여 기준비율 초과시 90%를, 그 이하시 60%를 익금에 불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현재 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고(소득세법 17③) 그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소득세법 56①) 소위 임퓨테이션 형태의 세액공제체도를 택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단계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장치가 형식적으로는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경우나 기타법인은 계속 법인간 배당소득이 전부 익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하나의 경제활동에서 얻는 동일소득에 대하여 완전히 두 번 과세를 받는 이중과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이 용이하지 않고, 그 대상도 순수지주회사에게만 한정되고 사업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지주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여 지주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주회사의 과세관계는 단순히 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하나의 자회사와의 관계만이 아닌 지주회사와 자회사와

의 관계, 자회사들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Ⅲ. 지주회사 및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과세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

1. 미실현소득 과세의 문제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법적으로는 상호 독립된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법적 형식을 택하면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도 경제상 거래로 보아 각각 손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만일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에서 손익을 각각 인식한다면 이는 동일회사내 사업부간 재화의 이동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각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게 된다.

그리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거래에서 과생하는 이익 중 미실현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법적 형식에 따라 법인별로 과세하게 되면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2. 결손금 상쇄상 불이익의 문제

지주회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자회사간 흑자법인과 결손법인이 공존한다면 현행 법인세법상 이들은 법적 실체를 기준으로 각각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동일회사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동일경제주체로서 과세한다면 사업부문간 결손과 이

익을 바로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그룹 전체로 보면 그만큼 조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적 형식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을 따로 과세하게 되면 그만큼 조세부담이 증가되어 결국 법인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조세회피의 문제

지주회사와 자회사, 그리고 자회사들간에는 특수관계를 가지므로 만일 이들이 상호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거래가 제3자 가액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자회사간 거래에서 손익을 부당하게 이전시키는 그룹기업간 손익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4. 80% 지분율 기준의 임의성 문제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90%를 익금불산입하고, 지분율이 50% 이상 80%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60%를 익금불산입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70%에서 100% 익금불산입하고, 영국과 독일은 전액 익금불산입하며, 프랑스는 배당수익의 95%를 익금불산입하고, 일본은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그 외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80%를 익금불산입한다.

이처럼 나라별로 익금불산입하는 비율이 모두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50%와 80% 지분율 기준이 어디서 근거했는지 불분명하다. 만일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인정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의도라면 배

당수익에서 지분율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조정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다.

IV. 지주회사 및 지배종속관계 법인과세의 대안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의 필요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조세부담의 공평성 문제이다. 이것은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금액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념인데, 법인세의 경우 실질소득이 동일하면 동일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실질소득은 법적 개념이 아닌 경제적 개념인 바 법적으로는 독립주체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동일주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납세단위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세가 경영조직의 형태를 좌우하는 조세왜곡의 문제이다. 기업은 조직의 사업목적과 효율성을 위하여 개인, 조합, 법인, 집단법인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형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조세불이익으로 인하여 그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면 조세왜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세제의 중립성 유지가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조세의 선진화를 위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1917년에 이미 도입하여 법인세수의 80% 이상이 연결납세제도에 의해서 신고납부되고 영국(1967), 독일(1969), 프랑스(1988)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시행중이다. 일본도 2001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즉 오늘날 연결납세는 세계적 추세이며 이러한 각국의 도입은 모두 그 절박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손익의 이전 등 과세소득의 조작을 방지하여 세수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네 번째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독립된 실체라 하더라도 지분소유구조로 보아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이 있을 경우에 이들 기업집단을 단일한 경제적 실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형식적·법적 관념이 아닌 경제적 실체관에 입각하여 그 기업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과세소득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될 때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적 지배관계의 실질에 입각한 실질과세가 실현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조세회피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초과 누진세율을 채택하는 현 세율체계에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등이 종속회사의 소득을 통제가능한 기업집단 내에서 적당히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한 현재의 개별소득과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연결재무제표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연결회계제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연결납세를 실시하게 되면 기업집단 내의 소득과 손실이 상계된다는 분명한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연결납세를 한다면

진실되지 않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

가. 연결납세의 유형

연결납세의 유형은 크게 연결납세형과 개별손익대체형으로 분류된다.

우선 연결납세형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회사의 손익을 지배회사의 손익에 합산해 연결소득과 연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에 따라 다시 다음의 2개 방법으로 세분된다.

첫째는 모회사는 납세대리인이 될 뿐이고 각 개별회사가 자기에게 배분되는 연결납부세액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되는 방법이다.

둘째는 모회사가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되고, 기업집단 내부적으로만 연결납부세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개별 손익대체형은 기업집단 내에 속하는 어느 회사의 손익을 다른 회사의 손익으로 바꾸어 소득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자회사손익의 전부를 모회사에 모아 과세하고 자회사의 손익은 제로로 만드는 방법 등이다.

본인은 연결납세형의 첫번째 유형이 우리나라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주장의 근거는 첫째, 현실적으로 각국의 연결납세제에 있어서 단일법인 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는 예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나라가 세액을 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연결납세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상법 같은 실정법의 존재이다. 기업집단이라고 해도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존재이고 각각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률상의 합병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따라서 외부에 대한 자회사의 권리의무가 모회사의 권리의무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회사의 소수주주의 배당청구권이 모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개별손익대체형보다 더욱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연결납세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연결납세제도는 개개의 국가의 세제의 구조, 성격 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연결재무제표제도에서 볼 수 있는 세계적인 공통현상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 연결납세의 기본구조 및 방법

연결납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1) 제1 단계 : 연결납세 적용대상 결정

제일 먼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계회사 그룹(affiliated group)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회사가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의 일정 % 이상 소유할 것을 요한다(예를 들어 80% 이상 등).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연결납세가 불필요하거나 합당하지 못한 법인, 예컨대 비과세법인, 외국법인 등이나 연결납세제도를 이용하여 탈세 등의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 - 예컨대 적자기업을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 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관계회사그룹내 모든 회사가 연결납세에 동의해야만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일단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면 국제창장의 철회승인이 없는 한 계속해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제2단계 : 회계방법 조정

연결납세범위 기업 내의 개별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을 모두 통일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계속성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하고 개별기업의 과세연도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3) 제3단계 : 연결납세범위내 개별기업의 개별과세소득계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4) 제4단계 : 개별과세소득의 연결조정

개별과세소득을 연결납세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은 관계회사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인정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개별과세소득의 연결조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가 회사간 내부거래손익의 조정이고, 둘째가 회사간 배당금의 조정이다. 셋째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취득할 때 이미 종속회사에 발생하여 내재되어 있었던 손실을 공제하는 문제built-in deduction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연결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제5단계 : 조정된 개별과세소득의 합계 계산

연결납세대상 기업들의 연결조정된 개별과세소득을 합산한다. 이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한 개별기업이 있을 때 이 결손은 상계될 수 있다.

6) 제6단계 : 이월연결결손금공제

연결납세 대상기업 전체의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소급이월공제를 하여 주거나 향후 일정기간 이월공제시킬 수 있다. 이것은 개별단위에서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주는 논리를

연결납세단위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7) 제7단계 : 특정연결손금한도의 계산

일반적으로 개별과세차원에서 손금한도액을 계산할 때 그 기준 금액을 자본금이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연결납세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개별기업차원이 아닌 연결차원에 적용하여 연결손금의 한도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연결소득에서 공제한다. 이와 같은 특정연결손금한도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시부인계산 등이 있다.

8) 제8단계 : 연결소득공제

연결납세기 공제되는 소득공제는 연결조정항목 및 특정연결손금을 제외한 연결목적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이것은 입법시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9) 제9단계 : 연결과세소득 계산

조정된 개별과세소득의 합계에서 이월 연결결손금, 특정연결손금, 그리고 연결소득공제 등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10) 제10단계 : 연결납부세액의 산출

위에서 계산된 연결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1) 제11단계 : 연결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연결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산출된 연결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항목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투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있다.

12) 제12단계 : 개별 대상기업에 세액배분

연결납세라 하더라도 본인이 위에서 주장한 연결납세형 방식인 경우 납세의무는 법적 실체인 개별기업에 있으므로 납부할 연결 법인세액은 개별기업에 배분되어야 한다.

이때 배분방법으로는 소득기업 배분법과 전기업 배분법이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다시 개별기업에 귀속하는 연결과세소득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소득법, 개별기업의 개별신고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개별신고 세액법이 있다.

전기업 배분법은 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개별기업에게 환급하여 주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소득법이나 개별신고 세액법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13) 제13단계 : 개별기업의 납부할 법인세 산출

위에서 산출되어 배부된 금액을 고려하여 개별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최종산출한다.

다. 연결납세 도입의 주요논점

1)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범위문제

① 지분비율 : 연결납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범위는 대부분의 국가가 의결권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95%, 네덜란드는 100%, 영국은 75%, 독일은 50%, 영국은 75%, 미국은 초기에는 95%이나 현재는 80% 지분율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업집단세제는 구성회사의 주주이익분배액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일체성의 의미를 경영지배력만이 아니라 법적인 지분 청구권까지 생각한다면 100% 지분 지배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다. 또한 실제로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다. 한편 연결 재무제표 원리와 같이 경영지배라는 관점에서 보아 50% 이상의 지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독일의 기관제도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본인은 미국과 같이 80% 지분기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00%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어 연결납세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는 그 근간이 되는 지주회사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기관제도와 같이 50% 초과 기준을 취할 수도 있으나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이 어느 정도 요구된다는 점과 제도도입의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과 같이 80% 지분기준이 처음에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외국소재 자회사 포함문제 : 연결재무제표에는 국외 자회사도 연결대상회사에 포함된다. 이것은 재무제표의 이용자는 모회사의 재무제표는 물론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회사 및 이와 관련되는 자회사 및 관련회사의 경우 해외자회사라 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결납세는 포함이 되는 대상의 범위가 기업집단내 각 기업의 납부세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연결납세 범위문제가 보다 중요해진다. 법인에 대한 과세권은 당해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한도로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는 현지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과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소재 기업만 연결납세범위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제도의 계속적용요건 설정문제

연결납세제도에서 납세자의 예상가능한 조세회피방안은 연결납세를 계속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연결납세제도에 있어서 연결항목과 그 처리문제는 경영활동의 상황에 따라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한 경우가 반복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것인가 개별신고에 의할 것인가의 선택은 기업에 맡기는 것이 각국의 일반적인 예이고 이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 번 선택한 연결납세기준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업회계에 있어서의 계속성의 원칙과 마찬가지로이다. 왜냐하면 기업집단세제는 상황에 따라 적용의 유리과 불리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오차가 계속적용요건에 의해 방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납세자가 제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세전에 막을 수도 있다.

미국에 있어서의 연결취소 승인제도, 프랑스의 5년 이내 탈퇴시의 과세유예분의 소급과세, 네덜란드의 6년 이내 탈퇴시의 내부거래 이익과세, 독일의 5년 계약요건 등도 계속적용요건을 제도화한 입법례이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계속적용을 요건으로 하고 중도탈퇴시 개별신고로 의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결손금 상계에 대한 규제문제

연결기업의 소득과 결손의 상계는 연결납세제도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월결손을 가진 법인을 매수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항상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결납세제도 적용 이전의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개별기업기

준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게 하고, 제도적용 후에 발생한 결손금만 연결기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지분율이 낮은 자회사에 대해서 지분율 비율만큼만 결손상계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결납세신고 전에 자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정한 손실built-in loss은 연결 후 연결소득에서 공제제한을 받는다. 이는 이미 발생된 연결납세 전 손실을 연결회사의 소득과 상계하여 조세를 감소시킴으로써 연결납세제도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연결회사의 연결 전 이월결손금을 다른 연결회사의 이익과 상계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있어야 그러한 취지가 달성된다고 본다.

4) 사업연도와 회계방법 통일의 문제

사업연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연결납세형에서는 사업연도 전체 손익의 상쇄, 결손의 이월소급, 내부거래 손익이연 등이 주요쟁점이 되므로 각 기업의 사업연도를 통일하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연도는 대부분 1년이고 결산일은 12월말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회계방법의 통일과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사업형태에 따라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한 모회사 회계기준에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세법에서도 다양한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을 두고 있고 이들은 업종별, 자산별, 장소별로 다른 형태의 회계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집단 중에서는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 허용된 방법인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즉 연결납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자산별, 영업장별로 다른 회계방법이

적용되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5) 내부거래 손익의 제거문제

이월결손금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연결납세제도가 가지는 또 하나의 큰 동기는 연결대상회사간 내부거래 intercompany transactions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연결납세대상 기업내 거래의 경우에 같은 사업연도에 한 기업의 익금과 동시에 다른 기업의 손금이 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간의 자산이전거래에 의해 한 기업에 손익이 발생하고 다른 기업은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과세이연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경우 자회사가 연결납세제도로부터 탈퇴했을 때 그 손익이 매도자측과 매수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매도자측 손익이연방식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본인도 이 같은 방식이 '실현'이나 '확정'이라는 회계나 조세 고유의 논리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수자측에서 손익이연을 조정하는 방식보다 많은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자은, 「파생상품 등의 회계 및 세무」, 『삼일저널 가을호』, 1999.
- 김완석, 『법인세법론』, 광고아카데미, 2001.
- 김광윤, 「선물거래의 회계와 과세문제」, 『세무학연구』 제10호, 1997.
- 남상오, 「연결재무제표 - 개념과 작성범위」, 『경영사례연구』 제11권 제3호 추계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1997.
- 서기원·원재환·조동필, 『선물·옵션의 이론과 실제』, 유흥출판사, 2000.
- 송인만, 「결합재무제표 도입의 효과」, 『경영연구』 제32권 제1호,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1999.
- 송인만·김문철, 『고급재무회계』, 신영사, 2000.
- 송인만·고완석,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결합재무제표의 역할」, 『회계저널』 제8권 제1호, 1999.
- 신정식, 『현대회계감사』, 무역경영사, 1995.
- 신준용, 「자본시장 국제화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정립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3.
- 유배숙,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성우,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우택,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서울경제신문, 1999
- _____,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회계저널』, 한국회계학회, 1997.
- _____,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 『회계학연구』, 한국회계학회, 1997.
- _____, 「사회의 투명성과 회계의 발전을 위한 연구 - 회계의 accountability 기능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한국회계학회, 1999.
- _____, 「우리나라 조세입법의 비전문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1998.
- _____, 「우리나라 합병회계의 혼미와 해결방안」, 『한국조세연구』, 한국조세학회, 1996.
- _____, 「세무회계의 정립과 기업회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1998.
- 이창희,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문제」, 『조세학술논집』 제12집, 1996.
- 재무부, 「통화옵션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검토」, 재무부 세제조사과, 1993.
- 정영기,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대한 논리와 실무해설」, 『공인회계사』(2-5월호), 2000.
- _____, 「파생상품에 대한 해석 검토」, 한국회계연구원, 2000.
- 정종암·김지홍·박정우, 『중급회계』, 법문사, 2000.
- 조동성, 『한국재벌』, 매일경제신문사, 1997.
- 조성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0.
- 최완석,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와 조세처리에 관한 연구」, 파생상품브리프, 1997.
- 최창순, 『연결재무제표론』, 무역경영사, 1993.
- 최홍식·김성룡,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 한국공인회계사회·조세정책연구위원회,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 와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1997.
- 한국은행, 「파생금융상품의 이론과 실제」, 한국은행, 1996.
- _____,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환위험관리」, 한국은행, 1998.
- _____, 「파생금융상품 위험의 특성과 관리방안」, 한국은행, 1999.
- _____, 「신용파생상품시장의 최근 거래동향과 규제현황」, 한국은행, 2000.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파생금융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 한국은행, 1996.
- 홍기용, 「선물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제7호), 1996.
- 홍범교, 「파생금융상품과세」, 『재정포럼』, 1998.
- 홍종철,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국세법무월보』(제14호), 2000.
- 홍철근,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실태 및 과세문제검토」, 『월간조세』(6-8월호), 2000.

- A.A.A.,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A.A., 1996.
- _____, Committee Report: The Entity Concept, *Accounting Review*, April, 1996.
- _____, 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ccounting Research Bullitins No.51. AICPA, 1959.
- AICPA, *APB Opinion* NO.18, par. 4.
- Anson, M., *Accounting and Tax Rules for Derivatives*, Frank Fabozzi Associates, 1999.

-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1996-1997*, CCH Editions Limited, 1996.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f Independent Experts on Company Taxation*, 1992
- Fabozzi, ed., *The Use of Derivatives in Tax Planning*, Frank Fabozzi Associates, 1998.
-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33*, FASB, 1998.
- _____,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38 - an amendment of FASB No.133*, FASB, 2000.
- IASC,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IASC, 1998.
- _____, *Exposure Draft E66 -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IASC, 2000.
- OECD, *The Taxation of Global Trading of Financial Instruments: A Discussion Draft*, 1997.
- _____, *Taxation of New Financial Instruments*, 1994.
- 監査法人トーマツ, 「EU加盟國の税法」, 中央經濟社, 1996.
- 藤田昌久, 「連結納稅申告におけるエンティティ概念」, 『會計』, Vol.106, No.1, 1984.
- 木村弘之亮, 「ンツエルン税法に見る法人所得の歸屬 - 西獨の支配從屬會社課稅特典の法理-」, 『ヅユリヌト』, No.757, 1982.
- 洪田道代, 「持株會社と株主の地位」, 『持株會社の法的諸問

- 題』, 財團法人 資本市場研究會, 1996.
- 失内一好, 「連結納稅制度導入をめぐる諸問題」, 『JICPAツ
ヤ-ナル』, No.521, 1998.
- 財團法人 産業研究所, 「各國の法人稅制の國際比較に關す
る調査研究」, 監査法人ト-マツ, 1996.
- 井上久彌, 「連結納稅制度(企業集團稅制)の導入論點」, 『經
營財務』, No.2262, 1996.
- _____, 「オランダの連結納稅制度」, 『租稅研究』, No.499.
- _____, 『企業集團稅制の研究』, 中央經濟社, 1997.
- _____, 『連結納稅制度の研究』, 社團法人 日本租稅研究協
會, 1992.
- 中田信正, 『連結納稅申告書論』, 中央經濟社, 1978.
- 青山監査法人, プライスウオーターハウス編, 『總解説連結納
稅制度』, 日本經濟新聞社, 1998.

제4부

개인주주과세제도의 개선



제1절 기본방향의 모색	237
제2절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과세의 개선	239
제3절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개선	319
제4절 주식상장이익 증여의제의 폐지와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	344
제5절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	374
제6절 개인주주과세 개선의 결론	381

제1절 기본방향의 모색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인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 보유하는 과정 및 처분하는 과정으로 구분하여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식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의 과세 및 주식의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 등이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당해주식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주식의 보유와 관련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이 문제가 된다.

셋째,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문제가 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인주주의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문제점 및 쟁점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규정·금융재산상속공제규정 및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의제규정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주식의 평가방법,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주식의 보유와 관련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제도 및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배당소득을 포함한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제도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셋째,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외가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외는 세제를 왜곡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과세규정 등은 모두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외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동원된 용병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 및 쟁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 절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과세의 개선

I. 배당소득과세의 개선

1. 제도의 개요

개인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당해 개인주주의 종합소득을 구성하며, 따라서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특히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과 함께 자산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가.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이란 다음에 제기하는 소득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 다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은 제외된다.

-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③ 의제배당
-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나.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그 총수입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즉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필요경비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실제로 받은 배당금을 그로스업한 금액, 즉 배당금과 그 귀속법인세의 합계액을 당해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배당금의 15%(비실명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40%)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부부의 금융소득금액(분리과세금융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소득금액과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최저 10%에서 최고 4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그런데 금융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금융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 및 배당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원천징수세율(15%)

보다 낮은 세율(10%)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세액계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금융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종합과세방법)과 금융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분리과세방법) 중 그 세액이 많은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금융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종합과세방법과 분리과세방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는 비교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에 있어서 세액계산의 특례는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연종합과세금액 등이 있는 자의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장기이자소득을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및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1)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과 같거나 큰 경우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다음의 ① 또는 ② 중에서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 ① (기준초과금액 + 이자소득 등의 금액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 원천징수세율(15%)

② 이자소득 등의 금액 × 원천징수세율(15%) + (이자소득 등의 금액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
다음의 ① 또는 ② 중에서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① (당연종합과세금액 + 이자소득 등의 금액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이자소득 등의 금액 - 당연종합과세금액) × 원천징수세율(15%)

② 이자소득 등의 금액 × 원천징수세율(15%) + (이자소득 등의 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2) 당연종합과세금액 등이 있는 자의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다음의 ① 또는 ② 중에서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① (당연종합과세금액 + 이자소득 등의 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국외이자소득 등의 금액 × 원천징수세율(15%)

② 이자소득 등의 금액 × 원천징수세율(15%) + (이자소득 등의 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3) 장기이자소득을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소득

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이하에서 “장기이자소득”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① 및 ②의 합계액을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외한다)으로 보고 동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text{① } \{[(\text{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장기이자소득금액} / \text{보유연수}) + \text{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text{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times \text{보유연수}$$

위의 산식은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장기이자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다.

$$\text{② } (\text{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나) 위와 같은 세액의 산정방식은 장기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채택된 평균과세장치의 일종인 연분연승법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이 소득세법 제62조 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연분연승법의 적용대상인 이자소득 및 소득발생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분연승법의 적용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이자가 있는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장기채권(채권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외장기채권 이자소득분리과세 납부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의 (가) 및 (나)의 합계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

①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의 계산방법(소법^{所法} 62①)에 따라 계산한 세액

②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있는 자의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있는 자의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의 세액의 계산방법(소법 62②)에 따라 계산한 세액

(나)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30%

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장치로서 법인세 주주귀속법(imputation method³³⁾)을 채택하고 있다. 즉 개인이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배당금에 대한 귀속법

인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과 동시에 그 가산한 귀속법인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위의 세액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고 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³⁴⁾

$\begin{aligned} \text{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 &= \text{배당금} + \text{귀속법인세} \\ \text{종합소득결정세액}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 \text{귀속법인세(배당세액공제)} \end{aligned}$
--

(1) 요건

(가) 거주자 등의 배당소득금액

거주자 등의 종합소득금액에 특정한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소법 56①).

1) 거주자 등의 범위

거주자와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비거주자가 그 적용대상이다.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하는 경우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배당소득 공제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2) 특정한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한 배당소득이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받는 배

33) 배당금그로스업법이라고 한다.

34) 배당소득금액과 같은 금액이다.

7)

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당연종합과세배당소득을 가리킨다.

특정한 배당소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배당소득을 가리키는데, 이를 그로스업gross-up대상 배당소득, 또는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이라고 부른다.

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일 것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한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부담한 법인세가 외국정부에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이중과세의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②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는 의미이고 실제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만이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을 배당재원으로 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또는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재평가세의 세율이 1%인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기는 하나 대부분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함으로써 당해토지의 처분시까지의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가 일반

적일 것이므로 배당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가액

㉡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의 세율이 1%인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일정한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지분에 상당하는 무상주식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의 가액

㉣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일정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 중 다음에 계기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는 법인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의 초과액 또는 당연종합과세배당소득일 것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융소득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의 초과액 또는 당연종합과세 배당소득에 한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에 한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분리과세배당소득(예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비실명 배당소득 등)의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여

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② 당연종합과세배당소득이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제배당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제배당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인 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나) 세액공제신청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소법 56⑤, 소령所令 116). 위의 세액공제신청이 배당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적 요건인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법문의 표현에 비추어 보아 주의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새긴다. 행정해석도 같은 견해에 서 있다(소통所通 56-1).

한편 법인세부담률에 따라 산정한 귀속법인세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외에 법인세부담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세액공제액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함과 아울러 배당세액공제액으로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귀속법인세는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할 항목이면서 동시에 세액공제항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가) 총수입금액의 계산특례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받을 배당금 또는 의제배당액을 그로스업gross-up한 금액, 즉 배당금 또는 의제배당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총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이란 법인세율을 16%로 의제하여 산정한 귀속법인세를 말한다.

법인세율을 16%로 의제하여 귀속법인세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배당금 또는 의제배당액에 19%를 곱하여야 한다.

(나) 공제범위액의 계산

1) 공제액의 계산

가) 배당세액공제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귀속법인세이다. 법인세율을 16%로 의제하여 산정한 귀속법인세를 가리킨다.

나) 공제한도액

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 중 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소법 56③).

$$\text{공제한도액}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배당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위의 산식 중 배당소득금액은 그로스업한 배당소득금액을 가리

킨다. 즉 배당금 등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한도액 안의 배당세액공제액(귀속법인세)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에 있어서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환급을 배제하여 놓고 있다. 즉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게 하고 있다(소법 60②).

2. 문제점

가. 광범위한 비과세와 분리과세의 허용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분리과세·세액의 면제와 같은 광범위한 조세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조세의 형평이 깨어짐은 물론이고 세수의 감소와 세제의 복잡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분리과세·비과세 및 세액의 면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분리과세배당소득

(가) 소득세법상의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은 당연분리과세배당소득과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분리과세금융소득으로 구분한다.

1) 당연분리과세배당소득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되지 아니하여 40%

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비실명 배당 소득을 말한다.

2)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금융소득금액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소득금액 중 비과세소득 및 당연분리과세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로스업하지 않은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다)이 4,000만원(이를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하는데, 이하에서는 단순히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로 한다) 이하인 경우에 당해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소법 14③Ⅳ).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및 국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이하에서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라 한다)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소득금액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분리과세배당소득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소득 다음에 제기하는 소득을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되 분리과세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③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

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

5)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5%로 하고, 이를 분리과세한다.

6)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5%로 하고, 이를 분리과세한다.

7)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일정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거주자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 중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당해법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로 하며, 분리과세한다.

(2) 비과세소득

거주자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다음에 계기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하에서 “유가증권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 ②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3) 면제소득

(가)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일정한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나)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일정한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4) 원천징수의 특례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로 한다.

①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공제·보험·증권저축 및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할 것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4,000만원(20세 미만인 자는 1,500만원, 노인 및 장애인은 6,000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이자 등의 공제 배제

현행법상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배당금(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로스업한 금액을 말한다)과 같은 총수입금액을 바로 배당소득금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소법 17②).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차용

한 차입금을 투자재원으로 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주식에 대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당해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비용을 공제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의 필요경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⁸⁾

첫째, 소득과세의 기본원칙인 순소득과세의 원칙Nettoprinzip에 위배된다. 이로 인하여 담세력이 아닌 허구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결과로 되어 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둘째, 다른 소득에 대하여는 모두 필요경비의 공제를 허용하면서도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만 필요경비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즉 당해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다. 제한적인 종합과세와 세액계산의 특례

현행 소득세법은 부부의 금융소득금액(당연분리과세금융소득을 제외한다)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즉 부부의 금융소득금액이 연 4,000만원(종합과세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 당해 소득금액은 분리과세로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종합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당환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음으로 부부의 금융소득금액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여 당

8) 김완석, 『소득세법론』, (주)광교아카데미, 2000, p.228.

해 금융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금융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 및 배당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분리과세시의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세액계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금융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종합과세방법과 금융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분리과세방법 중 그 세액이 많은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교과세제도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적인 종합과세와 세액계산의 특례제도(비교과세제도)는 일반적인 종합과세방법과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영세한 금융소득만이 있는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되어 소득의 역진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둘째, 응능부담의 원칙을 저해하며, 최저생활비에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소득과세의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최저생활비 면세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셋째, 소득세법을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납세절차를 번거롭게 한다.

라. 이중과세 조정장치의 문제점

첫째, 재평가세의 세율이 1%인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재평가세의 세율이 1%인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는 법인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함으로써 당해토지의 처분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위의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는 단순히 과세시기가 토지의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가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가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느 경우이든 법인세가 과세되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이중과세의 조정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분리과세배당소득도 종합과세하는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와 소득세와의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배당세액공제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3. 개선방안

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의 채택

비실명금융소득을 제외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하여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되, 다만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분리

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만한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분리과세 및 세액의 면제조치를 모두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특례규정을 폐지하고 영세한 금융소득자가 납부한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1) 모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비실명금융소득을 제외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하여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개선한다. 그리고 방만하게 허용하고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분리과세 및 세액의 면제와 같은 각종 조세우대조치를 모두 폐지하여야 한다.

(2) 소액금융소득자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의 허용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예외로서 소액금융소득자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순응비용의 절감 등을 고려하여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당해 금융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현재 15%로 되어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로 인하하여야 한다. 즉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의 최저세율과 일치시켜 10%로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세액계산 특례규정의 폐지

금융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특례규정은 무척 난해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폐지하고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세한 금융소득자가 금융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전액 환급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나. 금융실명제의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금융실명제를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3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 긴급명령 제 16호 : 이하에서 “긴급명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이 긴급명령은 1997년 12월 31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 이하에서 “금융실명법”이라 부른다)에 의하여 대체되었다.⁹⁾

9) 최명근, 『세무학의 이해』, 세학사, 2000, p.237.

그러나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에 대한 실명확인인 정도에 관하여 금융자산의 명의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과 같은 실명인지 여부의 확인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금융자산의 명의자가 당해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의 여부까지 조사·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¹⁰⁾ 그리고 거래자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금융실명법 7).

다음으로 거래자가 본인의 명의가 아니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즉 차명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와 같은 금융거래자(예금자 등)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의문시되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차명거래를 한 당사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차명거래로 밝혀진 금융자산 중 일정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¹¹⁾

다.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로서의 공제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보

10)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판결

1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리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명의수탁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리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로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행강제금(10%와 20%)을 부과한다.

유하고 있다면 그 이자비용을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인정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에 공제할 이자비용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일본에서는 엄격한 개별적 대응에 따라 차입금의 이자를 제한하지 않고 당해연도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입금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다고 하는 총체계산주의적인 취급을 하고 있다.¹²⁾

라. 배당세액공제대상의 확대

(1) 배당세액공제의 수준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장치로서 법인세 세율을 16%로 의제하여 귀속법인세를 산정하는 불완전한 법인세 주주귀속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현행의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전액을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액의 일부분만을 조정하여 주는 것이다.

1998년부터 법인단계에서 부과한 법인세의 전액을 주주단계의 소득세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¹³⁾ 2000년부터 다시 법인세의 세율을 실제 법인세의 부담률과는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6%로 의제하여 귀속법인세를 산정하여 조정하도록 환원되기에 이르렀다.¹⁴⁾

12) 田中治, 利子・配當課税のあり方, 21世紀を支える税制の論理(第2卷所得税の理論と課題), 株式會社稅務經理協會, 1996, pp.140-141.

13) 배당세액공제액은 법인세율을 16%로 의제하여 산정한 귀속법인세와 실제의 법인세부담률에 의하여 산정한 귀속법인세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한다.

14) 그 이유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를 받는 소액투자자의 소득세의 부담률이

이와 같은 배당세액공제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현행 배당세액공제의 수준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종전의 완전한 법인세 주주귀속법을 채택하고 있던 영국은 1999년 4월 6일부터 배당세액공제율을 배당금의 9분의 1로 인하였다.¹⁵⁾ 그리고 독일도 종전의 완전한 법인세 주주귀속법을 2001년 1월 1일부터 반액법Halbeinkunfteverfahren으로 대체할 예정이다.¹⁶⁾

(2) 배당세액공제대상소득의 확대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인이 가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다시 법인세 납부 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이중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것이다. 이와 같은 배당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평가적립금(1%의 재평가세율을 적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배당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당연분

종합과세를 받는 대주주의 소득세 부담률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율을 인하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15) M. Cetinkaya et al, *European Tax Handbook*, IBFD Publications BV, 1999, p.391.

16) Tax Notes International, 24 January 2000, p.361 : Tax Notes International, 14 February 2000, p.712 : <http://www.steuerthek.de/news/2000/bmf/20000329.htm>

리과세배당소득 외의 모든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된다.

II.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개선

1. 의제배당의 의의

회사가 주주 등에게 배당의 형태로 현금 또는 주식을 지급 또는 교부하지 않았지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하면서 당해주주 등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면 배당 및 분배금 등과의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게 된다.¹⁷⁾ 따라서 회사로부터 지급 또는 교부받은 현금배당 또는 주식배당 등을 제외하고 주주 등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부른다.

의제배당은 금전, 기타재산의 취득여부에 따라 금전 기타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의제하는 경우와 금전, 기타재산의 취득

17)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범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라고 같은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

없이 배당으로 의제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금전, 기타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및 법인의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그리고 금전, 기타재산의 취득 없이 배당으로 의제하는 경우로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을 들 수 있다.

금전, 기타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당해 의제배당액이 과세소득을 구성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금전, 기타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그 의제배당액 안에는 배당소득인 것과 양도소득인 것이 혼재되어 있는데도 그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침해하고 조세회피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전, 기타재산의 취득 없이 배당으로 의제하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무상주)의 취득에 관하여는 당해 무상주의 가액이 과세소득을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무상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의 의제배당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그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제도의 개요

가. 금전, 기타재산의 취득이 수반되는 의제배당

(1) 주식의 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begin{aligned} \text{의제배당액} &= \text{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 &\quad - \text{당해주식 등의 취득가액} \end{aligned}$$

(가)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주식의 소각 등에 따라 금전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받은 금액에 의한다. 그러나 금전 외의 기타재산(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당해주식 등의 취득가액

소각한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주주 등이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배당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문제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이 당해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배당액 = 잔여재산의 분배액 -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위의 산식에서 잔여재산의 분배액이란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금전 외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해산한 법인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주식의 소각 등의 경우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3) 법인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재산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배당액 = 합병대가의 합계액 - 소멸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

합병대가의 합계액이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위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을, 그리고 금전, 기타 재산가액은 합병교부금을 말한다. 합병교부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합병비율의 조정·단주의 처리·실질적 감사 및 피합병법인의 이익배당 등이다. 이 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익배당에 갈음하기 위한 합병교부금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금전배당에 해당하며, 합병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합병대가의 합계액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과 합병법인이 납부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법칙 7).¹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취득하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있어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은 그 주식 등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8)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과 합병법인이 납부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한다(법법法 80).

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그러나 비적격합병에 있어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은 그 주식 등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취득하는 재산이 주식 등 외의 기타자산인 경우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 등이 주식 등 외의 기타자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기타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4) 법인의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배당액 = 분할대가의 합계액 - 분할법인 등의 주식 취득가액 등

분할대가의 합계액이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그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위에서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분할교부주식의 가액을, 그리고 금전, 기타재산의 합계액은 분할교부금을 말한다.

다음에 분할대가의 합계액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 등(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과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납부한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법칙 7).¹⁹⁾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취득하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에 있어서 분할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은 그 주식 등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그러나 비적격분할에 있어서 분할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은 그 주식 등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취득하는 재산이 주식 등 외의 기타자산인 경우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 등이 주식 등 외의 기타자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기타자산은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여 계산

19)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과 합병법인이 납부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한다(법법法 80).

한다.

나. 금전, 기타재산의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의제배당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가) 의제배당의 요건

법인이 일정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그 주주인 법인에게 주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그 무상주의 가액을 배당으로 의제한다.

자본전입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잉여금이란 법정준비금을 가리킨다.²⁰⁾ 그러므로 이익잉여금에 있어서는 이익준비금·기업합리화적립금·기업발전적립금 등과 같은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때에 의제배당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 모두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잉여금의 경우에는 당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납입한 자본 또는 그와 다를 바 없는 잉여금의 단순한 자본금으로의 대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다음에 제기하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의 가액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20)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1998, p.747 : 정동윤, 『회사법』 제5판, 법문사, 1999, p.617 : 이태로·이철송, 『회사법강의』 제7판, 박영사, 1999, p.721.

1)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

① 주식발행초과금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로서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②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이하에서 “자기주식소각이익”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③ 합병차익

합병차익이란 회사합병에 있어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합병차익이라 하더라도 합병평가차익 등의 자본전입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의제한다.

합병평가차익 등은 당해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산정방법을 달리한다.

㉔ 적격합병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에 있어서의 합병평가차익 등은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다음에 계기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합병평가차익, 자본잉여금(자본전입이 의제배당을 구성하는 자본잉여금에 한한다) 및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그리고 합병차익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순서대로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한다.

i) 합병평가차익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대로 승계하게 되면 합병평가차익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ii) 합병감자차익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위에서 합병대가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iii) 자본잉여금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자본에의 전입이 의제배당을 구성하는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 즉 자본에의 전입이 의제배당을 구성하지 않는 자본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시 부연한다면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경우에는 그 자본잉여금을 의제배당을 구성하지 않는 자본잉여금, 의제배당을 구성하는 자본잉여금의 순서대로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iv) 이익잉여금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㉒ 비적격합병의 경우

합병 중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합병에 있어서의 합병평가차익 등은 합병평가차익에 의하여만 산정한다.

합병평가차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비적격합병에 있어서 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액의 산정시에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²¹⁾로 평가하였으므로 중복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²²⁾만큼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④ 분할차익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분할평가차익 등의 자본전입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의제한다.

21) 적격합병에 해당하였다면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액을 산정하였을 것이다.

22)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순자산가액(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승계한 순자산가액(장부가액)은 승계한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분할평가차익 등은 당해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산정방법을 달리한다.

㉠ 적격분할의 경우²³⁾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서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 포함되는 분할교부주식 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적격분할에 있어서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분할차익에 달할 때까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분할평가차익·자본잉여금(자본에의 전입이 의제배당을 구성하는 자본잉여금에 한한다) 및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분할차익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분할감자차익·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순서대로 순차로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한다.

㉡ 비적격분할의 경우²⁴⁾

비적격분할에 있어서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분할평가차익에 의하여만 산정한다. 이때에 분할평가차익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는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비적격분할에 있어서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액의 산정시에 분할대가에 포함되는 분할교부주식의 가

23) 분할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이다.

24) 분할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이다.

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였으므로 중복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분할평가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토지²⁵⁾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에서 “재평가세의 세율이 1%인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이라 한다)은 제외된다.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는 재평가세의 세율이 1%인 토지의 재평가적립금과 기타 재평가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나) 의제배당액의 계산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하는 금액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한다.

25) 토지 외의 재평가자산의 재평가차액과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의 당해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하며, 재평가세의 세율은 3%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에 당해토지는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되, 재평가세의 세율은 1%를 적용한다.

의제배당액 =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

그런데 의제배당을 구성하지 않는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는 종국적으로 법인세의 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세를 당해주식의 처분일·소각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 이연할 뿐이다. 즉 자본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시에 일단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무상주는 뒤에 주식이 소각 또는 양도되거나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하는 시점에 의제배당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세의 이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²⁶⁾

왜냐하면 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을 구성하지 않는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잉여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단기소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으로 하여 의제배당 또는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때문이다(소령 27②, 법령 14②).

$$1\text{주당 장부가액} = \frac{\text{구주식 } 1\text{주당 장부가액}}{1 + \text{구주식 } 1\text{주당 신주배정수}}$$

26)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를 소각한 경우라면 주식소각의 대가에서 무상주의 취득에 따라 수정한 1주당 장부가액(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등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단기소각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소각의 대가가 그대로 의제배당액을 이루게 된다.

(2) 자기주식몫의 무상주의 배정에 따른 의제배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공익권(의결권·소수주주권 및 소제기권)은 물론이고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및 신주인수권과 같은 자익권도 휴지한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²⁷⁾ 즉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신주를 무상교부하는 경우에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무상주)을 교부할 수 없으며, 자기주식몫의 주식은 다른 주주들에게 비례적으로 귀속한다고 새긴다. 그런데 법인이 의제배당을 구성하지 않는 자본준비금 등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못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위에서 의제배당을 구성하지 않는 자본준비금 등이란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은 제외한다)·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등은 제외한다)·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 등은 제외한다)과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의 세율이 100분의 1인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의제배당액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 중 의제배당을 구성하지 않는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다른 주주 등이 추가로 배정받은 법인의 자기주식몫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다.

의제배당액 = 배정받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27) 이태로·이철송, 전게서, p.316 : 정동윤, 전게서, p.249.

3.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1) 주식의 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액의 소득구분과 그 문제점

(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혼재

주식의 소각 등이나 법인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의제 배당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부분과 양도소득인 부분이 혼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은 이들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확일적으로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주식의 소각 등에 있어서의 의제배당액의 소득의 성격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주식의 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액은 주식의 소각 등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서 당해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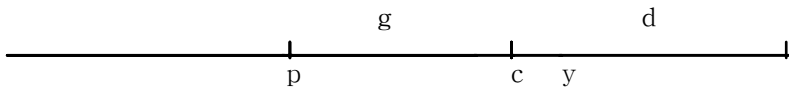
즉 주식의 소각 등에 따라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서 당해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의제배당액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의 소각 등에 따라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은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주식의 보유기간중 가치의 증가액 및 당해주식에 있어서의 유보이익 상당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식의 소각 등에 따라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 중 주식의 보유기간중 가치의 증가액은 양도소득을 구성하며, 당해주식에 있어서의 유보이익 상당액만이 배당소득을 구성한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²⁸⁾

28) 채수열, 『의제배당과세론』, 『세무학연구』 제14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1999, p.405 ; 河野惟隆, 法人稅·所得稅の研究, 株式會社稅務經理協會, 1995,

그렇다면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액 안에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의제배당)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의제양도소득)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 산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y 주식의 소각 등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
- c 자본(자본금과 자본잉여금)
- p 주식 등의 취득가액
- d 의제배당
- g 의제양도소득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액은 y 에서 p 를 차감한 금액인데, 그 차액은 의제배당의 성격을 갖는 것(d)과 의제양도소득의 성격을 갖는 것(g)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액($y-p$) 중 배당소득을 구성하는 부분은 주식의 소각 등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서 당해법인의 자본을 차감한 금액($y-c$)이다. 왜냐하면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²⁹⁾

그리고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

p.253 : 大山孝夫, 所得稅の計算と理論, 稅務硏究會, 1992, p.26.

29) 배당소득이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말하는데, 이곳에서의 이익 또는 잉여금이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을 가리킨다고 새긴다.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자본액, 그 결산 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 및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배당의 재원을 이루는 것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인 것이다.

금 및 자본잉여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c-p)은 그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주식의 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액의 배당소득 성격과 양도소득 성격의 혼재현상은 법인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액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 등은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주식의 보유기간중 가치의 증가액 및 당해주식에 있어서의 유보이익 상당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해산 등에 따라 주주가 취득하는 대가 중 주식의 보유기간중 가치의 증가액은 양도소득을 구성하며, 당해주식에 있어서의 유보이익 상당액만이 배당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다.

(나) 현행 의제배당과세의 문제점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액 안에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 의제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 의제양도소득이 혼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은 이들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과세의 형평을 침해하고 과세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왜곡현상은 주로 소득세에서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득세에서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과세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계산·과세방법·원천징수의무의 유무 등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종합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

여 각각 과세하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제외의 범위·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액의 계산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특히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 외의 자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배당소득(의제배당을 포함한다)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의제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부분까지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과세의 불공평 및 왜곡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보다 그 부담이 가볍다면 동일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전에 주식을 처분하여 배당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세의 회피를 도모하게 된다.

둘째, 배당소득의 소득자인 주주가 개인인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으로 전환시킨 경우에 당해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2) 개선방안

의제배당액을 당해소득의 성격에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주식의 소각 등에 따라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 중 주식의 보유기간중 가치의 증가액은 양도소득으로, 당해주식에 있어서의 유보이익 상당액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주주가 자본의 감소 등에 따라 교부받은 금

전, 기타자산의 가액(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주식 등에 관계있는 양도소득금액 등의 수입금액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다(조법措法 37의 10④). 즉 주주가 자본의 감소 등에 따라 교부받는 금전, 기타자산의 가액이라 할지라도 자본의 감소 등에 따라 교부받는 금전, 기타자산의 가액에서 당해법인의 자본 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당해법인의 자본 등의 금액에서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과세소득성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과세소득성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과세소득성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상당한 논란이 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가)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미국에서는 1913년에 연방소득세가 항구적 조세로서 자리잡은 이래 주식배당의 과세소득성을 둘러싸고 다툼이 계속되어 왔는데, 1920년 *Eisner v. Macomber* 사건에 관한 판결이 있는 이래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겠다.

Eisner v. Macomber 사건³⁰⁾은 주식배당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1916년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인데, 연방대법원은 주식배당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국세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연방대법원은 실현주의의 원칙realization principle을 근거로 하여 실현된 이득만이 과세소득을 구성할 뿐이고, 단순한 투하자본 가치의 증가는 과세소득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보통주만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가 행한 보통주에 의한 주식배당은 투하자본의 가치의 증가에 불과하고 실현된 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주식배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내국세법은 수정헌법 제16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Eisner v. Macomber 판결에서 주식배당을 미실현이득으로 본 논거는 다음과 같다.³¹⁾

첫째, 주식배당의 전후를 통하여 회사재산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율적 이익proportionate interest에도 변화가 없다.

둘째, 주식배당은 유보이익을 자본화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배당불가능한 자본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식배당은 주주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주 이익의 실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 주주는 주식배당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어떤 재산도 수취하는 것이 아니며, 주주의 최초 투자 및 그 후에 있어서의 당해 투자가치의 증가액은 모두 회사 안에 그대로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방의회는 1921년 내국

30) Eisner v. Macomber, 252 U.S. 189(1920)

31) Boris I. Bittker & Lawrence Lokken, *Federal Taxation of Income, Estates and Gifts* Volume 1, Warren, Gorham & Lamont, 1999, pp.1-22~1-26.

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모든 주식배당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isner v. Macomber 판결은 현행 내국세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주식배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세하되, 다만 일정한 주식배당에 한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주식배당 중 예외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예외적인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IRC 305(b)).

① 금전에 갈음한 주식배당

금전배당 또는 주식배당의 선택권이 주주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주가 선택하여 받는 주식배당은 과세소득을 구성한다.

② 비비례적 배당

일부 주주에게는 금전배당을, 그리고 다른 일부 주주에게는 주식배당을 행함으로써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의 비율적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와 같은 비비례적 배당disproportionate interest에 있어서 주식배당은 과세소득을 구성한다.

③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

보통주주에게 우선주를 배당하거나 우선주주에게 보통주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배당은 과세소득을 구성한다.

④ 우선주에 대한 주식배당

우선주에 대한 주식배당은 과세소득을 구성한다. 다만, 전환권의 희석화를 가져오는 주식배당·주식분할 등을 고려하여 전환우

선주에 대하여 행하는 주식배당은 제외한다.

⑤ 전환우선주의 배당

전환우선주의 배당은 주주가 비비례적 배당이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소득을 구성한다. 전환우선주의 배당이 비비례적 배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환권의 행사기간과 배당률·상환조항 및 시장성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독일

독일은 1959. 12. 23에 공포한 「회사재산에 의한 자본증가 및 손익계산서에 관한 법률」에서 임의준비금 및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자본증가는 자본구성의 수정으로서 이에 따라 발행한 신주는 주식의 분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1959. 12. 30에 공포한 「회사재산에 의한 명의자본의 증가 및 피용자에 대한 자기주식의 양여에 관한 세법상의 조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steuerrechtliche Maßnahmen bei Erhöhung des Nennkapitals aus Gesellschaftsmitteln und bei Überlassung von eigenen Aktien an Arbeitnehmer」 제1조에서는 주식배당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1조에서는 자본회사(주식회사·주식합자회사·유한회사)가 회사재산에 의한 증자, 요컨대 임의준비금 및 일정범위 내의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명의자본의 증가에 있어서 새로운 지분권의 취득은 소득 및 수익에 관한 조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³²⁾ 이 경우에 당해주식의 1주당 취

32) 동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지분소유자의 소득 및 수익에 관한 조세)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의미에서의 자본회사가 명의자본의 준비금의 변경에 의하여 그 명의자본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지분소유자의 새로운 지분

득가액은 구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구주식 및 신주식(임의 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합한 주식수로 나누어 재계산한다.

3) 일 본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주식의 소각·퇴사 또는 탈퇴·법인의 해산 및 합병에 의하여 주주 등이 받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이 그 법인의 자본 등의 금액(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자본적립금액의 합계액) 중 그 교부의 대상이 된 주식 또는 출자에 관계있는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액은 이익의 배당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에 주주가 자본의 감소 등에 따라 교부받은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주식 등에 관계있는 양도소득금액 등의 수입금액으로 의제한다(조법 37의 10④).

다음으로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으로 주식을 소각하거나 이익적립금액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 그 소각한 주식에 대응하는 자본의 금액이나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이익적립금액 중 당해법인의 주주 등이 갖는 주식 또는 출자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익의 배당으로 의제한다(소득세법 25②, 법인세법 24②).

(나) 의제배당의 과세소득성과 그 개선방안

법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권의 가치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의 의미에 있어서의 수입의 일부를 이루지 않는다(Ludwig Schmidt, Einkommensteuergesetz 18. Aufl.,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99, S.30).

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 상법은 현금배당뿐만 아니라 주식배당을 허용하고 있는데,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서가 아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을 구성한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의 가액이 과세소득을 구성하는지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 과세소득을 구성한다는 견해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과세소득을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회사가 당해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다시 동액의 자본금의 납입을 받는 것³³⁾과 경제상의 효과를 같이하기 때문에 주주가 받는 무상주의 취득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³⁴⁾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손익거래에서 생긴 이익이므로 법인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고 동시에 주주의 납입자본을 초과하여 생긴 이익이기 때문에 당해주주에 있어서도 과세소득을 이루는 것이다.

둘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의 가액은 미실현이득에 해당하지만 미실현이득도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소득인 것이고, 입법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

33) 이단계설 또는 양행위설이라고 부른다(田中章介, 判例と租稅法律主義(株)中央經濟社, 1994, p.163).

34) 吉川弘人, 미나시配當課稅論, 所得稅の理論と實際, 稅務經理協會, 1996, p.207 : 註解所得稅法研究會編, 註解所得稅法, 財團法人大藏財務協會, 1997, p.261.

의 의제배당과세는 포괄적 소득개념에 근거한 미실현이득 과세의 전형을 이루는 것이다.³⁵⁾

셋째, 배당소득을 자본이득으로 전환함으로써 과세를 이연하거나 조세부담의 경감·회피를 기도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규정을 둔 것이라고 한다. 주식가치의 증가익(미실현 자본이득)은 당해주식이 양도되기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더욱이 상속·증여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 무한히 이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부담의 경감·회피 또는 과세의 이연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유인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주식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제외와 저율과세 등³⁶⁾은 자본이득으로의 전환을 더욱 유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환대처규정 anti-conversion provision으로서 법인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³⁷⁾

넷째,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자본충실의 원칙상 그 전입으로 인하여 증가된 만큼 회사재산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회사재산의 사내유보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익준비금을 비롯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때에는 자본금이 증액되어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함으로

35) 金子宏, 租税法における所得概念の構成(三・完), 法學協會雜誌 92卷9號, 1975, p.76.

36)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대주주를 제외한다)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제외, 비상장법인 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저율과세(10% 또는 20%)를 말한다.

37) 金子宏, 所得概念の研究, 株式會社有斐閣, 1995, p.236 : 江頭憲治郎, みなし配當, 租税判例百選(第三版) 別冊 ジュリスト No.120, 有斐閣, 1992, p.49.

써 회사재산의 사내유보가 증가되는 것이므로 잉여금의 자본전입 시에는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³⁸⁾

2)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교부는 그 본질이 주식 분할share split-up이거나 주식분할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법인의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단순히 법정준비금과 자본금 사이의 계수상의 이체가 있을 뿐이고 법인의 실제재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리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그가 가진 총주식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³⁹⁾

38)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행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1. 9. 10 선고 91다 10565 판결참조), 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자본충실의 원칙상 그 전입으로 인하여 증가된 만큼 회사재산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회사재산의 사내 유보가 가능하게 될 뿐더러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때에는 다시 일정한도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되고,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도 자본액이 증가됨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증가되어 그에 상응한 회사재산의 사내유보는 가능하게 되므로 잉여금의 자본전입시에는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39) 竹内昭夫, 利益積立金の資本組入れとみなし配當課税の當否(上), 商事法務 1258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도 주식배당과 잉여금(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 및 출자의 취득을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기회기企會基 61).

둘째,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주의 보유주식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당해주식의 가치증가분은 미실현이득에 불과하여 과세소득으로 보기에 부적합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⁴⁰⁾ 즉 과세소득은 이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이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무상주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미국 또는 독일 등에서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을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3) 결 어

의제배당과세의 기본적인 목적(표적)은 과세상 유리한 취급을 받을 양도소득에의 전환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회를 포착하여 유보이익에 과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회적인 의제배당과세가 아니고 실현시의 양도차익과세에 철저를 기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⁴¹⁾

그러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현

號, 1991, p.49 : 渡辺徹也, みなし配當課税と租税回避, 稅法學 第536號, 日本稅法學會, p.77.

40) 田中章介, 利益準備金の資本組入れに係る配當課税の當否, 稅務弘報 39卷4號, 1991. 4, p.142 : 岸田雅雄, 自己株式取得規制緩和と證券取引法・租稅法, ジュリスト1092號, 1993, p.27 : 澁谷雅弘, 自己株式の取得と配當課税, 租稅法と企業法制(租稅法研究 第25號), 株式會社有斐閣, 1997, p.19.

41) 田中治, 利子配當課税のあり方, 21世紀を支える稅制の論理(第2卷 所得稅の理論と課税), 株式會社稅務經理協會, 1996, pp.143-144.

행법령 아래에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까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의 취득가액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소득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과세소득을 구성한다고 새긴다.

그 논거는 과세소득을 구성한다는 견해에서의 논거와 그 내용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다만, 이와 같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과세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우대조치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만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에 과세소득으로 포착하여 과세할 것이 아니라 당해주식의 처분시에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익적립금의 자본전입을 법인으로부터의 이익배당으로 간주하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의 보장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⁴²⁾

42) 最高裁判所 昭和57. 12. 21, 昭和56年(行ツ) 167號, 訟務月報 29卷8號, p.1632.

나)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헌법상 자본잉여금으로서 감사차익 중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 등·분할차익 중 분할평가차익 등·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과 그 밖의 기타 자본잉여금)과 재평가세의 세율이 1%인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이하에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기주식소각익 등”이라 한다)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이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기주식소각익 등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과세소득을 구성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과세소득을 구성한다는 견해와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컨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기주식소각익 등(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부분과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과세소득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찬성한다. 따라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기주식소각익 등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 17조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새긴다.

첫째, 자본잉여금은 그 실질이 주주의 납입자본이므로 당해주주의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교부하더라도 주주의 납입자본을 초과하여 부여된 이익이 아니므로 당해주주에게 새로운 담세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잉여금은 이익의 유보액으로 이루어지는 이익잉여금⁴³⁾ 외

에 주식의 납입·주금의 환급 또는 자본의 수정 등과 같은 자본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인데, 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paid-in capital)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자본잉여금은 주주에 의하여 납입된 자본으로서 기업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자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주주가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의 발행시에 주금액을 납입하고 인수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주가 사실상 납입한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도 당해주주의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은 단순히 회사의 자본준비금계정상의 금액을 자본금계정으로 계정이체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셋째,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란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말하는데(소법 17① I), 위에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가리킨다고 새겨야 한다. 의제배당 또한 배당소득의 일종이므로 그 재원은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⁴³⁾이어야 한다.⁴⁵⁾ 그러므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자본잉여금은 그 실질이 주주의 납입자본이기 때문에 상법에서

43) 이익잉여금을 유보이익(retained earnings)이라고 부른다.

44) 위에서 이익 또는 잉여금이란 이익잉여금 중 배당을 제한하고 있는 이익준비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5) 채수열, 『의제배당과세론』, 『세무학연구』 제14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1999, p.405.

도 배당의 재원으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상법 462①).

(2) 자기주식몫의 무상주의 배정에 따른 의제배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및 신주인수권 등이 휴지한다고 새기고 있다. 즉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신주를 무상교부하는 경우에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자기주식몫의 주식은 당연히 다른 주주들에게 비례적으로 귀속하게 된다. 그런데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은 제외한다)·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등은 제외한다)·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 등은 제외한다)과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의 세율이 100분의 1인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못함에 따라 추가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본전입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이 의제배당을 구성하지 않는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다른 주주 등이 추가로 배정받은 법인의 자기주식몫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가 소득이 아닌 것을 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

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못함에 따라 추가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이 과세소득을 구성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과세소득을 구성한다는 견해와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컨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자기주식몫의 무상주의 과세소득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찬성한다. 따라서 자기주식몫의 무상주의 가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새긴다.

첫째, 자본잉여금은 그 실질이 주주의 납입자본이므로 과세소득의 속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과세소득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상법은 자본잉여금이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은 단순히 회사의 자본잉여금계정상의 금액을 자본금계정으로 계정이체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의 가액은 주주의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

셋째, 의제배당도 배당소득의 일종이므로 그 재원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주식몫의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있는 위의 규정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자기주식몫의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계기가 자기주식몫의 주식을 추가로 배정받은 것이므로 추가적인 담세력이 있다고 새기는 것 같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은 당해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받을 권리가 아예 없으며, 다른 주주들

은 자기의 본래 권리로서 무상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다.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그 법인이 배정받지 못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배정받은 무상주는 자기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이 무상주를 받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은혜적으로 추가 배정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주가 자기의 본래 권리로서 취득한 것이다.

다. 무상주의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의 정비

(1) 의제배당액의 계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가) 소각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금전, 기타재산의 취득이 수반되는 의제배당소득은 주식의 소각 등·법인의 해산·법인의 합병 또는 법인의 분할에 따라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위에서 소각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란 소각한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주주 등이 회사로부터 받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당해주식(무상주)이 의제배당을 구성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한다.⁴⁶⁾

46)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116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외). 그러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의 경우에는 그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해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야

㉠ 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을 구성하는 잉여금

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을 구성하는 잉여금(예: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의 경우에는 그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해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을 구성하지 않는 잉여금

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을 구성하지 않는 잉여금(예: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음에 제기하는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법령 14②).

$$1\text{주당 취득가액} = \frac{\text{구주식 1주당 취득가액}}{1 + \text{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전체 주식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무상주를 받기 전과 동일하다. 1주당 장부가액을 그만큼 낮출 뿐이다.

그런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이하에서 “주식소각 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각 전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법法 16①Ⅱ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을 말하되,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에서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116 판결).

“단기소각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 등이 먼저 소각 또는 감소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이를 “0”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을 제외한다)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받은 후에 2년 이내에 당해주식(무상주)을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액은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다.

$$\text{의제배당액} = \text{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즉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에 의한 가액(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으로 하지 아니하고 “0”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 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각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주식소각 등이 있는 이후의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법령 14③).

$$1\text{주당 장부가액} = \text{소각 후 장부가액의 합계액} / \text{소각 후 주식 등의 총수}$$

(나)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본잉여금은 그 실질이 주주의 납입자본이므로 법인의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고, 또한 당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의 가액은 그 주주의 과세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당해 무상주의 가액이 주주의 납입자본을 초과하여 분여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은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에 대하여 주식의 소각 등·법인의 해산·법인의 합병 또는 법인의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무상주의 취득대가를 영(0)으로 하여 구주식 및 무상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재계산한다.

즉 다음에 제기하는 금액을 무상주식을 포함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1\text{주당 취득가액} = \frac{\text{구주식 1주당 취득가액}}{1 + \text{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이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이는 종국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배제한다는 의지가 아니고 그 과세를 주식의 소각일·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 이연할 뿐인 것이다.⁴⁷⁾

이는 결국 주주의 납입자본인 자본잉여금의 반환을 과세소득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대하여 불합리한 것이다.⁴⁸⁾

주주의 납입자본인 자본잉여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47) 김완석, 『법인세법론』, (주)광교아카데미, 2000, p.157.

48) 동지 : 이철송, 『의제배당과세에 있어서 자본준비금의 취급』, 『월간 조세』, 1992년 1월호, 조세통람사, p.85.

(2)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당해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및 양도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무상주 취득가액의 계상이 문제가 된다.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소령 163① I).

그런데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그리고 기타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무상주의 취득가액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의 대립을 상정할 수 있다.

(가) 취득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무상주에 있어서는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양도한 무상주의 1주당 취득가액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시 단순히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주식 1주당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계산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text{1주당 취득가액} = \frac{\text{구주식 1주당 취득가액}}{1 + \text{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

무상주의 취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기타의 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당시의 시가를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 결 어

행정해석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영(0)으로 하도록 시달하고 있다.⁴⁹⁾

위와 같은 행정해석은 양도소득세 내지 필요경비의 범리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더군다나 의제 배당액의 산정과 관련한 주식취득가액의 범위와 일치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범문과는 전혀 동떨어진 해석으로서 해석의 영역을 떠난 행정관청에 의한 일종의 법 창설행위라

49) 국세청장 46014-1681. 1999. 9. 14.

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무상주의 취득을 구주식의 취득과 동일한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별개의 거래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어느 경우이든 위의 행정해석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것이다. 즉 무상주의 가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서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해석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입법적인 보완이 따라야 할 것이다.

Ⅲ. 자산소득합산과세의 폐지

1.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의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크게 개인단위주의individual unit system와 소비단위주의consumption unit system로 나누어진다. 소비단위주의는 다시 부부단위주의marital unit system와 가족단위주의family unit system로 세분된다. 그리고 소비단위주의를 채택하더라도 소득의 분할여부에 따라 합산분할주의와 합산비분할주의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산소득에 한하여 부부단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즉 거주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부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개인단위로 할 것인가 또는 소비단위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세부담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의 기본구조에 관한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과세단위는 과세의 공평성·효율성·부부재산제 및 세무행정과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이 과세단위에 관하여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면서도 자산소득에 한하여 부부단위의 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① 가족에게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와 같은 소비단위로 담세력을 고려하는 것이 개인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 합당하다고 보는 견해이다.⁵⁰⁾

② 부부단위 합산과세에 의하여 특히 명의분산이 용이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으로부터 얻는 자산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치에 의하여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아울러 담세력에 부응하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⁵¹⁾

③ 자산소득은 근로소득 등에 비하여 담세력이 있으므로 중과세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

50) 대법원 1995. 6. 9, 94누7157.

51) 日本稅制調査會, 長期稅制のあり方についての答申(昭和43. 7. 30), p.15

④ 소득불평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자본 및 재산소유의 불평등을 소득세에 의하여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2. 현행 제도의 개요

가. 자산소득의 범위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한다(소법 80①).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포함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다음에 계기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이를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

-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②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③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④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2)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 및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나.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자

1)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단위는 소비단위 중 부부단위이다. 즉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자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인 것이다(소법 61①).

본조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새긴다. 유권해석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소통 61-2).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에 해당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인지의 여부와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그러므로 부부 중의 일방이 과세기간중에 사망하거나 과세기간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합산과세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새긴다(소통 61-1). 그리고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혼인(재혼을 포함한다)하여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부가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혼인 전에 발생한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합산과세의 규정을 적용한다(소통 61-7).

2)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다음에 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②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새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가 되는 것이다.

③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다. 자산소득의 합산과 세액의 계산

(1) 자산소득의 합산

①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본다(소법 61④).

② 자산합산 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 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01③).

한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과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소법 45②).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 세액의 계산

(가) 주된 소득자

1)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다.

2) 주된 소득자의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한다.

3)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4)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5) 종합소득결정세액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6)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나)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한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계액)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소법 61③).

3. 각국의 입법례

가. 미 국

미국은 1913년에 항구적 세제로서 소득세를 채용한 이래 계속하여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 전체를 규율하는 통일적 재산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각주가 정하는 바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재산제도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부부재산제도 또한 각주의 자주적 규율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므로 주에 따라서 제각기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거나 부부공유제 등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30년에 연방 대법원은 *Poe v. Seaborn*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부부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분한 것이 각각 부 및 처의 소득이기 때문에 부부는 합산소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론을 일반화하면 부부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에 있어서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등분한 금액이 각각 부 및 처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분이승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부부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 사이에 엄청난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

는 일부 주에서는 단지 주민의 세부담 경감만을 목적으로 부부공유제로 이행하였고,⁵²⁾ 또는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하거나 처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소득을 분산하려는 노력이 빈번하게 시도되었다.

이와 같이 부부재산제의 상위에 따른 각주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하여 1948년에 선택적인 이분이승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즉 부부는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각자의 소득을 각각 별도로 신고하거나, 이분이승제에 의하여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단일세율표 아래에서의 이분이승제는 독신자에 비하여 기혼자, 특히 혼자 버는 부부를 우대한다는 점과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독신세대주에게 가혹하다는 등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69년에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을 개정하여 단일세율표제에서 복수세율표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세율표를 개인단위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married filing separately, 공동신고를 선택하는 기혼자married filing jointly, 독신자single person 및 독신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4종으로 세분하고 있다.

나. 영 국

근대적 소득세의 모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영국은 1799년에 소득세를 채택한 이래 일관하여 부부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하여 왔다. 즉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에 독신자와 동일한 세율표에 의하여 과세하는 합산비분할주의를 고수하여 왔던 것이다.

52) John K. McNulty,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West Publishing Co., 1988), p.346; Joseph A. Pechman, *Federal Tax Policy*, 4th edition(The Brookings Institutions, 1983), pp.96-97.

그러나 기혼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두드러지게 됨에 따라 1972년부터 부인의 근로소득은 부부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남편의 소득으로부터 분리하여 과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78년의 미드 보고서에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대하여는 개인단위주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 대하여는 소비단위주의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⁵³⁾ 이어서 1986년에 공표한 개인과세의 개혁에 관한 재무부의 그린페이퍼(Green Paper, The Reform of Personal Taxation)에서 자산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완전한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세제개혁(Finance Bill 1988)에 의하여 1990년 4월부터 완전한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⁵⁴⁾

다. 독 일

1920년에 제정된 연방 소득세법에서는 부부의 소득에 미성년인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가족단위의 합산비분할주의가 채택되었다. 그 후 처의 소득 중 독립적 근로소득과 남편과 관계가 없는 사업에 있어서의 비독립적 근로소득은 남편의 소득과는 별개로 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하고 제정된 1951년의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ESStG)에서는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여 원칙적으로 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하였다. 즉 소득세법 제26조 및

53) IFS,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Report of a Committee chaired by Professor J. E. Meade, George Allen & Unwin, 1978), p.395

54) Chris Whitehouse & Elizabeth Stuart-Buttle, *Revenue Law-principle and practice*, 10th edition Butterworths, 1992.

제27조에서 부부의 소득(처의 비독립적 근로소득은 제외한다)과 18세 미만의 자녀의 소득(비독립적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제각기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개인단위로 과세하는 경우보다 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혼인 징벌세Ehestrafsteuer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비단위주의는 누진세율구조로 말미암아 개인단위주의에 비하여 현저한 소득세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따라서 합산과세를 정한 소득세법 제26조⁵⁵⁾가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 제3조 제2항(남녀 평등), 제6조 제1항(혼인 및 가족의 보호) 및 제3조 제1항(법 앞의 평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연방 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6조 제1항(혼인 및 가족은 국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은 단순히 혼인 및 가족생활의 존중·보장만을 규율한 것이 아니고 혼인 및 가족생활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국가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하여 결혼 전의 세액보다 과중하게 되는 합산과세 규정은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기본법 제6조는 혼인 및 가정을 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규범Grundsatznorm으로서 공법 및 사법에 대한 구속적 가치결정verbindliche Wertentscheidung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를 구속하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26조는 혼인예외의 방해적 조치를 구성하기 때문에 기본법의 다른 규정의 판단을 기다릴 여지도 없이 위헌임을 선언하였다.⁵⁶⁾

이와 같은 위헌판결에 따라 독일은 소비단위주의를 완전히 폐

55) EStG 제26조 ① 부부 모두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동시에 계속하여 별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에 관하여 합산과세를 행한다. 위의 요건은 과세기간에 있어서 적어도 4개월 이상 존속함을 필요로 한다. ② 합산과세에 있어서 부부의 각 소득은 합산된다.

56) 1957. 1. 17, BVerfGE Bd. 6, S.55.

지하고 개인단위주의로 이행하거나, 아니면 미국과 같은 이분이승제를 채용하여야 할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8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이분이승제와 개인단위주의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선택한 방법에 따르도록 하였다. 즉 부부의 자유의사에 따라 합산과세zusammen Veranlagung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분리과세getrennte Veranlagung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일이 비록 선택적이기는 하나 합산분할과세의 방법, 즉 이분이승제Splittingverfahren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독일은 종래부터 부부를 일체로 보아, 즉 세대를 단위로 하여 담세력을 측정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전통에 따라 세대합산을 계속하는 것이 세부담의 공평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② 부부의 소득의 합계액이 100일 경우에는 부부의 한쪽만이 100일 경우, 각각 70과 30일 경우 또는 각각 50과 50일 경우라고 하여 세부담이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③ 합산을 폐지할 경우에는 자산소득에 의존하는 세대는 매우 유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일반부부공유제allgemeine Gütergemeinschaft를 계약함으로써 부부가 자산소득을 분할하거나 재산을 적당히 부부간에 분산함으로써 소득을 분산하여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는 소득을 분산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개인단위주의는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공평에 배치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택된 이분이승제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부는 근로 및 소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아울러 부부는 수입을 반액씩 향수享受함과 동시에 지출 및 부담도 각각 반액씩 분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세대의 실태에 맞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처의 입장을 특히 존중하여 남편의 직업에 대한 처의 조력을 세법상 인정하여 준 것으로서 1959년부터 시행하고 있

는 민법상의 증가재산공유제Zugewinnngemeinschaft와도 부합하는 것이다.⁵⁷⁾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얻는 소득을 부모의 소득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소득세법 제27조의 자녀합산과세Zusammenveranlagung mit Kindern도 부부합산과세에 관한 위헌판결에 이어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⁵⁸⁾ 따라서 현재에는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라. 일 본

明治20년에 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호주 및 그 동거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가족단위주의를 채용하였다. 이는 그 당시의 민법이 가족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음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민법상의 가족제도와 소득세법상의 가족단위주의와는 호흡이 잘 맞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昭和22년에 민법의 친족편親族篇이 전부 개정되어 종래의 가족제도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득세법상의 가족단위주의는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한편 샤프권고에서는 가족단위주의를 폐지하고 각 납세의무자가 독립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각자의 소득액에 대한 세액을 제각기 납부하게 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昭和25년(1950년) 소득세법 개정시에 개인단위주의로 이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昭和32년의 臨時稅制調査會는 그 답신에서 자산소득은 세대를 과세단위로 하여 합산하는 것이 자산 명의의 분할 등

57) Klaus Tipke/Joachim Lang, Steuerrecht, ein systematischer Grundriß, 13. Aufl.(Verlag Dr. Otto Schmidt, 1991), S.396.

58) 1964. 6. 30, BVerfGE Bd. 18, S.97.

표면상의 가장에 의하여 부당하게 소득세가 경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소득합산과세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답신에 근거하여 昭和32년부터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개인단위주의 특례로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즉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자산소득에 한하여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하는 특례가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1988년 소득세법의 개정에서 세액계산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순수한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⁵⁹⁾

마. 프랑스

프랑스는 1945년 이래 가족제수제(家族除數制, *systeme du quotient familial*)라는 독특한 소득분할방식을 채택하여 오고 있다.

우선 세대(foyer)의 범위, 즉 합산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살펴보면 부모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녀를 합산대상가족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18세 이상이거나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때에는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21세 미만(재학중인 자는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군에 복무하는 자녀(연령에 관계없다)의 경우에는 합산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⁶⁰⁾ 한편 부부의 소득은 반드시 합산하여야 하나, 자녀의 소득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즉 자녀의 경우에는 합산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소득을 분리하여 신고한 경우에 그 자녀는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취급되며, 뒤에서 설명하는 가족제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제외된다.

다음으로 소득분할방식은 가족제수제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

59) 金子宏, 『租税法』 第4版, 弘文堂, 1992, p.168.

60) 監査法人トーマツEC統合チーム, 『EC加盟國の税法』, 中央經濟社, 1992, p.163.

다. 가족제수제는 독신자의 경우에는 1단위, 부부는 2단위, 부부 및 1인의 자녀는 2.5단위, 부부 및 2인의 자녀는 3단위, 부부 및 3인의 자녀는 4단위⁶¹⁾로 하여 과세소득을 가족제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제수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자녀의 수가 많은 만큼 세율의 누진도를 완화시키게 된다. 납세의무자가 홀아비 또는 과부인 경우로서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제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부의 소득에 대하여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일반조세법 6).

가족제수제는 기혼자, 특히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킨다. 소득세 부담의 감소 정도는 자녀의 수가 많고 가족 중 부夫 또는 부婦만이 소득을 얻는 경우에 가장 현저하다. 따라서 가족제수는 누진소득세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고액소득자에게 보다 큰 소득세의 경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⁶²⁾

61) 위에서의 단위수를 가족제수라고 하는데, 가족 1인당 가족제수는 1이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에는 1인당 0.5로 계산하여야 하나, 자녀가 3인 이상인 세대의 경우에 세 번째 자녀부터는 1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62) 金子宏, 『所得税における課税單位の研究』, 『公法の理論』中 田中二郎先生古稀記念, 有斐閣, 1976, pp.721-722.

4.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문제점

현행의 자산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는 헌법 제11조 또는 제36조에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다른 소득, 예를 들면 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등과는 달리 자산소득만을 부부단위로 단순히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다. 즉 일방 배우자의 고유재산에서 가득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방 배우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자산소득을 다른 소득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는 자산소득이 있는 부부에 대하여 결혼 전보다 과중한 세부담을 지움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인에 대하여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결혼을 억지 또는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즉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혼인에 대하여 징벌세(Ehstrafsteuer)를 과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기는 하나, 자산명의를 분산과 같은 가장

행위 등은 증여의제규정, 명의신탁의 금지와 처벌규정⁶³⁾을 적용하거나 질문조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당해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현행 제도는 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과 같은 고유재산 등으로부터 생긴 소득은 명백하게 소득세의 부담을 경감 또는 회피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소득을 분산한 결과에 의하여 얻어진 소득이 아니다. 이와 같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각자에게 귀속된 소득까지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61조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혼인 전에 각자가 지던 소득세의 부담보다 과중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혼인 및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⁶⁴⁾

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참조하기 바란다.

64) 일본의 最高裁判所는 종전에 채택하고 있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먼저 最高裁 昭和36. 9. 6. 昭和34年(オ) 제1193호로서 남편명의로 취득한 재산 또는 소득에 대하여 처의 내조의 공을 인정함이 없이 전액 남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민법 제762조 제1항(부부별산제)이 헌법 제24조에 위반하고, 따라서 위의 민법규정에 기초를 둔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最高裁判所는 부부간에 실질상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법에서 재산분할청구권, 상속권 내지 부양청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62조 제1항은 헌법 제24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소득세법도 헌법 제24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清永敬次, 『夫婦合算課税』, 『憲法判例百選Ⅱ』 別冊ジュリスト No.69, 有斐閣, 1980, May, p.340 참조].

다음 最高裁 昭和55. 11. 20, 昭和53(行ッ) 제55호로서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이 헌법 제13조·제14조·제29조·제30조 및 제84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헌법상 조세에 관한 사항은 법률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정하는 바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소론은 결국 특정의 법

나.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인위적인 소득분산이 용이한 자산소득에 한하여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주의 중 이분이 승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주의 중 이분이승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이다.

률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세액계산규정에 관한 입법정책상의 적부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三木義一, 『資産所得合算課税制度の合憲性』, 『租税判例百選(第2版)』 別冊ジュリスト, No.79, 有斐閣, 1983, May, p.40 참조].

제3절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개선

I. 과세제도의 개요와 문제점

1. 과세제도의 개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식의 양도차익이라 할지라도 양도한 주식의 종류(주권상장법인의 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여 각각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1) 일정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일정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이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에 계기하는 요건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대주주 등)가 양도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단 한주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기타자산인 특정주식(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과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과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이 부여된 주식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①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주주 1인) 및 그와 국제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②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으로서 다음에 계기하는 주식 등(당해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외의 주식을 말한다. 단 한주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①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②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③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그런데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라 할지라도 기타자산인 특정주식(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과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과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이 부여된 주식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서 제외한다.

(3) 특정주식

(가)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의 가액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그 법인의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을 가리킨다.

즉 다음의 (가) 및 (나)를 동시에 충족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을 말한다(소령所令 158① I).

1)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2) 당해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를 과점주주라고 부르기로 한다.

(나)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체육시설업 등과 같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가리킨다(소령 158①V).

즉 다음에 제기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⁶⁵⁾ 따라서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

65) 대법원 1994. 2. 8, 93누19238.

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면서도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이나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면서도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미달하는 법인의 주식은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단 한주만 양도하더라도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1)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2) 체육시설업·휴양시설관련업·부동산업 및 부동산개발업으로서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4) 특정시설물 이용권으로서의 주식

특정시설물 이용권으로서의 주식이란 특정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의 당해주식을 말한다.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은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인데, 골프회원권·헬스클럽회원권·콘도미니엄이용권 등이 포함된다.

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환산가액(취득가액에 한한다) 또는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그러나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익의 10%(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15%,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30%로 한다)에 상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다.

(2) 양도차손의 통산 및 이월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1과세기간에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주권상장법인의 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기타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 계기하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어

는 한 소득구분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양도차손)은 이를 다른 소득구분별 소득금액(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아니한다(소법所法102).

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정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경영상태가 불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나 주가가 하락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자산(예 : 토지 등)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에 의도적으로 대량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손을 실현하여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 내지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장치이다.

다음으로 주식의 양도차손은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즉 양도차손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서의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제도와는 달리 양도소득에서는 양도차손의 이월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구분하여 별개로 세액을 계산한다. 세액의 계산은 주식의 종류(특정주식과 같은 기타자산·일정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보유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1) 특정주식 등과 같은 기타자산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은 최저 20%에서 최고 40%까지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 일정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것
최저 20%에서 최고 40%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나) 기타의 주식
20%로 한다.

(3)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1년 미만 보유한 것
최저 20%에서 최고 40%까지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위에서 대주주 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주주 1인) 및 그와 국제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②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주식 등의 시가총

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나) 중소기업의 주식
10%로 한다.

(다) 기타의 주식
20%로 한다.

2. 외국의 입법례

미국·영국·프랑스 및 일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가. 미 국

주식의 양도차익을 포함한 자본이득도 다른 일반소득ordinary income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하고 있다. 특히 1986년의 세제개혁에서는 1922년 이래 시행해 오던 장기자본이득long-term capital gains에 대한 특별공제제도(당해 소득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총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던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의 전액을 총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은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보다 낮게 설계하고 있다. 즉 보유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자산의 자본이득Adjusted Net Capital Gain에 대한 최고세율은 20%로, 그리고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18개월 미만인 중기자본이득

mid-term gain 등에 대한 최고세율은 28%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⁶⁶⁾

그리고 개인주주가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던 적격소법인의 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그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한다.

다음으로 자본손실capital losses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3,000달러(부부가 각각 신고하는 경우에는 1,500달러)의 범위 안에서 일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자본손실은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나. 영 국

주식의 양도차익을 포함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세income tax와는 별개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과세하고 있다. 자본이득세의 세율은 소득세의 세율(1,500파운드 이하 : 10%, 1,500파운드 초과 2만 6,500파운드 이하 : 23%, 2만 6,500파운드 초과 : 40%)과 동일하지만,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소득세의 한계세율marginal income tax rate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TCGA 1992 §4).⁶⁷⁾

자본손실은 당해연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미공제액은 이월되어 다음연도 이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연한의 제한은 없다.

66) 2000. 12. 31 이후에 발생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의 최고한계세율은 18%로 한다(David M. Hudson, *Federal Income Taxation* 7th Edition, St. Paul, Minn., 1998, p.274).

67) Chris Whitehouse, *Revenue Law-Principle and Practice* 7th Edition, Butterworths, 1999, pp.277-278.

다. 프랑스

법인세가 과세되는 회사의 지분 등을 개인이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지분 등의 양도차익이 일정한 금액(1998년의 경우에는 5만 프랑)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16%의 세율⁶⁸⁾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한다.

그리고 자본손실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미공제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라. 독일

사업용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그 자산이 제공되고 있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농림업소득·사업소득·독립적 근로소득 등으로 취급하여 종합과세한다. 반면에 사업용 자산 이외의 기타자산에 대하여는 투기행위Spekulationsgeschäft가 아닌 한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투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농림업소득·사업소득·독립적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다만, 투기행위로 인한 손실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투기행위로 인한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ESTG 23(4)).

마. 일본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양도소득

68) 소득세 외에 자본이득의 10%에 상당하는 사회보장세 등이 추가로 과징된다.

및 잡소득에 관하여는 주식 등에 관계 있는 양도소득 등으로서 다른 소득과는 구분하여 신고분리과세 또는 원천분리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주식 등에 관계 있는 양도소득 등

주식의 매각	{	원천분리과세방식 — 매각대금×1.05%
		(매각대금×5.25%×20%)
		(상장주식) 원천징수로써 과세관계가 종료
		신고분리과세 선택 — 양도소득 등의 금액×20%

그러나 2001년 4월 1일부터 상장주식 등에 관계 있는 양도소득 등의 원천분리선택과세제도는 폐지되고, 신고분리과세로 일원화되었다.

(1) 주식 등에 관계 있는 양도소득 등의 신고분리과세

주식 등에 관계 있는 양도소득 등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되, 그 주식 등에 관계 있는 양도소득 등의 금액(소득공제의 적용 후의 금액)에 대하여는 20%의 세율로 과세한다(조법措法 37의 10①). 주식 등에 관계 있는 양도소득 등의 금액이란 주식 등에 관계 있는 사업소득의 금액·양도소득의 금액 및 잡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주식 등에 관계 있는 양도소득 등의 금액의 계산에서 발생한 손실의 금액은 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사업소득·양도소득 및 잡소득금액에서는 통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식 등에 관계 있는 양도소득 등의 금액을 통산한 결

과 주식 등에 관계 있는 양도소득 등의 금액이 손실인 경우에는 그 손실은 없는 것으로 본다. 즉 주식 등에 관계 있는 양도소득 등 외의 다른 소득과는 통산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부채의 이자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지만, 양도소득의 특별공제와 장기양도소득의 2분의 1 과세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제기하는 요건을 충족한 매각은 창업자이득으로 보아 소득합계액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

① 상장주식 또는 점두등록주식으로서 상장일 또는 점두등록일 까지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② 상장일 또는 점두등록일 이후 1년 이내에 증권회사를 통하여거나 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매각한 것일 것

(2) 주식 등에 관계 있는 양도소득 등의 원천분리과세

주식 등 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주식 등 및 점두매매 등록종목으로서 등록되고 있는 주식 등(이하에서 “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권업자 또는 은행의 영업소에 있어서 당해 증권업자 또는 은행의 매매위탁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증권업자 또는 은행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한 때에는 당해 상장주식 등의 양도대가를 지불할 때에 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양도이익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에 의하여 과세된다(조법 37의 11①).

상장(또는 점두등록, 점두매매)되고 있지 않은 주식 등을 매각한 때에는 원천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

위에서 양도이익금액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에 계기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주식(신주의 인수에 의한 권리·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양도 : 그 양도대가의 액의 5.25/100 상당액

②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 : 그 양도대가의 액의 2.5/100 상당액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제외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정한 대주주의 주식을 제외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일정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① 고액소득자의 소득 중에서 주식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수직적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주식가격이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자본이득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②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게 되면 배당소득의 과

세에 허점이 생기게 되어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배당금지급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각한 후 다시 배당금지급기준일 이후에 당해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배당소득을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조세회피가 가능하게 된다.

③ 자산간 과세에 있어서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투자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④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이득에 대하여 그 소득자의 인격에 따라서 과세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의 양도차익(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이득에 대하여 단지 당해이득의 귀속자의 인격차이만을 이유로 과세상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행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변동 등에 따른 투기과열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가 주가등급을 더욱 부추기는 역기능을 갖는다. 반면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가의 급등현상을 억제하는 제동장치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나. 양도차손의 통산 및 이월공제의 제한

자본손실(capital losses)의 통산을 제한함과 아울러 양도차손의 이월공제를 배제함으로써 응능부담의 원칙을 침해함과 동시에 담세력이 없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본손실의 공제를 제한없이 허용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손실을

발생시켜 전체의 소득을 조작하고 조세회피를 기도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초과누진세율구조 아래에서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작이 더욱 빈번하게 행하여지게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본손실을 자본이득의 범위 안에서만 공제하게 하거나 일정금액의 한도까지만 공제하게 하는 경우 또는 일정연도까지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와 같이 자본손실의 완전한 비용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과 일정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분하여 계산하되, 어느 한쪽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한쪽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소법 102). 그리고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립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미처 공제하지 못한 양도차손은 소멸하며 다음 과세기간 이후까지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저율분류과세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 외의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지나치게 저율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1년 미만 보유한 것의 양도차익만 20%에서 40%까지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할 뿐이고 기타의 주식에 대하여는 20%의 비례세율(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서 중소기업의 주식은 10%의 비례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II. 개선방안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과세의 확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규모가 방대하고 고소득자의 주식매매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조치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가. 종합과세방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당해소득을 종합소득⁶⁹⁾에 포함하여 종합과세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분류과세를 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는 비단 주식의 양도소득에서만 야기되는 문제가 아니고 양도소득 일반에서의 문제이다.

69) 자본이득에 대하여 일반소득이라고도 부른다.

주식을 비롯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으로 구분과세하고 있고, 양도소득 중에서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다시 주식의 종류(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각각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대주주의 단기소유주식⁷⁰⁾의 양도차익을 제외하고는 그 세율 또한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 있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을 포함한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종합과세론자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⁷¹⁾

① 자본이득의 주요원천인 토지와 주식의 보유는 주로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대한 분류과세는 소득세의 실질적인 누진도를 약화시킨다.

② 토지와 주식 등의 보유액은 같은 소득계층 안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대한 분류과세는 수평적 공평을 침해한다.

③ 자본이득과 다른 형태의 자산소득, 특히 배당소득과는 상당

70)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20%에서 4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장식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71) 藤田晴, 『所得稅の基礎理論』, 中央經濟社, 1992, p.208.

한 정도로 상호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상 우대는 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④ 자본이득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증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는 소박한 논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류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분류과세방법

자본이득을 다른 일반소득과 구분하여 분류과세하여야 한다는 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⁷²⁾

① 장기자본이득의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상적 자본이득(illusory capital gains)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반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즉 실질적인 자산가치의 증가분으로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단순한 화폐가치의 저락에 기인하여 발생한 지상이득(paper gains arising from inflation)이므로 일반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과세상 우대할 필요가 있다.

② 장기자본이득은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에 매년 발생된 것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에 한꺼번에 실현된 것이다. 이와 같이 처분에 따라 한꺼번에 실현된 자본이득을 당해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른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생기준에 따라 과세하는 것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세부담의 누증을 결과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집효과(bunching effect)를 고려하여 볼 때 자본이득을 다른 일반소득과 합

72) 최명근 외 3인,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85, pp.148-149.

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③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면 당연히 처분하였을 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봉쇄효과 lock-in effect는 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때에 신규취득가액기준 fresh-start basis을 적용⁷³⁾하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분류과세론을 취하는 경우에도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방안(양도소득합산과세)·주식의 양도차익과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과세하는 방안(주식양도소득합산과세) 및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하는 방안(주식양도소득원천분리과세)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1) 양도소득 합산과세방법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때에는 초과누진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현행의 20%에서 40%까지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현행의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켜 10%에서 40%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개정하여야 한다.

73)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상속시)의 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및 기타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소법 97① I 가). 즉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의 취득가액은 승계취득가액기준 carry-over basis이 아니고 신규취득가액기준에 의하는 것이다.

(2)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소득합산과세방법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되,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한다)의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3) 주식양도소득합산과세방법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다른 양도소득에서 분리하여 주식양도소득만을 별도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주식양도소득합산과세는 다시 합산하는 주식양도소득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가)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안

기타자산에 속하는 특정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나)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과세하는 방안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타자산에 속하는 특정주식 등의 양도차익·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주식의 양도차익과 주권상장법인 주식(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한다)의 양도차익으로 각각 구분하고 그 구분별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 양도시에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울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울 때에도 실제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것인지 또는 일정한 의제양도차익⁷⁴⁾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자산에 속하는 특정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현행대로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존치한다.

(다)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과 기타 주권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과세하는 방안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타자산에 속하는 특정주식 등의 양도차익·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한다)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과 기타주식의 양도차익으로 구분하되, 기타자산에 속하는 특정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현행대로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그리고 기타자산에 속하는 주식 외에 그 밖의 주식의 양도차익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한다)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과 기타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구분별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양도시에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울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소득원천과세방법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한다)의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74) 일본에서는 그 양도대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리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한하여 원천분리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양도시에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을 필요가 있다.

다. 결 어

양도소득의 종합소득에의 합산과세는 소득세제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채택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도기적으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 및 그 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외의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 2 제2항에서의 대주주의 범위⁷⁵⁾는 그 주식소유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자가 많지 않다. 대주주의 정의를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의 기준⁷⁶⁾에

75) 대주주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소법 104①V가, 소령 167의 2②).

①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②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76) 소액주주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

해당하지 않는 주주로 일치시킴으로써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외에 기타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과 합산하여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셋째, 기타자산에 속하는 특정주식(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및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과 특정시설물 이용권으로서의 주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상장여부 등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포함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2. 양도차손의 통산 및 이월공제

현행 소득세법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과 일정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분하여 계산하되, 어느 한쪽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한쪽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소법 102). 그리고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미처 공제하지 못한 양도차손은 소멸하며,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양도차손의 통산 및 이월공제의 배제는 응능부담의

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소법 20③ 및 소령 40①).

원칙을 침해함과 동시에 담세력이 없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손의 통산 및 이월공제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한다)의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과 기타자산(기타의 주식·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되, 어느 한쪽의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결손금)은 다른 한쪽의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특정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손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양도차익에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우대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공이익의 제거 및 건전한 투자의 장려 등을 목적으로 단기보유자산의 양도차익보다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로서는 일정한 물가상승공제(indexation allowances) 또는 보유기간에 상응하는 일정금액의 공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3년 이상 장기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익의 10% 내지 30%에 상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⁷⁷⁾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

다.

이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기보유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 외의 일정한 주권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20%에서 4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중소기업 법인의 주식) 또는 20%(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토지 및 건물과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한다)의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그 대부분이 단기매매일 것이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증권거래세의 존치여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때에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고려하여 볼 수 있겠으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를 고려하여 현행 증권거래세를 존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77)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로 정하고 있다.

제4절 주식상장이의 증여의제의 폐지와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

I.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1. 현행 제도의 개요와 문제점

가. 현행 제도의 개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 또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가 당해법인의 주식(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를 포함한다)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증법 41의 3).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협회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저가양도하는 경우에 당해상장 또는 협회등록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첫째,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과세

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과의 차이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과세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과세가액의 차이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을 말한다.

둘째, 정산기준일이란 당해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에서 “상장일 등”이라 한다)로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셋째,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당해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일정한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나. 문제점

법인의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저가양수한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를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법리에 위배된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21①Ⅲ).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당해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은 때로 새겨야 할 것이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주식 등의 수증 또는 저가양수 이지 증여받거나 양수한 주식 등의 상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의 산정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보다 최장 3년 3월까지 미루어 정산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은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법리에 위배되는 것이다.⁷⁸⁾

둘째, 증여받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중에 당해재산의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그 증가한 가액이 증여에 해당하거나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한 재산가액의 증가에 대하여는 당해재산을 처분할 때에 처분이익으로서 소득세로 흡수함이 마땅한 것이다. 즉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일종의 미실현이익으로서 당해주식이 매매 등에 의하여 그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78) 동지 : 헌법재판소 1992. 12. 24, 90헌바21 : 1993. 5. 13, 92헌바32.

[판결요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시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은 과잉금지 원칙 중 방법의 적절성에 위배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시에 자본이득으로 흡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이고 변칙적인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로서 흡수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방법의 적절성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로부터 최장 3년 3월간 증여세의 과세를 불확정한 상태로 유예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 무자의 지위를 심히 불안정하게 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2. 개선방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당해주식 등의 처분시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삭제하고 양도차익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주식의 양도차익의 개선에서 다루었으므로 중복적인 기술을 피하고자 한다.

II.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인상

1. 현행 제도의 개요와 문제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

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 2,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하며,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을 상속세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위에서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금융채무라 함은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그런데 금융재산은 그 전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포착되지만, 토지 및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므로 대체로 그 시가의 70~80%의 가액으로 포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종류가 금융재산인가 또는 부동산등인가에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의 크기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의 실시에 따라 금융자산이 양성화되고 과세포착률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금융자산의 보유를 장려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금융소득공제는 최고한도액을 2억원으로 제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2. 개선방안

금융재산공제는 현행과 같이 순금융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다만 그 한도액을 인상하여 현행의 2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Ⅲ. 주식의 평가방법의 개선

1. 주식의 평가방법의 개요와 문제점

가. 주식의 평가방법의 개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해주식이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인지에 따라서 그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

(가) 주식의 평가방법

주식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따라서 그 평가방법을 달리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것(평가기준일 전후 6월 또는 3월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는 제외한다)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

3) 비상장법인의 주식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외의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손익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순손익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가) 순손익가치법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수익률(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⁷⁹⁾을 말한다)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text{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text{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3) + (\text{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2) + (\text{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1)] \times 1/6$$

위의 산식에서 순손익액이란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익금불산입한 금액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환급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계기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79)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2000. 4. 3 국세청고시 제2000-3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공과금 중 손금불산입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기부금·접대비 및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액,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소비성 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액

②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 한다.

나) 순자산가치법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에서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자산의 가액 및 부채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②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③ 다음에 제기하는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

다.

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

위에서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에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액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⁸⁰⁾

80)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판결요지] 구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 구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의 하나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는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및 주민세를 의미한다.

구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구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법인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이인 ‘자산의 평가차액’이 일단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할 ‘수익’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구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평가증’의 경우에도 법인이 현실적으로 자산을 재평가하지 아니하는 한 자산

㉔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㉕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④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㉖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㉔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내의 것

(나)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특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한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평가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한 법인의 주식

의 평가차익이 법인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될 수 없어 법인세 및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가 부과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구법인세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평가차익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들을 구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 구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함에 있어, 상속개시일까지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당해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 상당액을 같은 호 (다)목 소정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없다.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에 의한 가액과 나)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또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가액

2) 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3)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법인의 증가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

하여 평가한다.

(다) 최대주주의 주식합증에 관한 특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2) 소득세법상의 평가방법

(가) 사업소득 등에 있어서의 시가

소득세법상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시가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하면서,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로 이를 시가로 의제한다.

(나) 양도소득에 있어서의 기준시가

주식 등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주식의 기준시가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따라서 그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

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

3) 비상장법인의 주식

협회등록법인 주식 외의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손익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순손익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① 순손익가치법

순손익가치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액을 일정한 수익률(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② 순자산가치법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법인세법상의 평가방법

(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의 시가

법인세법상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⁸¹⁾ 법인세법은 시가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하면서,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로 이를 시가로 의제한다.

(나) 특별부가세에 있어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법법法法 99⑦IV, 법령 141⑫III).

81) 김완석, 『법인세법론』, (주)광교아카데미, 2000, p.475.

(4) 증권거래세법상의 평가방법

(가)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소가 대체결제종목으로 지정하여 당해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 또는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양도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기타 주권

위의 (가) 및 (나)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되, 다만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다음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당해주권의 최종시세가액에서 증권거래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②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액에

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③ ① 및 ②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나.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

(1) 개별세법별 평가방법의 상이

주식의 평가제도가 개별세법마다, 또한 평가의 목적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⁸²⁾

그 전형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규정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시가 산정규정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그 차이를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

82) 이은상·이준규, 『현행 세법상 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8, p.36.

(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1) 순손익가치법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에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선택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한 대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2) 순자산가치법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에 영업권을 평가하여 가산하게 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산

정한다.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특례 등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평가방법의 획일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손익가치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할 때에 한하여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순손익가치법에 의한 평가액과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가액을 그 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주식의 가치는 법인의 사업의 종류(업종)·규모(대법인·중법인 및 소법인)·설립 후의 존속기간(신설법인 또는 기존법인)·업황(휴업 또는 폐업상태) 등에 따라서 그 평가방법을 달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은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어서 당해규정에 의한 주식의 평가액이 주식의 실제가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현행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는 예외없이 순손익 가치법에 의한 평가액과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평가액이 과대하게 될 소지가 크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당해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시가가 형성되고 있는 주식을 보더라도 쉽게 수궁할 수 있다.

(3) 순자산가치법의 문제점

순자산가치법은 법인의 청산을 전제로 한 주식의 평가방법⁸³⁾이므로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순자산가치법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자산의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청산가치보다 과대하게 산정되고, 따라서 중국적으로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대하게 평가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법인의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자산의 평가차액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구성하여 법인세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4) 순손익가치법의 문제점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손익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83) 北野弘久 外, 『爭點相續稅法』, 勁草書房, 1995, p.330.

하되, 순손익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순손익가치법에 있어서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자본환원율(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이와 같은 순손익가치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경상적 이익이 순손익에 포함됨으로써 순손익가치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의 가치보다 과대하게 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순손익가치법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순손익가치의 측정기준이 되는 순손익은 이와 같은 전제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상적 순손익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다.⁸⁴⁾

둘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자본환원율을 획일적으로 연 10%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순손익가치법에 의한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본환원율은 기업에 내재하는 위험risk의 정도와 연계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위험도는 업종마다 다른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동일한 업종 안에서도 기업마다 다르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본환원율은 단일률로 고정화할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업종별 위험도의 크기에 따라 이를 세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84) 최명근, 『한국조세의 제문제』, 조세통람사, 1988, p.235.

2. 개선방안

가. 평가방법의 일원화

개별세법에서 제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규정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의 기준시가의 산정규정은 통일하거나 그 평가목적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 한 차이점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⁸⁵⁾

나. 다양한 평가방법의 도입

(1) 평가방법의 다양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손익가치법에 의한 평가액과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가액을 그 평가액으로 하게 하고 있다. 즉 현행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게 획일화됨으로써 각 법인의 사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주식의 평가가 어렵다.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비상장법인(closely-held corporations)의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산정방식을 획일화하지 않고 주식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종사하는 상장법인의 주식의 가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IRC 2031(b)).⁸⁶⁾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서는 회사의 순자산·예

85) 이은상·이준규, 앞의 책, p.63

86) John K. McIntuly,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West, 1994, p.304.

상수익력·배당지급능력 기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 위에서 기타 관련되는 요소란 사업의 성격과 기업의 설립 이후의 역사·당해법인의 영업권 또는 기타 무형재산의 존재여부·평가대상주식의 매매실례와 평가되는 주식분량의 크기·일반적인 경제전망과 당해 특정업종의 현황 및 전망·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의 사업에 종사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의 시장가격 등을 말한다(Revenue Ruling 59-60 §1).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제 사정을 고려하여 순자산가치평가법net assets value approach·수익력가치평가법earning capacity approach·배당력가치평가법dividend-paying capacity approach 또는 비준평가법comparative appraisal approach 등의 평가방법 중 최적의 방법을 적용하거나 위의 평가방법의 조합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익력을 중시하지만, 투자 또는 재산보유를 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을 중시한다(Revenue Ruling 59-60 §5(a)).

일본에서는 우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특정평가회사와 특정평가회사 외의 회사(기타회사)로 구별하고 특정평가회사(주식보유특정회사·토지보유특정회사·개업 후 3년 미만의 회사·개업 전 또는 휴업중의 회사·청산중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법(청산중인 회사는 잔여재산분배예상액의 복리현재가復利現價에 의한 평가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타회사는 평가회사의 구분(대회사·중회사 및 소회사)과 주주의 구분(원칙주주 및 특례주주)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정하고 있다.

대회사⁸⁷⁾의 주식은 유사업종비준법, 중회사의 주식은 유사업종비준법과 순자산가치법의 병용, 소회사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법(유

사업종비준법과 순자산가치법의 병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에 의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특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회사의 구분에 관계없이 배당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한다.⁸⁸⁾

주식의 가치는 당해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업종)·법인의 규모(대법인·중법인 및 소법인)·법인 설립일로부터의 기간(신설법인 또는 기존법인)·사업의 업황(휴업 또는 폐업상태) 등에 따라서 그 평가방법을 달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대회사는 뒤에서 다룰 비준평가법 또는 순손익가치법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둘째, 비상장법인 중 부동산보유회사(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소유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법인 및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와 지주회사는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셋째,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회사와 개업 전 또는 휴업 중의 회사개업 후 일정기간 미만의 회사는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넷째, 기타의 법인은 순손익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또는 순손익가치법과 순자산가치법의 조합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이때에는 순손익가치법에 60~70%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한다.

87) 종업원수 100인 이상의 회사를 말한다(평가통달評價通達 2-8).

88) 平川忠雄, 資産評價の問題點-取引相場のない株式, 税研 第78號, 1998. 3, p.56.

(2) 보수주의적인 평가방법의 채택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불확실하다. 그런데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납세의무자의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크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불확실성 속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과소평가의 위험성보다 과대평가의 위험성의 제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순손익가치법에 의한 평가액과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다. 비준평가법의 도입

증권거래소 등에서 시가가 형성된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비준평가법은 적절한 비교대상법인의 선정만 담보된다면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중 가장 합리적이고 우수한 방법이라고 하겠다.⁸⁹⁾ 이와 같은 비준평가법은 대체로 규모가 큰 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비준평가법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89) 최명근, 앞의 책, p.260.

첫째, 비준평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교항목, 즉 비준요소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비준요소로서는 1주당 순자산가액·1주당 순손익액·1주당 배당액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의 배당성향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비준요소에 1주당 배당액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비준요소로서 1주당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순손익액만을 고려한다면 비준평가법에 의한 주식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1\text{주당 가액} = \text{표본회사의 주식이가격} \times (\text{평가회사 1주당 순자산가액} / \text{표본회사 1주당 순자산가액}) \times \text{가중비율} + \text{비준회사의 주식이가격} \times (\text{평가회사 1주당 순손익액} / \text{표본회사 1주당 순손익액}) \times \text{가중비율}$$

둘째, 표본회사는 2~3개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표본회사를 1개로 한정하게 되면 그 평가액의 객관성이 부족하게 되고, 그 수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업무량의 폭증을 유발하게 된다.

셋째, 비준요소 중 1주당 순손익액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간이 문제된다. 비준요소로서의 1주당 순손익액은 순손익가치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비상장법인의 주식이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본회사의 주식이가격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다섯째, 행정상의 능률제고 및 납세순응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청장이 표본회사의 주식이가격·1주당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고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

비준평가법의 적용은 적정한 표본회사의 선정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런데 표본회사의 선정이 적절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가 동일하여야 하고, 자산의 구성·수익의 상황·자본금 및 사업규모 등이 유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⁹⁰⁾ 따라서 국세청장은 평가회사 자산의 구성·수익의 상황·자본금의 크기 등에 따라 표본회사를 세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장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주식가치의 하락의 요인을 이룬다고 하겠다. 이 밖에도 회사의 핵심적 경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당해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은 통상적인 주식의 가격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할인을 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비준평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3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⁹¹⁾ 미국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할인을 행하고 있다.

라. 순손익가치법의 개선

(1) 순손익의 조정

수익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순손익가치법에 있어서 주식가액의 크기를 좌우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는 순손익이

90) 村井正, 現代租稅法の課題, 東洋經濟新聞社, 1973, p.264 : 小池正明, 非上場株式評價の取扱いと問題點について, 税研 第50號, 1993. 7, p.16.

91) 비준평가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은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한다.

비준평가법에 의한 평가액 = 표본회사의 주식의 가격 × (평가회사의 1주당 배당금액 ÷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순자산가액 / 표본회사의 1주당 배당금액 ÷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순자산가액) × 70%

다. 그러므로 적정한 주식가액의 평가를 위하여는 순손익액의 산정에 있어서 기업의 수익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순손익, 즉 기업의 수익력을 표상하는 순손익이란 정상손익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익가치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익의 발생이 비반복적·불규칙적인 비정상적인 손익은 순손익의 산정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비정상적인 손익의 예로서는 영업외손익 중 투자자산처분손익·유형자산처분손익·법인세추납액 등, 특별손익(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재해손실 등),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에 속하는 자기주식처분손익 등을 들 수 있다.

(2) 자본환원율의 합리화

순손익가치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손익액의 크기 못지않게 그 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자본환원율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본환원율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국세청장은 자본환원율을 10%로 고시하고 있다.

자본환원율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는 당해사업의 성질·리스크의 정도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Revenue Ruling 59-60 §6).

그러므로 자본환원율은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세분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속성적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주식의 투자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자본환원율을 리스크가 전혀 없는 금융기관의 보증부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기

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도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⁹²⁾ 특히 국제 청장이 고시한 자본환원율 10%는 지나치게 낮아 주식의 가액이 과대하게 평가될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자본환원율을 획일화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질·리스크의 정도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세분하여 정하되, 그 환원율의 크기도 담보부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에 상당한 정도의 위험부담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마. 순자산가치법의 개선

순자산가치법은 법인의 주식을 청산을 전제로 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다. 따라서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법인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총액에서 공제할 부채총액에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액 또는 그 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및 소득할 주민세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담률은 평가의 대상이 된 자산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부담률은 <표 2>와 같다.

92) 최명근, 앞의 책, p.258.

<표 2> 자산의 종류별 법인세 등의 부담률

(단위 : %)

세 목	부동산 등	기타자산
법인세	16 ~ 28	16 ~ 28
주민세	1.6 ~ 2.8	1.6 ~ 2.8
특별부가세	15(미등기양도 : 30)	
주민세	1.5	
합 계	34.1 ~ 47.3	17.6 ~ 30.8

따라서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는 자산 평가차액의 17.6%에서 47.3%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을 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평가차액의 51%에 상당하는 금액⁹³⁾)을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평가통달⁹⁴⁾ 186- 2).

93) 자산의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담률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3%, 청산소득에 대한 사업세 12%, 청산소득에 대한 道府縣民稅 1.65%(법인세 세율의 5%) 및 청산소득에 대한 市町村民稅 4.59%(법인세 세율의 12.3%)로서 합계 51.24%이다.

94) 藤田良一, 相續稅・贈與稅・地價稅 財産評價の實務, 中央經濟社, 1993, p.268.

제5절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

1. 현행 제도의 개요와 문제점

가. 현행 제도의 개요

(1) 제도적 취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의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그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⁹⁵⁾

대법원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⁹⁶⁾이라고 판시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95)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1999, p.73 : 권강웅, 『축조 지방세 법해설』, 조세통람사, 1999, p.345.

9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2) 취득세의 과세요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이다. 그러나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식 등의 취득

주식 등의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주식 등의 취득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주식 등의 취득이 증자 등에 따른 취득이든 매매 또는 증여 등과 같은 승계취득이든 가리지 않는 것이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당해법인의 증자,

기타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나) 과점주주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다음에 계기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아래의 ⑨ 내지 ⑬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⑦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⑩ 주주 또는 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⑪ 주주 또는 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그와 ① 내지 ⑩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등의 합계액

이 발행주식 총액 등의 50% 이상인 법인

⑫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금액 등이 발행주식총액 등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금액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등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⑬ 주주 또는 사원 및 그와 ① 내지 ⑧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법인의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단순히 과점주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⁹⁷⁾

(다) 부동산 등의 소유

과점주주가 출자한 법인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 시설이용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및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8누333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 11138 판결.

(3) 과세표준의 계산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법인의 결산서 기타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앞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4) 연대납세의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문제점

법인들이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에

대 하여 그 법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다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불합리하다. 대법원은 과점주주에 대한 이중과세의 논거로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법인의 과점주주가 된다고 하여 엄연히 그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이 과점주주의 소유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당해 부동산 등의 처분이나 관리운용에 따른 이익이 직접 당해 과점주주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당해주주에게 그 법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를 부담시킬 만한 새로운 담세력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는 결국 담세력이 아닌 것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여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에 따른 부수적인 부작용이기는 하지만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주명의를 분산 등이 자행되어 조세부담의 형

평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개선방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입법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제6절 개인주주과세 개선의 결론

현행 세법상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 외의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는 개인주주에 관한 세제를 왜곡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과세규정 등은 모두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의 과세제외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도입된 임시방편용 제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자산소득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분할단위 합산비분할주의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신보다 결혼한 부부를 세제상 불이익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을 이루고 있는데,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부부단위로 금융소득금액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는 부분적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함에 있어서도 종합소득세액의 산정방법과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산정방법 중에서 많은 세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비교과세제도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영세한 금융소득자에게 오히려 무거운 소득세 부담을 지우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소득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제도

의 개선방안으로서 중요한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과세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 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주식가격의 등귀로 인한 증가액과 같은 미실현이익에 과세할 것이 아니라 당해주식의 처분시점에서 실현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되, 다만 연간 금융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인 금융소득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에의 합산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비교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세액을 환급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위헌의 소지가 있는 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부단위 합산비분할주의를 폐지하고 개인단위주의 또는 2분 2승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다섯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평가방법을 다양화하고, 특히 비준평가법의 도입을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순자산가치법 및 순손익가치법의 평가에 있어서도 불합리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인 부동산과의 평가에 있어서의 형평을 고려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의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방세법상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당해주주에게 그 법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를 부담시킬 만한 새로운 담세력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남언 외 4인, 『배당소득세제의 개선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
- 강인애, 『소득세법』, 한국세정신문사, 1984.
- 권강웅, 『축조 지방세법해설』, 조세통람사, 1999.
- 기업회계심의회,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의견서」, 1999.
- 김영우, 『증여의제와 증여추징』, 조세통람사, 1997.
- 김완석, 『소득세법론』, (주)광고아카데미, 2000.
- _____, 『법인세법론』, (주)광고아카데미, 2000.
-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1999.
- 노기성,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제개편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5.
- 오혁주 외 3인, 『주요국의 개인소득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소 조사보고 제3집, 1988.
- 이명훈, 『금융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3.
- 이은상·이준규, 『현행 세법상 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8.
- 이철송, 「의제배당과세에 있어서 자본준비금의 취급」, 『월간 조세』, 1992년 1월호, 조세통람사, 1992.
- 이태로·이철송, 『회사법강의 제7판』, 박영사, 1999.
- 이형순, 『소득세 체계 합리화를 위한 기초과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2.
- 전영준·이철인, 『이자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전정구, 『한국 조세법의 제문제』, 조세통람사, 1989.
- 정동윤, 『회사법 제5판』, 법문사, 1999.
- 조계근,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의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1996.
- 채수열, 「의제배당과세론」, 『세무학연구』 제14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1999.
-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1998.
- 최명근 외 3인,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85.
- 최명근, 『세무학의 이해』, 세학사, 2000.
- 최명근, 『한국조세의 제문제』, 조세통람사, 1988.
- 구자은, 「파생상품 등의 회계 및 세무」, 『삼일저널』, 1999 가을호.
- 김광윤, 「선물거래의 회계와 과세문제」, 『세무학연구』, 1997 제10호.
- 박용석, 「미실현이득 과세에 대한 재고」, 『인권과 정의』, 제222호, 대한변호사협회, 1995. 2.
- 서기원·원재환·조동필, 『선물·옵션의 이론과 실제』, 유평출판사, 2000.
- 송인만·김문철, 『고급재무회계』, 신영사, 2000.
- 유배숙,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성우,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창희,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문제」, 『조세학술논집』, 제12집, 1996.
- 재무부, 「통화옵션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검토」, 재무부 세제조사과, 1993.
- 정영기,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대한 논리와 실무해설」, 『공인회계』, 2000년 2~5월호.

- _____, 「파생상품에 대한 해석 검토」, 한국회계연구원, 2000.
- 중앙감사법인, 「신금융상품회계기준」, 1999.
- 중앙감사법인, 「디리브티브거래의 세무·회계」, 1996.
- 최완석,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와 조세처리에 관한 연구」, 『파생상품브리프』, 1997.
- 최홍식·김성룡,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 한국공인회계사회(조세정책연구위원회),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와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1997.
- 한국은행, 「파생금융상품의 이론과 실제」, 한국은행, 1996.
- _____,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환위험관리」, 한국은행, 1998.
- _____, 「파생금융상품 위험의 특성과 관리방안」, 한국은행, 1999.
- _____,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거래동향과 규제현황」, 한국은행, 2000.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파생금융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 한국은행, 1996.
- 홍기용, 「선물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1996 제 7호.
- 홍범교, 「파생금융상품과세」, 『재정포럼』, 1998.
- 홍종철,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국세법무월보』, 2000 제14호.
- 홍철근,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실태 및 과세문제 검토」, 『월간 조세』, 2000년 6~8월호.
- 菅野淺雄, 「금융과 디리브티브의 세무」, 재경상보사, 1999.
- 伊藤邦夫, 「금융상품에 관한 법인세의 취급에 관하여(상)」, 『국세속보』, 제5118호, 1999.

- 江頭憲治郎, みなし配當, 租税判例百選(第三版) 別冊 ジュリスト
No.120, 有斐閣, 1992.
- 吉川弘人, みなし配當課税論, 所得税の理論と實際, 21世紀を支える
税制の論理(第2巻 所得税の理論と課題), 株式會社 稅務經
理協會, 1996.
- 金子宏, 所得概念の研究, 株式會社有斐閣, 1995.
_____, 租税法における所得概念の構成(三・完), 法學協會雜誌
92卷9號, 1975.
- 澁谷雅弘, 自己株式の取得と配當課税, 租税法と企業法制, 租税法研
究 制25號, 株式會社有斐閣, 1997.
- 藤田晴, 『所得税の基礎理論』, 中央經濟社, 1992.
- 藤田良一, 相續税・贈與税・地價税 財産評價の實務, 中央經濟社,
1993.
- 吉良實, 所得課税法の論点, 中央經濟社, 1978
- 林大造, 所得税の基本問題, 稅務經理協會, 1966.
- 忠在市, 課税所得の概念論・計算論, 大藏財務協會, 1980.
- 大山孝夫, 所得税の計算と理論, 稅務研究會, 1992.
- 渡辺徹也, みなし配當課税と租税回避, 稅法學 第536號, 日本稅法學
會.
- 北野弘久 外, 爭點相續税法, 勁草書房, 1995.
- 三木義一, 資産所得合算課税制度の合憲性, 租税判例百選(第2版) 別
冊ジュリスト, No.79(1983. May), 有斐閣.
- 小池正明, 非上場株式評價の取扱いと問題點について, 稅研 第50號,
1993. 7.
- 岸田雅雄, 自己株式取得規制緩化と證券取引法・租税法, ジュリスト
1092號, 1993.
- 田中章介, 判例と租税法律主義, (株)中央經濟社, 1994.

_____, 利益準備金の資本組入れに係る配當課税の當否, 稅務弘報 39卷4號, 1991.

田中治, 利子配當課税のあり方, 21世紀を支える税制の論理(第2卷 所得稅の理論と課題), 株式會社稅務經理協會, 1996.

_____, 利子・配當課税のあり方, 21世紀を支える税制の論理(第2卷 所得稅の理論と課題), 株式會社 稅務經理協會, 1996.

竹内昭夫, 利益積立金の資本組入れとみなし配當課税の當否(上), 商事法務 1258號, 1991.

註解所得稅法研究會編, 註解所得稅法, 財團法人大藏財務協會, 1997.

清永敬次, 夫婦合算課税, 憲法判例百選Ⅱ 別冊ジュリスト No.69, 1980, May, 有斐閣.

村井正, 現代租稅法の課題, 東洋經濟新聞社, 1973.

平川忠雄, 資産評價の問題點—取引相場のない株式, 稅研 第78號 1998. 3.

河野惟隆, 法人稅・所得稅の研究, 株式會社稅務經理協會, 1995.

租稅法學會, 所得稅法の基本問題(第3號), 有斐閣, 1975.

_____, 所得稅・法人稅の課稅ベス(第17號), 有斐閣, 1989.

Anson, M., *Accounting and Tax Rules for Derivatives*, Frank Fabozzi Associates, 1999.

Auerbach, A. J., *The Taxation of Capital Incom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Bittker, Boris I. & Lawrence Lokken, *Federal Taxation of Income, Estates and Gifts* Volume 1, Warren, Gorham & Lamont, 1999.

Burke, Karen C.,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

- ration and Stockholders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Co., 1996.
- Carter et al.,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Vol.3, Taxation of Income), Queen's Printer and Controller of Stationery, 1966.
- Cetinkaya, M., et al., *European Tax Handbook*, IBFD Publications BV, 1999.
- Chirelstein, M., *Federal Income Taxation - A Guide to The Leading Case and Concepts*, Foundation Press, 1994.
- Fabozzi, ed., *The Use of Derivatives in Tax Planning*, Frank Fabozzi Associates, 1998.
-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33*, FASB, 1998.
- _____,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38 - an amendment of FASB No.133*, FASB, 2000.
- Feldstein, M., *Capital Tax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Hübschmann•Hepp•Spitaler, *Kommentar zur Abgabenordnung and Finanzgerichtsordnung*, 9. Aufl., Verlag Dr. Otto Schmidt KG, 1998.
- Hudson, David M., *Federal Income Taxation* 7th Edition, St. Paul, Minn., 1998.
- IASC,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IASC, 1998.
- _____, *Exposure Draft E66 - Financial Instruments: Rec-*

- ognition and Measurement, IASC, 2000.
- IFS,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 (Report of a Committee chaired by Professor J. E. Meade), George Allen & Unwin, 1978.
- Kahn, Douglas A. & Pamela B. Gann, *Corporate Taxation*, West Publishing Co., 1989.
- King, M. A. & D. Fullerton,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Kolbrenner, S., "Derivatives Design and Taxation," *Virginia Tax Review*, Vol.15, 1995, pp.228-231.
- Lind, Stephen A. et al., *Fundamentals of Partnership Taxation*, Foundation Press, 1998.
- McNulty, John K.,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West Publishing Co., 1994.
- McNulty, John K.,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West Publishing Co., 1988.
- OECD, *Taxation of New Financial Instruments*, 1994.
- _____, DAFFE/CFA(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Committee on Fiscal Affairs of OECD), *Draft Report on Special Sessions on Innovative Financial Transaction*, 1996.
- _____, *The Taxation of Global Trading of Financial Instruments: A Discussion Draft*, 1997.
- Pechman, Joseph A., *Federal Tax Policy*, 4th Edi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s, 1983.
- Pinson, B., *Pinson on Revenue Law*, Sweet & Maxwell, 1998.

- Schmidt, Ludwig, *Einkommensteuergesetz* 18. Aufl., C.H. Beck'sche Verlagbuchhandlung, 1999.
- Smailes, David & Kevin Walton, *Tolley's Capital Gains Tax*, Tolley Publishing, 1999.
- Streck, M., *Körperschaftsteuergesetz Kommentar*, 4. Aufl., Verlag C. H. Beck, 1995.
- Tipke, Klaus / Joachim Lang, *Steuerrecht, ein systematischer Grundriß*, 13. Aufl., Verlag Dr. Otto Schmidt, 1991.
- Warren, A., "Financial Contract Innovation and Income Tax Policy," *Harvard Law Review*, Vol.107. 1993.
- Whitehouse, Chris, *Revenue Law - Principle and Practice* 7th Edition, Butterworths, 1999.

부 록 - 대외세미나

기업과세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제1회의실
- 일 시: 2000. 11. 17(金) 14:00~17:00
- 주 최: 한국경제연구원

- ▷ 사회자: 이계식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 ▷ 토론자: 김석중 상무 (전국경제인연합회)
엄기웅 상무 (대한상공회의소)
윤건영 교수 (연세대학교)
이준규 교수 (경희대학교)
조석제 상무 (LG구조조정본부)

토론내용

▶ 한경동 : 지금부터 “기업과세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 개회사 :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거의 3년 가까이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왔습시다만 아직도 구조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평가는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개혁과제인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그동안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습시다만 이런 와중에 사실은 세계개혁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후퇴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패치워크 형태로 세계개편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기적인 조세제도 개혁에는 좀 후퇴한 것으로 비쳐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동안 한 1년여 가까이 연구한 결과입니다만 그동안의 세계개편과정을 돌아보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미나에 가서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상당히 기회비용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세미나를 하게 되지만 새로운 내용도 별로 없다는 평가인 것 같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나라도 바뀌지

않고 그러니 들어본들 무엇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그렇게 높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연구를 하시고 논문을 발표해 주실 최명근 교수님, 박정우 교수님, 김완석 교수님,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이인실 박사, 한경동 박사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중에서도 사회를 맡아 시간을 내주신 이계식 KDI 정책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경련의 김석중 상무님, 대한상공회의소의 엄기웅 전무님, 연세대의 윤건영 교수님, 경희대의 이준규 교수님, LG구조조정본부의 조석제 상무님, 노영철 재정부 세제총괄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미나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조세개혁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기업 및 주주관련과세를 새롭게 바꿔 나가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한경동 :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제발표가 있기 전에 오늘 연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을 같이 해주신 최명근 교수님께서 간단히 연구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근 : 오늘 우리들이 연구해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과세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입니다. IMF 이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로서의 기업이 세금문제와 어떻게 관련이 되나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설계는 연구하신 분들과 상의를 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기업세제와 주주과세를 한꺼번에 다룬 이유는 기업세제와 주주과세는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세제와 주주오너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이인실 박사님과 한경동 박사님이 주가 되서 기업과세에 관련된 전문가 또는 기업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우리들이 현행 세제에서 무엇을 빨리 바꾸고 어떤 제도들을 들여와야 되겠느냐, 또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들의 의식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관련세제인데, 기업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사이 구조조정 얘기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수단의 하나가 M&A 아니겠습니까? 이 M&A 세제를 어떻게 가져왔을 때,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기업의 M&A라고 하는 것은 IMF 사태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경제가 국제적인 환경에 순응하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M&A 세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데 중점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과세에서는 배당소득과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그보다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식이 상속될 때 상속과세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주들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고 또 기업으로 돈을 몰리게 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세제를 검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분을 발표하시는 분들에게서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왕림하셔서 이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한경동 : 그러면 오늘 전체회의를 진행해 주실 이계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식 :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오늘 기업과세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경제연구원의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저도 재정학도로서 참으로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97년 IMF 위기를 당했을 때 IMF 미션팀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기네가 와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은행을 들여다 보고 나서 저한테 한 얘기가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92년부터 94년까지 2년간 IMF에 근무를 했었을 때는 한국이 기적의 나라 miracle country라 해서 세미나에 가면 저더러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제가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전부 경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장부들을 전부 들여다 보니까 이것이 아구가 맞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지금 그 뒤로 3년여가 넘었는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지 저 자신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 교수님께 질문도 드리고 싶고 그런 심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자 역할이라는 것이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니까 저도 말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세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업 및 주주 과세에 대한 평가조사에 대해서 이인실 박사님께서서 15분 정도 발표하시고,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박정우 교수님께서서 20분 정도,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김완석 교수님께서서 20분 정도 한 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0분 정도 여기에 나와 계신 토론자들께서 토론을 하시고 나머지 30분 정도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발표

- 현행 기업 및 주주 과세에 대한 평가조사 : 이인실 박사
-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정우 교수
-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완석 교수

▶ 이계식 : 고맙습니다. 세 분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가 여섯 분이 계신데 배정된 시간은 80분입니다. 그래서 10여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엄기웅 : 오늘 상당히 좋은 발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업과세제도를 개편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고, 우리 경제단체가 그동안 해묵은 과제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제기를 해주셔서 이것을 건의서로 정부에 제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없고 또 여기에 계신 박사님보다 세금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 몇 가지 여기에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동의를 한다거나 또는 바뀌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기업과세를 바꾼다면 원칙의 방향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한국경제연구원에 요청을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대한 지면을 할애해서 보고서를 쓰셨는데 시간 때문에 박정우 교수님께서 발표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에 위험회피대상평가서를 보면 위험회피수단평가서니 서로 상쇄하는

위험회피회계 도입을 하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한 과세방식이 다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과세소득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따른 혼란, 또는 여러 가지 세무행정의 복잡성, 이러한 것이 파생금융시장이 제대로 정착이 안된 문제점을 볼 때 박정우 교수님이 주장하신 이상적인 것하고 현실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현행 세제에서 상장법인 주식차입을 비과세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소에 지금 대체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파생금융상품과세는 일단 거래가 발생된 시점 또는 결제가 완료된 시점에서 거래세 형태로 과세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해를 달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합병시 과세에 있어서 이월결산 승계요건을 완화한다든가, 청산소득의제배당 문제들은 저희 기업들과 관련된 경제단체의 과제도 아주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특히 불공정합병시의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법인간의 편법적인 증여를 막기 위한 규제를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불공정합병에까지도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인데요 이것은 상장법인에 대한 중복적인 규제뿐 아니라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기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외결손비공제의 캐리-포워드carry-forward, 그리고 결손금 소급환급의 캐리백carry-back 제도가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상당히 미흡하게 작용해 왔는데 기업의 영업성과라는 것은 경기변동이란 기업외적 요인, 그리고 기업투자결정이란 기업내적 요인에 의해서 항상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맞춰서 기업의 이익 또는 손실을 캐리백이나 캐리-포워드 제도를 통해서 세금의 일부를 기업내부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바로 대체해야 할 제도라고 봅니다. 보다 기능을 더 강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제기간을 선진국 수준

으로 연장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액에서 다른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소득을 먼저 공제하고 이윤공제를 맨 나중에 하도록 하는 방안이 앞으로 세제개편을 통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조정문제는 기업과 세의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연자산 처리라든가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범위 등은 이러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로 인한 기업부담이 굉장히 큼니다. 업계와 학계, 세무당국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일치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다만 모든 세무회계를 기업회계로 일치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중에는 기업회계를 세무회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상호조정을 통해서 통일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환율평가차손에 대해서 일시비용이었을 경우 여러 가지 거래손실이 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세무회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업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업과 세제도를 바꿔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세 가지들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기업과세 중에 바꾸어야 한다면 기업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세원의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세원의 안정성과 성장성이 확보되는 시각에서 기업과세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요 아울러서 경쟁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기업세부담이 높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이것은 결국 세원이탈의 해당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시장개방체제에서 기업이 역시 국경을 넘나들면서 바뀌고 있고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발달된다면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

로 기업과세제도를 바꿀 때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원의 안정성과 기업의 연속성을 예를 든다면 여기 보고서에는 지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소위 상속세 문제입니다. 경영권 상속과 할증과세 문제가 지금 논의가 안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경영권 상속에 지금 최고 30%의 할증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중소기업인이 갖는 경영노하우 또는 기술축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일본과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할인평가제를 도입하고 있고 또 연구연납기간은 20년간 하면서, 연구연납에 따른 이자부담도 상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에 따른 세부담 문제는 현행 세제개편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지만, 구조조정 후에 기업에 오는 세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업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주회사와 모회사간의 배당소득공제를 더 확대하고, 그리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업효율성 증대와 관련해서 대표적 예를 든다면 법인세율이 단일화되어야겠다는 점입니다. 현재 법인소득금액이 1회 미만인 경우에 16%, 이것을 초과하면 28%, 세율을 적용하는 이원화구조인데 이것은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세부담을 많이 안게 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고 법인세율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차입금과다법인 주주에서 부채비율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하고 있는데 기업이란 것은 단순히 부채비율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감안한 기업의 여러 가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감안한 이자보상비율이 높은 경

우에는 지급이자손금부인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율을 손금부인규정에 세법이 있다면 박정우 교수님께서 주장하셨듯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증자소득공제는 반드시 부활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원입하예방성 관련은 세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서 안된다는 원칙인데 이것은 기업편이기 때문에 억측일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부담도 정부가 세금 외에 걷어들이는 각종 법정부담금, 분담금 그리고 4대 사회보장성보험료 등 준조세에 대한 기업부담이 매우 과중한 점이 지적되어 있고 이인실 박사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약 87.2%가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준조세 부담이 높아지면 기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기업을 이전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과다한 준조세 부담을 정부가 스스로 자제하거나 세계개편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소득을 창출시키는 유일한 부가가치창출기구이고 조세의 근원적인 원천이란 점에서 정부는 세원을 보호하고 세원의 안정성과 성장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 현행 기업과세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이계식 : 고맙습니다. 다음에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윤건영 :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대체로 불만이 많다, 둘째, 조세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M&A가 늘어난다거나 혹은 이-커머스 e-commerce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조세제도가 제때제때 따라가 주

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불만이 많다, 이런 것은 쉽게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다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자소득공제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까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낮게 평가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한때 운용을 하다가 없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자는 얘기인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자소득공제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을 신규로 신주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자 하는 애긴데, 증자소득공제 부활을 주장하는 논리는 타인자본 이자에 비해서 배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목계과세를 하니까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사이에 자본비용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증자소득공제를 부활하자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자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신주발행을 통한 자기자본조달뿐만 아니라 사내유보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도 자기자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신주발행을 통한 자기자본 조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이고, 두 번째로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의 축적과 신주발행을 통한 자기자본의 축적 사이에 이러한 차등을 두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 제도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parameter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증자소득공제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자원비용의 감소율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 자본비용의 1%도 되지 않는 매우 낮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증자소득공제의 자본비용감소효과라는 것은 증자소득

공제율에도 관련이 될 것이고 법인세율에도 관련이 되고 배당을 기업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증자소득공제가 기업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자본비용감소 효과는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증자소득공제를 부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언뜻 상식적·피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자본, 타인자본 하는데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게 해주니까 그걸 해주면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자소득공제체도의 부활은 오히려 우리 세제를 뒤로 끌고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세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매우 건설적인 대안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함에 따라서 기존의 세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가 마련된다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본시장도 상당한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주가가 낮다고 해서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고, 따라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된 것은 다 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김완석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치로서는 그게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실 제가 앞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해선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증여했을 때 평가가 물론 상당히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세당국에

서는 상당히 자신없어 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처럼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이다가 추후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과세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물론 저 같은 소액주주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런 일에 관련됐다면 아마 그 주식을 오래 보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양도차익과세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성의 모 아들이 무슨 주식을 받았다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아마 죽기 전까지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도차익과세란 것은 개념적으로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이 사람은 양도차익을 실현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의제라는 제도에 현실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좀더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명제 강화라든지 저희들이 늘 얘기해 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탬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계식 :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주셨습니다, 윤 교수님. 제가 1월에 사실은 하버드에서 뵈었죠? 그때 그 말씀 한 것 생각나 십니까? 하버드에는 핸드폰이 없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딸 아이가 대학생이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만 대학에 핸드폰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핸드폰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야,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쟁력에서 비교가 되겠는가. 시간이 남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준규 교수님인데 영문 명함을 보니 상당히 특이하네요. 준규라고 하셨네요. 완전히 수요자 위주로

영어로 지으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이준규 : 드릴 말씀은 많습시다만 시간 제약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세쪽에서 합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점은 결국 합병과세제도의 목적은 순수하게 조세회피를 위한 합병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사업목적의 합병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과감하게 줄여주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의 합병이라면 합병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을 일종의 사업목적 합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세제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요건이 과연 조세회피 목적의 합병과 사업목적 합병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이라는 것이 피상적이어서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법 인간의 합병, 1년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새로 회사를 만들어서 합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요건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두 번째 요건이 합병대가의 95% 이상의 주식일 것인데 이것도 합병대가를 현금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주식을 발행해 놓고 합병한 후에 주식을 사주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더더군다나 아주 형식적인데 합병당기를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과정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그럼 12월에 합병하면 한 달만 승계과정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것이 사업목적 합병과 조세회피 목적의 합병을 구분하는 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합병은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이 세 가지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의 제도를 참조해서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이월결손금을 팔아먹는 행위라든가 의제배당이나 청산소득을 회피하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실질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기준을 강화하되 사업목적 합병이라고 생각이 되는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세부담이 없도록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세법상의 합병을 과세특례합병이라고 보통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박정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특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taxatory reorganization 제도같이 그런 요건을 충족하면 아예 비과세합병으로 인정, 청산소득이라든가 의제배당이 과세가 전혀 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기준은 강화하되 그 기준을 충족하면 전혀 조세부담이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과 관련해서 분할에 대한 규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할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승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가 되지 않아야 하는가 생각이 들고, 분할된 법인의 주주가 비례적으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분할된 법인의 일부 주주가 떨어져 나와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는 이런 형태에 있어서는 브레이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에게서 주주한테로 부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소액주주한테서 대주주한테로 부의 이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점도 사실은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증여의제에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회계와의 일치문

제인데 이연자산과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논리 상 큰 문제가 없다면 일치시키는 것이 당연히 옳은 방향일 것 같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연자산이나 건설자금이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일치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완전히 일치시키려고 하는 목표는 불가능하고 단지 실무상 애로점이라면 결산조정제도인 것 같습니다. 양측에 차이가 나더라도 양쪽의 목적을 다 충족시킬 수 있게 결산조정제도만 폐지를 하고 신규조정에 의해서 조정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산조정제도를 폐지하는 데 어떤 행정적인 부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조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생상품거래에 대해서는 주식 및 선택권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페이지를 보시면 보수성 주식성 선택권 행사이익이 과세제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때는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세청에서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부분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안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견해는 아는데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슈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국세청의 해석대로 하면 이중과세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분명한 부분은 명문규정으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주과세제도쪽으로 가서 의제배당부분에서 주식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은 경제적 실익이

유가증권처분이익이고 양도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에서 제안하신 것은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보유자산에 의한 가치증가액은 양도소득, 유보익상당액은 배당소득 이렇게 나누자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에는 양도차익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고 현행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것은 다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양도차익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일치시키려면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다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상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과세근거라는 것이 결국 미실현소득이라도 과세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무상주식은 미실현이익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무상주식을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증가한다 하더라도 액면가액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가치증가분이 불분명한 것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해서 미리 과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지요. 복잡하기만 하고 세수에도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상주식으로 인해서 과세가 되는 경우라면 기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무상주식교부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굳이 이런 복잡한 제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가져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에 비준평가법의 도입을 주장하셨습니다. 상당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기준이 되는 상장된 기업의 주가를 가지고 평가기초로 하는데, 물론 할인율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며칠 사이에 두 배 세 배가

되기도 하고 또 사분의 일 토막이 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기업의 실제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회계학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는 실제가치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서는 과연 실제가치라고 해서 이것을 과세가액으로 무차별하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상당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준평가법을 도입한다면 급등락하는 기간에 일정하게 적용배율을 한다든지 뭔가 좀 수정을 가해서 하는 제도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손익가치법은 순손익이란 것이 특정년도에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가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등락이 심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순손익가치에서 계산을 하면 순자산가치의 반 밑에 정도 보통 나옵니다. 물론 코스닥 중에 하이텍 기업들은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큰 데도 있지만 그런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반도 채 안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순손익가치법의 적용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요즘 회계학에서는 올슨모형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순손익가치가 장부상의 순자산가치에다가 초과이익 현재가치를 더한 것이 기업의 가치를 잘 나타낸다 그런 얘기인데 물론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습니다만 순손익가치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보충적으로만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 조석재 :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조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입장에 있질 못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앞서 발표하신 분들의 의견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현실적인 애

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해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얘기를 못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세제가 기업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죠.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우리가 법을 지키느냐 안지키느냐 하는 기준으로 볼 때 “세법을 지키면 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며 경영진도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경영활동을 미래전향적으로 끌고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들이 보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업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세제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주로 대기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진외국에 비해서 저희들의 제도가 최근까지 두 가지 제도가 없었고 한 가지 제도가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인데 두 가지 없는 제도가 소위 말하는 회사분할제도와 지주회사였습니다. 또 하나 있는 제도는 전세계 아무 데에도 없는 결합재무제표라는 굉장히 기형적인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공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이라든지 M&A 이런 쪽에 있어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1년이나 2년 이내에 끝날 일도 아니고 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 결국 M&A고 구조조정이라고 볼 때 구조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세제가 좀 전향적으로 뒷받침이 돼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분사도 있을 수 있고 합병도 있고 회사분할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

합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회계제도라든지 조세제도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분할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상당부분이 언급이 안되어 있고 미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무조정상 상계문제라든지 이월결손금 상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요인들을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전향적으로 세법에서 완화시켜 주고 열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합병이든 회사분할이든 간에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주주구성이 큰 변동이 없고 계속 유지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면 종전의 회사분할 또는 분할되기 전이나 합병되기 전의 상태가 계속해서 구조조정 이후에도 똑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없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종국적으로 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주회사제도는 우리나라가 작년 4월부터 공식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언급이 되었는데 사실 지주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법조항이라는 것이 제한적으로 몇 개 나열돼 있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주회사로 가는 그 자체가 결국은 어떤 대기업의 지배구조나 소유구조와도 관련이 있고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와도 연관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제도와도 관련된 세무상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앞서 얘기하신 연결납세제도인데 현재 법인세법에서 언급되어 있는 일부 배당소득에 대한 입금불산입조항은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우선 해주셔야 될 것은 지주회사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자회사가 세금을 물었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해 주셔야 되고 종국적으로는 자회사와 연결

납세제도에 의해서 감면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업외적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 과거에 비업무용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 자체가 한 때는 대기업도 그렇고 어떤 기업이든 간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고통의 시대이고 이 부동산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의 기대이익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여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인 경우에 금융감독원을 비롯해서 금융기관의 기준에 의해서 상당한 기준의 통제를 받고 실제 자금조달의 애로도 겪고 또 금리차도 과거와 달리 굉장히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급이자를 다시 차입금비율이 높은 회사가 경영실적도 안좋은 입장에 지급이자부담도 많은 회사에 다시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세법에 언급되고 있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상장법인 또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조항이 갑자기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부정적인 것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세의 형평성추구 차원에서 얘기가 안되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되고 이런 마이너한 부분 자체가 세법에 언급되어서 오는 부정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조만간에 폐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업과세부분과 주주과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만 주주과세부분과 기업의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부 돈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부담을 많이 주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생동안 세원을 추적해서 과세를 하겠다든지, 또 상속세를 강한 세율로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수확보 측면에서도 전체 세수의 1%도 안되는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고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완화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 요즘 벤처 창업가라든지, 또는 사업을 새로 일으키고자 하는 기업가인 경우에 이런 식의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 등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억압을 하면 누가 의욕을 내서 사업을 해나가겠느냐 하는 쪽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속세 부분은 많이 완화되어야 하고, 그 대신에 주식의 양도차익과 세라든지 종합소득과세는 중국적으로 세제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세 시기선택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증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과세가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엄청난 충격이 될 테고 정부차원에서도 또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나와야 될 입장인데 이 시기에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은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석중 : LG의 조 상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디테일하게 세무쪽으로 공부를 안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용어도 참 생소하구요. 다만 전경련에서 경제조사본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 본부에서 조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를 담당하지만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전문지식이 일천하고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도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회원 사들로부터 세법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하고 종합해서 재정부에 건의를 하고, 건의를 하는 와중에 되도록 많은 재계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저도 보고 느낀 일반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줄이고 줄여서 50건 정도를 재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만 50건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 세법에서는 한 네 건 정도 수용이 될 것 같고, 다섯 건 정도는 부분 수용되는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저희들 의견이 100%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20% 정도의 수용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부의 노 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조금 더 개정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 이번에 안된다면 내년에라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일치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수용이 안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참 의문스러운데요.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참 괴롭다”는 등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편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쳐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도 결국은 또 안되고 그러는 부분이 해마다 참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들도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를 일치시키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더라도 되도록 기업들이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내야지 국가재정도 좋아지고 국민경제도 좋아지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으로 마인드를 바꾸시는 것이 어떤가, 되도록 행정적인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쪽의 요구사항은 일치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8%이지만 실효세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실효세율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외국부분도 점점을 잘 해보고 우리나라의 실질실효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이슈화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실질실효세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쪽을 검토해 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조세도 같이 포함될 것 같구요. 그리고 구조조정 관련 세제부분에서 계속 줄기차게 외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사관련제도도 그렇고 지금 조세제한특별법에서 일시적으로 준 세제혜택 중 끝난 것도 있는데 기업들 측면에서는 아직 이 부분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세제의 형평성이라든지 조세회피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시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부 실무선과 얘기를 해보면 형평성 부분에서 걸리고 회피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걸리고 이제 이런 이유들을 많이 내세우시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그 기업이 더 잘되면 그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법인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세를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목적달성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국가재정 측면에서는 기업이 잘 되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여러 면

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지원측면에서 좀 어프로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급이자손금부인 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인 부채비율이 900%인 산업도 있고 1,000%인 산업도 있고 100%인 산업도 있고 다 각기 틀리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기업별로 다 틀리고, 법에는 없습니다만 200% 부채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1년만에 몰아쳐 가지고 이랬든 저랬든 다 부채비율을 다운시켜서 거의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중적인 (실질적으로) 과세를 해가지고 손금부인을 함으로써 규제를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이 결국 부채비율 200%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추구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다른 법에서 결국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증권거래법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면 어떤 특정 재벌, 대기업들을 선도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군데에서 다 전부 나서가지고 정책을 다 임포멘테이션하고 있는데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불만스럽습니다. 세제부분은 세제의 원리에만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제가 재벌 정책을 같이 수용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벌정책은 다른 데서 예를 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재정부의 다른 파트에서의 정책,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정책에서 하시고 세제부분은 재벌정책까지는 염두에 안두시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죽겠다는 겁니다. 온갖 부서마다 다 자기들도 나서서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2중이 아니고 10중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 그래서 너무 힘든 그런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문제를 고치고 싶으면 한 쪽에서만 충실히 하는 것이 낫지 지배구조 관련도 그렇지 않습니까. 증권거래법에서만 하던 것을 온갖 법에서 다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어프로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거론은 안됐습니다만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부분이 참 불공정하다, 예를 들면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 사이에 가산세가 너무 틀리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과세관청에 협조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가산세에 넣는 등 가산세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재계의 의견을 검증, 이슈화하려 하고 있는데 가산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정부나 학계와 같이 검토를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 가지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상장주식차익과세를 양도시점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만 이재용씨가 평생 2대, 3대,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니고 결국 언젠가는 증자를 하든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팔 수도 있는 거구요 그 시점에서 그 원리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타겟으로 해서 조세원칙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세원칙은 그대로 지키되 그 개인이 문제가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과정에서 잡아내야지 조세원칙을 그쪽으로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며, 저는 이 보고서에 나온 원칙에 오히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이계식 : 고맙습니다. 노 과장님 차례인데 15분 정도 말씀하시고 나중에 시간 나면 길게 드리겠습니다.

▶ 노영철 : 먼저 기업과세제도가 15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것 같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우리는 기업과세에 있어서는 어느 선진국에도 못지않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잘하라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맡아 아주 깊이 연구해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5분이니까 언급이 많이 된 부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 문제,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세법은 상법에는 합병청산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청산절차를 의지해 가지고 합병을 했을 때 한번 과세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피합병법인이 소멸했기 때문에 소멸한 데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므로 세무조정사항이나 이월결손금이 승계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결손금은 이미 자산에서 다 까먹고 결손금에 대한 대가를 합병법인은 아무 것도 지불을 안했습니다. 안한 상태에서 매수를 했는데 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맞는 것인데 지금 있는 이월결손금공제를 하는 요건이 우리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아주 특별하게 했던 것인데 아까 이준규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봐도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말하자면 합병회계준칙에 나오는 지분법에 의한 합병을 흉내낸 겁니다. 지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대등하게 합병이 이루어져서 누가 매수주체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되고 지분풀링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95% 이상 주식을

교부해야 된다든지 자산부채자본이 장부가로 넘어가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 상무님을 비롯해 다들 얘기하시지만 그것을 피합병법인으로 한정해 놓으니까 복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럼 합병법인한테 터지는 것이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합병이라는 것이 경영효율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손금을 승계해서 조세를 절감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합병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폐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손금을 다루는 문제로 가야 됩니다. 오히려 역합병이 있지 않습니까. 부실이 많은 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이 되고 건실한 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되어서 역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 결손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청산소득이나 의제 배당 계산할 때 액면가와 시가 중에서 액면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칙은 시가입니다. 원칙을 액면가라 하셨는데 원칙이 시가고 요건을 갖추면 액면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강원은행과 현대중금의 합병 당시에 부실한 강원은행이 우량한 현대중금을 합병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보다 더 낮아 이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과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보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금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할 때 바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합병비율을 얘기하셨는데 합병비율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합병기준일과 등기일이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머리를 짜내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의 차이를 두었는데 좀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래 합병비율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합

니다. 합병비율이 정확하지 않으면 청산소득도 부당하게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인의 청산소득은 부당이익계산법을 안하고 주주간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부당이익계산법을 계산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인단계에서는 안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치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합치될 수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조화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연자산의 경우에는 제가 법인세제를 보아올 때 보면 기업회계를 바꾸면 세법이 좀 따라갔어요. 기업회계를 또 바꾸요. 그럼 또 따라가요. 자꾸 따라간다는 말씀을 했는데, 기업회계란 것이 신이론을 배워오면 또 바뀌고 합니다. 현재 세법의 이연자산이 옛날 기업회계와 딱 맞았어요. 우리가 맞춘 겁니다. 그런데 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회계가 너무 자주 바뀌고, 그 다음 기업회계가 평가할인이니 뭐니 아주 복잡하고 수학적 인 것이 도입이 되어 어렵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기업회계기준을 맞춰 장부로 할 수 있는 법인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10만 개 법인 중에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치는 시키지만 완전히 일치는 어렵고 기업회계를 만드는 쪽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며, 증자소득 문제는 윤건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부터 오랫동안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비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증자를 할 것이냐 차입을 할 것이냐라는 결정은 증자소득공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연구결과였어요. 윤 교수님과 조세연구원의 임재용 박사님, 광태원 교수님, 이런 분들이 몇 차례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오랜 연구를 거쳐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말하자면 자본을 차입을 통해서 조달하느냐 증자를 통해서 조달하느냐 하

는 문제는 법인단계보다는 주주단계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대주주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아무리 깎아줘도 대주주가 안된다 하면 증자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주단계에서 세금을 완화할 수 있는 이중과세조정이라든지,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하고 증자소득공제는 폐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도입하면 세수감소만 일어나고 증자효과는 없게 됩니다. 지금은 또 주식물량이 넘치는 때이기 때문에 증자소득공제에서 물량이 넘치면 주식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월결손금공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이 10년, 20년이니깐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감가상각제도가 강제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결손금공제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감가상각이 임의상각입니다. 즉 기업이 감가상각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강제상각제도로 도입하면서 이월결손금공제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 언급할 수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다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의 김 상무님 주장하신 차입금과다법인이 자기자본의 4배, 5배 넘었을 때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제도가 문제있다 하셨는데 저희들도 해보니까 상당히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제도를 찾아보니까 외국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스위스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스위스 이외에는 모든 나라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저도 이것이 왜 도입되었는지 궁금한데, IMF 이후에 기업이 부실해지니까 98년말에 노·사·정 3자가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하도 기업이 부실하니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노·사·정간에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합의된 사항을 쫓아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문제는 어느 업종이 어느 정도가 차입금 비율인지 또 같은 업종간에도 신규업종, 사업이 중간쯤 되는 사람들에 따라 자금수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업종차등한다는 것도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생거래 상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연구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조세연구원에서도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 앞으로도 연구를 해가지고 파생거래상품을 이용해 지나치게 조세가 이연하지 않도록 지금은 저희가 아주 확정주를 고집하기 때문에 결제일이라는 지 거래가 완전히 청산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간단계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꾸 재계약을 통해서 이연을 하면 그때 과세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완석 교수님의 배당소득이라든지 개인주주에 대한 얘기는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종합소득과세 문제가 확대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만 지금 현재도 capital flight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저희 안처럼 조금 미흡하지만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재평가 적립금 전입할 때 그로스업해 달라는 이런 내용은 아주 실무적인 내용인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에서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세제의 공평성 측면에서 보면 주식의 양도차익은 당연히 과세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는데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 양도차익을 과세하기 위해서 증세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주식양도차익을 이런 증세비도 안들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 대주주를 중심으로 차츰차츰 확대하고 있으니깐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해나가야지 않느냐, 특히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어려운 때에 자본시장 저변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특히 신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원칙이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융재산상속 공제를 2억에서 10억 정도로 늘리자고 하셨는데 10억 늘린다면 50억 정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실무자들이 이야기가 너무 고액재산가한테 혜택이 집중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2억 정도 공제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은 공제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재용씨 건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상장주식을 상장하면서 상장프리미엄 얻은 부분을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실 좀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혹시 이것이 법원에서 판결을 해본다면 엄격한 과세요건에 안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증여하는 그 시점의 시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상장 후에 가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다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는 아시겠죠. 조금 전 김 상무님하고 윤건영 교수님이 반대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윤건영 교수님 이야기에 찬성을 하는 것이 일부 대주주들만 걸리게 되는데 대주주들은 주식을,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 가지고 있거든요. 10년도 가지고 있고 20년도 가지고 있는데 10년, 20년 뒤에 과세이연된 것 다시 과세해봐야 인플레이션 이자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면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도할 때 과세한다는 것이 원칙에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도 하는데, 방법이 있다면 상장프리미엄을 별도로 산출해 별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평가 방법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는데 평가방법은 저희들도 보완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순익가치를 평가할 때 경상이익을 제외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자본환원율을 개별기업별로 아주 다양하게 적용하자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금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거든요. 지금도 현재가치 할인할 때 대개 시장금리에 의해서 할인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의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식 : 다음 시간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 오래 기다리셨는데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속을 밝히시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한국세무사회 송춘달 부회장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많습디만 시간관계상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업과세 어떻게 바꾸나’로 되어 있는데 전 주제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검토가 되고 발언하신 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도 보면 대기업에서 나오신 분, 전경련에서 나오신 분, 학자님들인데 대부분 학자님들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접할 경우가 많고, 또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158인에

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인회계사 21명, 세무사 26명, 전경련 34
 곳, 세무학회 42명, 재정학회 28명 이런데요. 세무사 26명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이 학자, 회계사 이런 분들인데 역시 대기업을 접할
 그런 기회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오랫동안 고생
 은 하셨지만 중소기업까지도 포함해서 좀더 폭넓게 했으면 이런
 답변이 안나왔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
 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
 씬을 드리겠습니다. 일치는 물론 당연히 안되는 것이지만 문제점
 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나온 건설자금이자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자금이자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는 차입금이 고정자산에 투자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
 도록 이 자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를 보면 재
 고자산부터 시작해서 전부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훨씬 기업
 회계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장법인을 제외한 우리나
 라 법인 20만 개 중에서 상장법인이 7,000개, 개인사업자가 50만
 명입니다. 그 개인사업자나 상장법인이 아닌 기업이 과연 현재 우
 리의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서 회계처리할 수 있느냐, 어려운 부분
 들이 많습니다. 유가증권평가 미수익계산 적금 같은 경우는 동리
 로 계산하면 5년짜리 같으면 5년 동안 계속 계산해서 계좌별로
 이월시키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다음 해에
 해약해 버리면 일부 환급이 됩니다. 확정이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중소기업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문제점에 가서 거꾸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기업회계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것
 은 오히려 간단한 세무회계를 따라가줘야 된다고 문제점으로 지
 적을 한 것이 옳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회계를 쫓아가다 보면 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IMF

이후에 환율차손 1,700원 1,800원 할 때 갑작스럽게 바꾸어서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서 금방 법인세법이 또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회계를 따라가다 보면 국가의 재정수지가 기업회계에 따라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국가재정권이 침해된다는 얘깁니다. 기업회계기준 해석이나 변경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납세자들이 세법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기업회계를 먼저 적용하게 되면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국세청이나 재정부에서는 답변을 해주는 인원과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정해져 있습니다. 과연 금감위 내에 질의를 해가지고 그만한 기구가 있으면 약속을 지켜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기구가 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업과세를 논할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 놓고 대기업 상장법인은 여러 가지 IMF 라든가 WTO 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따라갈 수 없고 미국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세무를 위한 장부와 회계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쉽게 신고하고 지금 국세청에서는 표준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데 중소기업자들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표준재무제표를 인정해주고 오히려 간편하게 해주어야 우리 사업자들이 따라갈 수가 있고 오히려 신고라든가 이런 면에 걸림돌이 안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계식 : 고맙습니다. 다른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상당히

내용이 까다롭고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플로어에서 질문이 없다는 문제와 관련을 해가지고 저희 재정학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부개혁을 한다고 들어가서 사실은 제가 재정학자인데 재정개혁은 못하고 행정개혁을 좀 하다가 나왔습니다. 재정개혁이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문제가 뭐나하면 높은 분들께 재정에 대해 설명을 하면 우선 고개를 흔듭니다. 숫자 나오고 그러면 골치 아프다고 들을 생각을 안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치에 대해서 골치 아픈 것도 있지만 저희들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죄송합니다만 박 교수님 70페이지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20분에 발표를 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 70페이지 되는 자료를 그냥 와서 읽으면서 이해를 해라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 공급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프리젠테이션할 수 있는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이란가 청중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는 데 대해서 재정학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시면 발표하신 분들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우 :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엄기웅 상무님 과생금융상품 과세방안에 대해서 발생시점과 완료시점으로 거래세로 하자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소득세이거든요. 담세력을 소득에 두기 때문에 거래세로 하는 것하고 소득세로 하는 것하고 담세력이 다릅니다. 소득세로 해야지 거래세로 하면

손실볼 사람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담세력이 없거든요. 외국의 경우도 전부 소득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논점은 소득의 종료와 인식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로 해야 되고 거래세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연결납세제도는 최종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이니까 지적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증자소득공제 문제에 관한 윤건영 교수님과 노영철 과장님께서 의견을 같이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견은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윤건영 교수님의 다른 말씀은 다 동의하는데, 일단 신주발행과 사내유보는 다르지 않느냐 차등을 왜 두어야 되는가 그런 얘기인데 사내유보는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본잉여와 이익잉여인데 이익잉여란 것은 기업이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낸 것입니다. 이익의 누적이기 때문에 배당될 금액입니다. 공제안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본잉여금은 운명을 신주발행과 같이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자본거래를 통해가지고 신주발행과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은 신주발행공제로써 충분히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또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때 공제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금흐름이 좋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상태가 좋아진 것이 아니거든요. 공제를 해주는 것은 현금흐름이 좋아졌다는 가정하에서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 실질적 자본비용 감소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가중평균으로 해보니까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높습니다. 부채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자본비용 영향이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자소득공제를 해주면 현금흐름이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고 또 증자에 대한 인센티브 동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증연구결과 노영철 과장님이 증자소득공제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실증연구결과라는 것은 연구할 때마다 달라지는 면이 있고 초지일관 실증연구결과 나

온 결과인지 아니면 한두 번의 연구결과인지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증자소득공제해 주면 증자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받는다는 것이 일상적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기를 받지 않는가. 그러면 왜 동기를 받지 않는가까지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논리를 들어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준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과세특례합병제도에 대해서 사업목적과 조세회피 목적을 분류하자는 말씀 아주 감사하고, 분할기업승계규정 보완해 달라는 것도 아주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매입청구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저의 논점은 과생금융상품 과세방안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조석제 상무님 지주회사 세제상 연결납세제도는 최종보고서에 보완될 내용이고 주주와 기업과세가 오늘 연결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연결 잘 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하고 과생상품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제배당하고 합병하고 합병시 의제증여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조건 과세를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공제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지 주장하는 것이니까 세금 줄여주자는 의견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김석중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산세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문제거든요. 이것은 추가로 별도의 얘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노영철 과장님 얘기에 대해서 이월결손금승계 문제로서 쟁점인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기업을 합병하는 것이 사는 것으로 보느냐 합치는 것으로 보느냐라는 기

본적인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월결손금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온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손금을 공제해 주냐 하는 논리인데 이걸 운명을 같이하겠다 합치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 여자를 사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운명을 합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여자의 결함도 내가 다 안고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청산절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손금을 인정을 안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은 인정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어떤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면 자금풀링설에 입각해서 완전히 결합을 하는 그런 쪽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가상각제도가 미국은 강제상각이고 우리는 임의상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도 기업회계상으로는 강제상각입니다. 그리고 기업회계상으로 강제상각을 하지 않으면 한정의견이나 부적절의견을 받지요. 한정의견이나 부적절의견을 받으면 차입이 안됩니다. 대가를 모두 지불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고 세무상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공제가 강제상각이나 임의상각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공제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논리는 빈약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월결손금도 우리가 기업을 키운다는 논점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결혼한 회사가 갑자기 이익을 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과세를 한다, 그리고 다음에 과거에 이익이 나다 결혼났는데 지금 그 사람 현금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배려해주면 현금이 필요한 만큼을 과거에 낸 세금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월결손금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과생상품과세에 대해서는 확정주의하고 배치문제가 있지 않느

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권리의 확정이라는 개념이 사실 권리의무의 발생과 실현시기에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권리확정이라는 것이 권리의무의 득실이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무의 실현가능성이 법이 보장하는 선에서 결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되었다면 실현가능성이 성숙,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도 거래가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금도 다 인출할 수 있고 과세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도 확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송춘달 부회장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이해합니다. 기업회계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또 기업회계를 만드는 사람이 공부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비판하면 안되고 그것은 분명히 인정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세법과 기업회계가 차이가 나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결론적으로는 송춘달 부회장님이나 저나 내용은 “회사를 편하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조세수입에 영향이 없다면 그런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니까 기업회계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세무회계를 따라가도록 하자. 그러나 그 말은 틀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70억 이상이면 무조건 기업회계를 따라야 되고 70억 미만이면 상법을 따라야 됩니다. 현행법리가 그렇습니다. 세무적으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기업회계를 따라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세무회계는 세무회계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무회계의 논리를 본다면 예를 들면 건

설자금이자 같은 것도 그렇고 이연자산의 경우도 그렇고 이것은 세무상으로 순자산이 감소를 했습니다. 권리의무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회계와 관계없이 손비를 떨어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가 회계학에도 있습니다. 건설자금이자 같은 경우에도 원가성을 부인하는 논리가 회계학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무구조에 따라서 자산의 취득원가가 달라진다는 것은 부채가 많은 사람이 사실 자산의 원가가 많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비례해서 상각해야 된다는 논리가 사실은 기업회계가 업계의 요구를 기업회계기준이 승복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회계도 그런 논리가 있다면 우리는 애초에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서 순자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아예 손비로 떨자 그렇게 하면 심플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 기업회계를 존중해서 기업회계를 따라가는 식으로 하려면 기업회계로 맞추는 것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편리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논리로 가자는 얘가지 어중간하게 따라가지는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석 : 많은 지적은 없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증여의제 문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동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납세의무의 성립이라든지 확정적 범주에 위배되고 위헌적 소질을 안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과세하는 자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급해서 이런 제도가 들어왔겠지만 지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준규

교수님 주식소각할 때 대가는 양도차익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이 전액에 대해서 바로 배당소득으로 의제해서 과세하게 되면, 회사의 매입에 응하지 않고 시장에서 제3자에게 매각해버리면 아예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가 되지 않고 매입에 응해서 소각당하면 전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배당부분과 양도차익부분을 분리해서 양도차익부분은 과세에서 제외해 주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상장법인의 주주라면 그 다음에 배당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준규 : 저는 양도소득으로 다 가자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배당소득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구요.

▶ 김완석 : 그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현행 제도가 실제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순손익가치법과 순자산가치법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항상 과대평가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주식의 평가가 과세의 목적을 위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가 과소평가될 그런 위험하고, 과대평가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 적어도 납세자 입장에서 과소평가될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비준평가법의 경우에는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상장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급등락을 무시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정기간 평균해서 평가하는 것처럼 평가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상장주식도 같이 비준해서 평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도 지금 상장주식이 늘어나고 그래서 비준의 대상이 되는 표본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비준방법이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법의 도입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석제 상무님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시기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주식시장이 실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악재를 안고 있습니다. 외환자유화 문제라든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과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려가 많고 일부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불리 빨리 채택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원칙론으로서 가능한 한 빨리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같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체로 저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양도차익과세 문제의 경우는 과세기술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주식양도차익을 파악하는 문제,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또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문제,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을 취해서 계산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보고서로 나올 때는 더 상세히 나옵니다. 오늘 만들어진 페이지는 발표하기 위해서 20페이지 정도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식의 평가방법 중에서 순손익가치법에 있어서 자본환원율을 지금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 환원율은 당해사업의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의 리스크의 정도라든지 수익의 안전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도외시해 버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나 적은 사업이나 안정성 있는 사업이나 똑같이 10%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적어도 몇 개 정도 그룹핑해서라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계식 : 네, 고맙습니다. 토론자 중에서 시간을 굉장히 아끼신 분들이 있습니다. 효율성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윤건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윤건영 :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반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장주식을, 예를 들면 아들에게 주었을 때 아들이 그 주식이 상장됨으로써 얻게 되는 차익에 대해서 결국 양도소득세로 나중에 과세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할 때 현실적으로는 실현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말하면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상적으로는 실현기준이 아니라 발생기준으로 capital gain에 대해서, 즉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또 납세자와 정부가 그런 계산결과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타협을 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실현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현기준에 의한 자본이득과

세는 경제이론에 의해서 이상적인 과세표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참작해서 차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노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이상적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먼저 증여가 일어날 때 증여세를 부과하고 설사 그때 평가한 가치가 실제가치보다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서 터무니없이 낮게 계산되었다 한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는 발생기준으로 자본이득을 과세하면 문제는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생기준으로 자본이득을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실현기준으로 과세하는 차선을 선택하는데 여기에 이론적인 최선책과 현실적인 차선책 사이에 큰 갭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의 할인율을 10%로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차익과세에 의해서 증여시에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차익에 대한 과세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10년만 과세를 지연시켜 줘도 사실상 공짜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납세자가 이용을 한다면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탈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납세액에 현실가치가 매우 많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증여할 때 평가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한다면 그것은 탈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양도차익과세를 가지고 전혀 보완할 수 없는 허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김완석 교수님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제도상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하는 선택의 문제로 남는 것인데 저는 법리적인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 아들에게

증여세를 탈세에 가까운 방법으로 그러나 탈세란 책임을 지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하나로서 우리가 제도로 갖고 있는 것이 정책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그러나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겠죠. 두 번째,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서 증여소득공제를 해주면 당연히 자기자본이 훨씬 더 유리해지고 재무구조가 더 개선되어질 것이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평균적인 세부담을 가지고 생각하면 얼른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증자를 해서 투자를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기업이 국제청에 갖다 내는 세금총액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얼마만큼 자금을 조달할 때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타산이 맞는 얘기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계세율, 한계유효설 그런 것이 투자결정 혹은 증자결정에 관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조금 더 생각할 때 한계자금원을 타인자본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자본으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인자본은 고려대상이 아니니까 빼놓고 자기자본으로 했을 경우에 한계자금원을 사내유보인 것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발행하는 것을 한계자금원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런 문제겠죠. 만약에 기업이 사내유보를 좀더 늘려서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증자소득공제는 전혀 기업에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intra-marginal, 즉 최소한계 내에 세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만

있는 것이지요. 만약 다행히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할 때 한계자금을 신주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했다면 이때는 신주발행을 통한 자기자본조달이 한계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증자소득공제가 효과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얼마나 큰 효과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때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자본비용감소효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증자소득공제에 적용되는 세율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에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또 자기자본비용은 수익이 발생하면 나중에 배당으로 가거나 다시 유보되어서 자본이득 형태로 주주에게 돌아갈 텐데 그와 관련해서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에 관련되고 또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가 관련이 되며 또 배당을 얼마나 할거냐도 중요합니다. 증자해서 배당을 해버리면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는 자금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일단 배당성향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다 합쳐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주발행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그 자본비용을 낮추는 것이 매우 낮아 0.1%도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한계자본을 사내유보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증자소득공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자본에 대한 lump-sum-subsidy를 주는 결과만 가져오고 마지널디시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부활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 노영철 : 지금 상당히 증자소득공제가 요즘 시의적절해서 그런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두 분 이야기하신 것이 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한 가지 아주 오랫동안 시행해 오다가

그동안에 많은 관찰을 통해서 세수값만 유발하고 증자유예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년간만 해주거든요. 자본증자금액의 10%를 2년간만 해주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본조달비용을 다 비용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이자하고 비교가 안되고 효과도 미미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만일 한다면 지급배당소득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주의 입장에서 내가 자본을 조달할 때 차입을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증자에 참여할 것이냐는 것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입장에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한번 더 고려를 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주식을 증여의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윤건영 교수님께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 윤건영 : 그게 아니고 이상적으로는 자본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담세능력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 노영철 : 그런데 오히려 미실현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볼 때는 담세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평가상의 능력은 없다고 보고, 우리는 실현되었을 때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기업회계에서 각종 유가증권은 평가익과 시가평가를 하고 평가손을 하는데 손도 손금 인정 안하고 익도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업회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자기들의 손익을 적정하게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준규 교수님께서 주식매입선택권 스톡옵션에 대해서 왜 취득원가를 인정안해주느냐 그러시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 세법상에 비적격스톡옵션이

되어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면 당연히 취득원가에 들어가야죠. 이중 과세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당연히 안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적격스톡옵션으로서 스톡옵션을 받았을 때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해 놓고 나중에 처분할 때 당초 취득원가로 해 과세를 해버리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 이준규 :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 노영철 :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오히려 취득원가로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취득원가를 인정 안하면 명백한 이중과세인 것 같은데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조석제 상무님이 지주회사 연결납세제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연결납세는 미국에서 법인세가 초과누진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초과누진법인세를 피하려고 막 개별기업으로 분리를 하니까 미국에서 법인세를 더 물리려고 같은 기업집단을 묶어 연결납세를 시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민·상법이 전부 개별법인 중심으로 펼쳐져 있고 세법도 전부 개별법인 중심으로 세법체계나 신고체계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납세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동원해 연결납세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 대기업이 결손기업을 임의로 넣어가지고 세금을 회피하는 데 쓰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또 미실현이익을 상계하는 문제라든지 복잡한 회계처리 문제 때문에 국세청하고 더 갈등을 일으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은 이제 보완되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동감하지 않지만 비업무용부동산이 과거에 너무 타이트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우 교수님이 감가상각하고 이월결손금하고 서로 연계가 안된다고 하는데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미국이 강제상각을 도입하면서 한 20년 정도 이월공제해 주는데 일본도 임의상각이면서 이월결손공제가 5년입니다. 우리도 임의상각이면서 이월결손공제가 5년인데 그것은 기업회계기준을 지키는 일부 상장기업들은 상관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10만 개 법인 중에서 기업회계기준 지키는 법인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5,000개 아니 1만 개는 되려는지, 9만 개 법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다 결손금으로 인정되면 늘어줄 필요가 있지만 이 부분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송춘달 부회장님께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세무회계상의 장부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 완전히 별도로 있습니다. 아주 의식이 발달한 나라에도 완전히 별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게 너무 부담을 줄여준다 하지만 다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이계식 :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으로 드릴 말씀이 많은데 드릴 말씀은 두 가지만 토론자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기억나서 말씀드리면 아까 조석제 상무님께서 “세법을 지키면 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을 하면 세법을 지키면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씀 같은데 기업과세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노영철 과장님께서 서두에 기업과세가 선진국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

베이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당국에서는 선진국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금 내는 분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그런 갭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겠죠. 저희가 차츰차츰 좁혀 나가는 것이 앞으로 재정학자들과 조세학자들이 해야 하는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Reform Measures of the Corporates
and Shareholders Tax System in Korea

The corporates and shareholders tax system in Korea has recently been revised in a short-sighted and allopathic manner, which has resulted in unwarranted complexity and inefficiency adversely affecting the tax payer, as well as the tax authorities. Despite various discussions recommending the drastic reform of the corporate and shareholder tax system, this together with other issues of tax reform have been pushed to the background due to the efforts to overcome the recent financial crisis that emphasized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fter looking into past tax reform measur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roved tax reform measures by integrating a new paradigm into the corporates and shareholders tax system. An essential case for the revision of tax measures is its importance in overcoming limitations of monetary policy, particularly in widely open economies.

To study the various problems and feasibility of alternatives, inquiries are made directly to professionals such as professor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licensed tax

accountants, and corporate accountants, requesting information about thei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with regards to the corporates and shareholders tax system in Korea. This paper looks into concrete examples of problems that have originated from tax accounting practices, analyzing them from the viewpoint of law and accounting, and consequently suggests necessary reform measures.